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국내외 법규범 및 사례 분석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국내외 법규범 및 사례 분석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국내외 법규범 및 사례 분석

책임연구원: 이호규(동국대학교)

공동연구원: 김범수(부산대학교)

[목 차]

I. 서론	9
1. 문제 제기	9
2. 연구 목표	10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2
1)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심의·윤리·법령 내용 분석.....	12
2) 차별적 언론보도와 시정권고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제언.....	12
4. 연구 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13
1) 연구 추진체계.....	13
2) 연구방법	14
II. 차별적 언론보도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	15
1. 차별은 왜 나타나는가?	15
1) 인간의 지배 욕구와 사회성의 패러독스	15
2) 관습의 신화화와 무오류성의 환영에 의한 닫힌 사회.....	16
3) 다수의 횡포와 인식의 전체주의	18
4) 한국에서의 차별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19

2. 차별은 왜 문제가 되는가: 개인의 개별성 제고 기회의 상실	20
3. 합리적 자유를 통한 동등한 인간관계 정립의 필요성	24
Ⅲ.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법규범 현황 및 동향	27
1.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국내 법규범 고찰	27
1) 헌법 차원에서 차별금지	27
2)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규범	28
3) 차별적 언론보도에 대한 직접 제재 법조항	30
4) 차별적 언론보도 방지 및 제재를 위한 심의규정	31
5) 차별적 언론보도 금지 및 제재를 위한 시정권고	32
6) 차별금지를 위한 윤리 및 준칙	34
2.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영국 법규범 고찰	35
1) 언론보도 규제기구	35
2)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법 동향	37
3) 영국 「평등법」의 의미	38
4) 차별적 보도와 관련된 「의사소통법」 조항	40
3.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독일 법규범 고찰	41
1) 독일 언론평의회와 규제	41
2)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조항	42
3) 독일 언론평의회 불만 처리 절차	44
4) 방송 규제	45
4.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일본 법규범 고찰	46
1) 일본방송협회(NHK)의 방송지침	47
2) 니혼 TV 취재 및 방송 규범	48
3) TBS 방송윤리강령	49
4) TV 아사히 방송윤리강령	50
5) 후지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기준	50

6) TV 도쿄 언론보도 윤리지침	50
7) 일본민간방송연맹 방송기준	51
5.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유럽연합(EU) 법규범 고찰	52
1)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기능조약」 차원에서의 차별금지	52
2)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규범	53
3) 차별적 보도에 직접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	55
4)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EU 강령 및 준칙	56
6. 소결	58
IV. 차별적 언론보도 시정권고 사례 분석	60
1. 대한민국	60
1) 국내 사례	60
2) 국내 시정권고 특징	71
2. 영국	75
1) 영국 사례	75
2) 영국의 시정권고 특징	90
3. 독일	93
1) 독일 사례	93
2) 독일의 시정권고 특징	100
4. 일본	102
1) 일본 사례	102
2) 일본의 시정권고 특징	112
5. 유럽연합(EU)	114
1) 유럽연합의 사례	114
2) 유럽연합의 시정권고 특징	116

6. 소결	117
1) 공통점	118
2) 차이점	119
V. 결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제언	121
1. 개인의 표현 자유를 위한 언론의 사회적 역할: 사회 균형 추구를 중심으로	121
2. 사회적 균형을 위한 관계의 평등	123
3. 정책 제언	124
1) 차별적 언론보도 시정권고에 대한 대외홍보 강화	124
2) 국가별 규제 접근방식과 윤리강령의 정비	125
3)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126
4) 차별적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사례 접수제도의 활성화	126
5) 언론의 차별적 보도에 대한 학술연구 장려	127
참고문헌	129
부록	131

[표 차례]

〈표 1〉 연구 수행 항목과 세부 내용	14
〈표 2〉 평등권 관련 「헌법」 조항	28
〈표 3〉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29
〈표 4〉 차별금지 관련 「방송법」 조항	30
〈표 5〉 차별금지 관련 뉴스통신법	31
〈표 6〉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2
〈표 7〉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대상	33
〈표 8〉 독일 언론평의회 개요.....	42
〈표 9〉 독일 언론평의회 차별금지 관련 조항	43
〈표 10〉 주미디어청 차별금지 관련 조항	45
〈표 11〉 일본신문협회 윤리강령	46
〈표 12〉 NHK의 방송지침 주요 내용	47
〈표 13〉 차별적 언론보도 규제 관련 헌법 조항	48
〈표 14〉 차별적 언론보도 규제 관련 윤리지침	50
〈표 15〉 일본민간방송연맹 보도 책임 조항.....	51
〈표 16〉 평등권 추구 및 차별금지 관련 TEU 조항	52
〈표 17〉 평등권 추구 및 차별금지 관련 TFEU 조항	53
〈표 18〉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유럽인권협약」 조항	54
〈표 19〉 개인의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와 관련된 「EU 기본권 헌장」	54
〈표 20〉 차별적 보도 제재와 관련된 「디지털서비스법」.....	56
〈표 21〉 EU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57
〈표 22〉 유럽평의회의 '언론윤리규정' 조항	58

1. 문제 제기

언론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사회적 통제와 결속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언론은 단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시민들의 사회적 의식과 시민성 함양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 수많은 언론사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차별적이거나 편향적인 보도로 인해 특정 인물과 집단에 부정적인 인식이 조성되기도 하고 ‘혐오’와 ‘낙인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혐오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언어 표현으로 발현되고, 주로 성별, 인종, 세대, 이민자/난민, 종교인,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미디어 공간에서 나타난다(Badiatiya et al., 2017; Barnidge et al., 2019). 이러한 차별적 보도는 시민들 간의 적대적인 태도를 부추기고 사회 균열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차별적 보도를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특정 인물이나 집단, 혹은 사건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에 대해 차별적 언론보도’라고 명명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언론평의회 및 중재위원회의 시정 활동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차별적 언론보도는 시민들 간 혐오를 야기한다.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자, 성정체성, 종교, 타 문화 및 국가 등 다양한 인물과 집단을 대상으로 이미 널리 혐오의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혐오의 사회는 오랫동안 구축해온 전통, 가치,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혐오는 단순히 표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혐오 폭력으로 전이되는 경우도 있다(김지혜, 2014; 전창영 외, 2018). 특정 인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 또는 왜곡된 내용은 뉴스 이용자들의 인지편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 집단/인물에 대한 혐오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김찬중, 2019). 즉, 언론사의 차별적 보도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혐오를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B. Kim, 2022). 이러한 차별과 혐오의 문화는 작금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한국신문협회 자료에 의하면 국내 언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도 활동

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차별적 보도에 대한 법적 울타리를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언론의 윤리 가치 규범도 정립하기에 더욱 어려운 실정이고 언론의 차별적 보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사회적 제재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는 개인·사회적 법의 침해 우려가 있는 1,158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는데, ‘차별금지’ 관련 기준 위반이 286건(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추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언론의 차별적 보도가 사회적 차별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으며, 현존하는 차별적 보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심의 조항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차별적 언론보도와 관련된 법과 윤리강령에 대해 고찰하고, 해외에서 차별적 언론보도를 포함한 각종 오보 등에 대해 어떻게 다루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차별’의 의미와 접근 방식에 대해 해석학적 접근을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간 사회 속 ‘차별은 왜 나타나는지’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차별은 사람의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차별적 언론보도를 ‘표현의 자유’, ‘합리적 자유’, 그리고 ‘동등한 발언권’ 차원에서 논의하고 현 법규범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차별적 언론보도를 규제할 수 있는 학문적 근간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목표¹⁾

본 연구는 국내외 차별적 언론보도와 관련된 법규·규범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외 언론평의회 또는 언론중재위원회 등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차별적 언론보도 사례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권 침해 또는 차별을 내포하는 명예훼손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조치 사항도 일부 다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언론 조정 및 시정을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차별적 언론보도와 그에 따른 시정 및 경고 조치 사례에 주목한 이유는, 이러한 보도가 이용자에게 특정 고정 관념이나 선입견을 주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강조한 관계론적 인간 존재 개념에 기반하여, 언론사나 언론인이 사람들 간

1) 본 연구는 언론평의회 및 언론중재위원회가 존재하는 한국, 영국, 독일,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방송윤리위원회(broadcasting ethics of program improvement organization)가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차별적 보도와 관련한 법규범 및 준칙을 탐색하고자 했다. 연구는 차별적 언론보도 사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정 및 경고 사례를 보다 포괄적으로 조사하고자 했으며 차별적 언론보도에 한정하지 않은 법규범도 부분적으로 함께 고찰되었음을 밝힌다.

의 균형과 평등의 구조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과 연관된다.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내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 피해를 볼 수 있다.

언론사의 자정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언론평의회나 중재위원회를 통해 시정권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언론이 명시적으로 차별을 조장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개인의 인격권과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별적 언론보도를 규제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탐구하기 위해 '존재론적 관점'과 '관계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례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진은 차별적 언론보도와 관련된 규범 및 준칙을 살펴보았으며, 다양한 국내의 시정조치 사례를 종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활동의 첫 단계로, 언론의 차별적 보도에 대해 국내의 관련 법규, 윤리강령, 보도 준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차별적 보도와 관련된 국내의 법령, 언론윤리강령, 심의기준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한국, 독일, 영국, 유럽연합(EU) 등 언론평의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활동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정권고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일본처럼 언론중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대표적인 방송윤리위원회에서 강조하는 언론보도 준칙을 조사하였다.

한국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초연결 사회에서 차별적 보도와 혐오표현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언론 규제를 엄격히 시행해오면서, 언론평의회를 통해 인권보호와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영국은 IPSO(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sation)를 통해 개인의 인격권, 초상권, 명예, 오보 등을 중심으로 시정권고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방송윤리위원회를 통해 언론사의 자율규제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다양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어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가치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다양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차별적 언론보도와 관련된 규범을 탐구하였다. 국가별 중심으로 시정권고 사례를 종합하고, 언론중재기구들의 기능적 역할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차별적 언론보도와 시정권고 절차의 구속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각 국가별 시정권고 조치 사례를 종합하여 국내의 시정권고 및 제재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언론의 차별적 보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철학적 논의와 함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차별적 언론보도와 관련한 국내외 법규범, 심의조항, 윤리강령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일본, EU,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차별적 보도 관련 법령 및 심의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심도 있는 내용분석을 수행했다.

1)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심의·윤리·법령 내용 분석

- 1) [국가별 차별적 보도 관련 법/심의기구 설립 및 구성 탐색] 먼저, 본 연구는 한국, 영국, 독일, 일본, EU를 중심으로 차별적 보도 관련 심의기구의 설립 배경과 구성, 운영체계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한다. 해당 탐색 조사는 기존 관련 보고서와 공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리하고자 했다.
- 2) [국가별 제재기구(기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고찰] 본 연구는 한국, 영국, 독일, 일본, EU를 중심으로 국가별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심의 및 제재 기구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탐색했다. 언론중재위원회 및 언론평의회를 중심으로 공론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심의 및 제재기구의 활동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의 균형 여부를 가늠해 보고자 했다.
- 3) [국가별 언론보도 심의기구의 시정권고 절차 파악] 각 국가의 차별적 언론보도 제재 및 심의 기구가 차별적 보도에 대해 어떤 시정권고 절차를 거치는지를 조사했다. 이는 신고접수부터 심의, 결정, 시정권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며, 각 단계에서의 절차적 특징과 차별적 보도 사례 처리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 4) [국가별 언론보도 심의기구의 시정권고 사례 분석] 마지막으로, 각 국가의 심의기구가 오보 등의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린 사례들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각 국가가 차별적 보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대응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평가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굴하고, 각 사례의 배경, 심의과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2) 차별적 언론보도와 시정권고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제언

- (1) [기존 시정권고 심의 기준 및 사례의 한계점 실태 조사] 본 연구에서 주목한 국가별 차별적 언론보도 시정조치 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의 심의기준이나 관련 법령이 가지는 한계점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현재의 규제와 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과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자 했다.

- (2) [기존 시정권고 심의지침 보완책 제시] 차별적 언론 관련 국내의 문헌고찰을 통해, 기존 심의 기준과 지침을 보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언을 제시했다. 이는 구체적인 예시와 사례를 통해 설명되며, 언론중재위원회나 관련 기관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차별적 보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연구를 통해 각국의 차별적 보도 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언론의 차별적 보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4. 연구 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1)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진은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법규범 고찰과 언론보도 내용분석을 위해 분석대상 국가별 연구진을 구성하였으며, 국가별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사례를 탐색했다. 국가별 심의기구 정관 및 강령에 대한 내용분석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존 자료를 참고한 후 동향 및 특징을 업데이트하도록 했다.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각자가 담당할 분석대상 국가별 자료를 종합하고 정리했다.

특히, 국가별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법규범과 언론보도 내용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언론보도 심의 및 제재기구의 차별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사례 및 특징에 대한 종합단계에서는 각 국가의 언론보도 심의 및 제재기구가 차별적 보도를 비롯해 개인의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저널리즘 가치 추구 위반, 오보 등 다양한 언론보도에 대해 어떤 시정권고를 내렸는지를 아울러 종합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 국가에서 차별적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특징과 경향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했다. 각 국가의 사례를 종합하고, 이를 유형화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해외 언론보도 규제기구와 국내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및 조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각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내 언론의 차별적 보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심의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는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를 준거틀로 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국내의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법령, 심의조항, 윤리강령, 차별적 언론보도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는 각 연구보조원이 담당 국가 관련 자료를 종합한 후,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 국내외 차별적 언론보도와 더불어 다양한 시정권고 관련 사례를 종합하고, 시정권고 내용을 분석하여 국가별 공통점과 차이점 등의 특징을 도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언론보도 시정권고 조치의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표현의 자유' 의미를 고찰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했다.

〈표 1〉 연구 수행 항목과 세부 내용

항목	세부 내용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기구의 법령, 심의조항, 강령 등 주요 항목 분석	각 국가의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법령, 심의조항, 윤리강령 등 전수 조사한 후 주요 항목을 파악하도록 한다.
차별적 언론보도와 시정권고 사례 종합	각 국가에서 발생한 차별적 언론보도와 더불어 기타 시정권고 사례를 종합한다.
차별적 언론보도와 시정권고 사례 내용 유형화	차별적 언론보도를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시정권고 사례(예, 초상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유형화 하도록 한다.
차별적 언론보도와 시정권고 사례 특징 도출	차별적 언론보도와 기타 시정권고 내용의 특징을 파악한 후 시정권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특징을 파악하도록 한다. 국가별 차별적 시정권고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2023-2024년을 중심을 분석하였다.
차별적 언론보도에 대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의 고찰	차별적 언론보도 시정권고 조치의 발전적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1. 차별은 왜 나타나는가?

1) 인간의 지배 욕구와 사회성의 패러독스

왜 차별이 존재하는가? 이는 자신들의 생각에 오류가 없음을 확신한 데에서 비롯된다.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고질적인 욕구가 있다. 지배자든 혹은 동료 시민이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성향을 다른 사람에게 행동의 규범으로 강요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인간의 사회성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유사해지고자 하는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Searle, 2010: 108). 타인들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충동으로 인해 집단의 제도와 가치관들을 별 저항이 없이 수용한다.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동조 현상이 없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사람들을 집단 내에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달리 행동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종종 이상한 사람 혹은 '왕따'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다양성이 일탈과 사회 병리로 전환되는 것이다(Hogg 2005, p. 251). 인간의 사회성은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생각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한다. 사람은 개인이기보다 집단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한다. 이는 사회의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관성으로 나타난다.

2) 제2장은 책임연구원이 국내 학술지에 발표했던 논문들을 활용해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인간의 믿음과 가치가 다양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믿었던 것들이 우연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들을 접하면, 마치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생각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한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신념을 더욱 공고히 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윤리적인 규칙들에 의해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의 기준을 흔드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속한 집단의 가치를 따른다. 그 가치들이 인식론적으로 유리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들은 방향을 잃고 외부의 압력에 취약해진다. 사람들은 대부분 완벽하게 진정한 감정을 갖고 해당 믿음을 수용한다. 이는 우리들의 사회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어벽 역할을 한다.

2) 관습의 신화화와 무오류성의 환영에 의한 닫힌 사회

남자와 여자의 물리학적 차이가 사회적 차별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한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논의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자신의 사회생활에 지침이 되는 습관적인 믿음이 알게 모르게 신화화 되면서 진리로 간주된다. 밀은 문화 그리고 문명들의 믿음들이 매우 신속하게 우상이 되면서 그 어떠한 비판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에 엄청 놀랐다. 이를 밀은 “관습의 마술적인 영향력(magical influence of custom)”(Mill/서병훈, 1859/2013, 26쪽)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면서 우연하게 생긴 관습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면서 우연성이 사라진다. 관습들은 점진적으로 ‘매우 명료하고 정당화’ 되면서 사람들은 관습이 우연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망각한다. 관습들의 상대적인 우연성이 필연적으로 간주되면서, 어떠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Mill, 1843, p. 220). 관습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전환되는 것, 즉 신화화가 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완벽하게 신화화되면서 자연스러운 언명이 되는 순간, 마치 자연의 질서를 공격하는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처럼 그것을 반대하는 행위가 불경스러운 행위가 된다. 여기서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남들이 자연스럽고 신의 계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끔 온갖 노력을 다한다.

관습의 신화화는 전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방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더불어, 권력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을 불확실성과 혼란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에서 이를 받아들인다. 나아가 밀은 이러한 작업들이 자신들이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강력한 공격 수단이라고 보았다. 밀은 이데올로기를 논의한 학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도 불구하고 밀은 저서 <자유론>과 <여성의 종속>에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기술하였다. 그가 주장하기를, “지배하고 있는 계급이 있는 곳에는, 해당 나라의 도덕의 많은 부분이 그들 계급의 이해관계와 계급의 우월성 감정에서 비롯된다.”(Mill/서병훈, 1869/2006, 221쪽). <여성의 종속>에서도 “힘의 우월성의 법칙(law of superior strength)”에서 나타난 여자에 대한 남자의 지배는 점진적으로 자연권의 언어로 무장을 한다. 여자들이 왜 자신들이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위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면서,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지배를 영속화 시키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된다(Mill/서병훈, 1869/2006).

밀은, 이데올로기는 그것에 의해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무의식적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남자와 여자들 간의 동일하지 않은 권력에 의해 나타난 우연성을 두고, 자신들의 자연스러운 우월성을 반영한다고 강요한다. 우연히 그리고 인위적으로 발생된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밀은, 이러한 변화가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깊숙하게 느끼는 상대방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 욕구의 무의식적인 영향이라고 묘사하였다. <자유론>에서 밀은 다수의 횡포와 순응의 명예를 가능하게 하는 안정된 유대감의 필요성, <여성의 종속>에서는 권력과 성(性)에 대한 욕구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데올로기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하는 심리학적인 기제다. 따라서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전복하고자 위협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밀은 우연성이 필연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 인간의 믿음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지배가 처음에는 남자의 우월한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물리적인 힘의 우월성이 존재의 우월성으로 전환된다. 결과적으로 여자들은 자신들을 옥죄는 관습에 대해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된다. 우연히 발생한 관습이 필연성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무요류성의 환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선다.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믿는 그 어떠한 믿음도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반대 의견을 못 듣게 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자신들이 대신하여 그것에 관해 결정을 한다(Mill/서병훈, 1859/2013, 56쪽). 이러한 환상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들의 장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면서, 말살되어야 할 위협이라고 간주한다. 반대되는 의견을 “이단자”, “불경”, 그리고 “부도덕”이라는 말을 이용하여 인습을 파괴하는 개인들이라고 공격하거나, 혹은 모든 종류의 의견들을 반대하는 소수들을 맹렬하게 공격을 한다(Mill/서병훈, 1859/2013: 57-58쪽). 이렇게 차별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나타난 우연성이 마치 당연한 진리로 전환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3) 다수의 횡포와 인식의 전체주의

사회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집단을 차별함으로써, 해당 사회에서는 다양한 생각이 공존할 수가 없게 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들과의 열린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신들 판단의 무오류성의 환영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이 들어서 매우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한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관습 혹은 믿음을 절대적인 확실성이라고 판단한다. 만약에 해당 의견이 전적으로 옳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옳지 않은 의견의 반박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변호함으로써, 살아있는 진리(living truth)를 얻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게 된다. 사람은 실수하기(fallible) 마련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자신이 선하다고 믿고 있는 행위의 지침 역할을 하는 관습 혹은 도덕이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 없다(Mill/서병훈, 1859/2013, 31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역설로 인해 차별이 자연스러움으로 전환된다. 민주주의 이론에 의하면, 시민들의 전체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은 바로 시민들의 의지, 즉 여론에 달려있다. 이 원칙에 모순이 숨어있다. 민주주의가 내세우는 여론은 모든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다. 다수의 시민들 중에서 활동적인 사람들이면서 자신들을 다수파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의 의지다(Mill/서병훈, 1859/2013, 25-26쪽).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의 위험은 바로 전체의 의지와 부분의 의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간혹 너무 쉽게 전체 의지와 부분 의지를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데 있다.

다수의 의지가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다수의 원칙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정치가가 시민들의 의지를 제대로 행사한다손 치더라도, 이는 바로 자신들을 선출한 사람들인 다수의 의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치가들이 모든 시민들에 대해 책임을 갖고 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강력한 정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모든 정치가들이, 간혹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시민들을 위해 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치적으로 결정된 의견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다양하고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로 구성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치적 결정들은 만장일치의 합의의 결과가 아니라 다수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다루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의 원칙이 자연스럽게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양도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상식적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지기 마련이다.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특히 자

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분위기의 심각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유를 원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수의 가치관과 판단이 해당 사회에서 진리로 간주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지위를 획득한 가치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원시인(primitive)이라는 말이 있다. 과연 원시인이라는 말이 원시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단어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원시인이라는 말을 마치 어떠한 모순이 없는 자연언어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원시인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어서 사용하였는지를 생각한다면, 아마도 자신들과 다른 집단을 원시인이라고 호칭하면서 얻는 사회적인 혜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신들은 문명인이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은 원시인이라고 명명하면서 모든 면에서 타인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면서, 자신들의 존재의 우월성에 의문을 제시하지 않게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곧 우월하다고 하는 집단의 인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로 간주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이것이 인식의 전체주의다. 바로 이렇게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여 타인의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들의 힘의 논리를 이용하여 타인들을 사회에서 배제시키면서, 배제당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다. 여기에서 연구진은 차별이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유 결과에 도달한다.

4) 한국에서의 차별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법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인종, 병력, 나이, 장애,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서 ‘동성애 조장법’이라고 명명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위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할 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법에 저촉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표현에 대해 자기검열을 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특정 집단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없다는 이유가 표현 자

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특정 집단에 대한 명명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하였는지를 생각할 단계가 되었다. 차별금지법 통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특정 집단에 대해 차별의 용어를 사용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차별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과연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간주할 수 있을까? 차별의 용어가 아닌 평등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의 변화가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될까? 더불어 그동안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들리게 함으로써 의견의 다양성의 폭이 확대되는 것이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지 등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2. 차별은 왜 문제가 되는가: 개인의 개별성 제고 기회의 상실

과연 사람을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즉 개인의 정의가 무엇인가? 홉스(Thomas Hobbes), 로크(John Locke), 루소(Jean-Jacques Rousseau)로 대표되는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보편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상호계약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형성한다. 개인과 개인은 서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단지 계약에 의해 상호관계를 맺는다. 계약의 종류는 시간과 공간의 문화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그들은 개인과 사회를 이분법으로 바라보면서 개인의 행위와 사회 질서의 접점을 찾고자 하였다. 사회를 개인과 분리된 실체가 있는 존재로 파악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질서에는 항상 간극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사회가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사람들은 계약론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각자 다른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각자가 추구하는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각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적 공간들이 중첩되면서 타인에게 해를 주는 사례가 나타난다. 각자의 모습이 다르듯이, 각 개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모습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밀에게 있어서 사회는 자유스러운 환경 속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나타나는 관계의 망이다.

연구진은 인간을 관계망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인간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관계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관계의 특성에 영향을 행사한다. 이에, 연구진은 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차별에 관한 문제를 관계망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에게 차별이라는 용어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차별의 용어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자유와 차별은 관계가 형성되면서 나타났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권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난 권력은 해당 집단, 나아가 사회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작동된다. 관계가 형성되면서 작동되기 시작한 권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누구에 의해 주로 작동되는지에 따라 사회질서가 형성되며, 해당 사회질서는 사람들의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차별로 인해 나타나는 권력의 불평등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한 방향, 마지막으로 자신이 결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위한 실천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관계망이 확대되었다. 네트워크 시대는 과거보다 사람들 간의 관계 형성이 용이하고 관계망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 정치적인 권력을 시민들이 갖게 되면서, 지배자와 시민이 하나이고, 지배자의 이해와 의지가 곧 시민들의 이해이고 의지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정치적인 권력의 제한과 관련한 논의보다, 새롭게 등장하는 억압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출현은 인간들의 관계망이 평등의 이름으로 확대되면서 시민들 간의 보이지 않는 억압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다보니,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을 위해서는 남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타인에 대한 공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망에서 자연스럽게 타인의 자유를 해치는 현상들이 새로운 억압으로 나타났다.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는 개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도 자신이 속한 집단과 다른 의견을 주장하면 안 된다.”(Mill, 1832, On Genius, CW vol. I: p. 288). 남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사람(Mill, 1832, On Genius, CW vol. I: p. 288)이라는 오명을 씌운다. 사회의 다수들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견과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한다. 이러한 도덕성에 근거한 비난 이외에도 다수의 횡포의 원인은 사람의 심리적인 면에도 존재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살펴보면서, 그들과 비슷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무조건 관습을 추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수 있다. 사람의 심리가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동조자가 나타나고 다수에 의한 횡포가 가능하다. 다수의 가치관에 대한 이유 없는 동조가 민주주의를 쪼개는 것이다. 민주주의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밀이 주장한 개별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개별성은 능동성을 의미한다. 능동적인 성격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능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그럼으로써 사회의 변화 혹은 진보에 기여한다. 둘째, 능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개인은 수동적인 사람들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행복에 기여한다. 수동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만족하면서 안전을 추구한다. 반면에 능동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변화를 추구한다. 그러다 보니 환경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능동적인 인간들에 의해 사회는 발전한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사회관계적 불평등은 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 영향력, 정체성, 그리고 책임감 등에 관해서 어떻게 인지하는가를 조작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종종 심리적으로 종속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지조차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그들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불평등한 사회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횡포를 피할 수가 없다. 불평등한 사회관계에서 나타나는 횡포는 종종 너무 자연스럽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어떠한 저항도 없이 마치 추종해야 할 믿음이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인다. 이러한 이유로, 차별을 통한 횡포에 의한 지배가 저항을 허락하지 않으며, 결국 그 어떠한 저항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차별은 차별을 받는 사람들과의 어떠한 논의도 없는 지배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횡포는 많은 사람들을 순종적으로 만드는 제국주의적인 동이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관계의 평등이 요구된다. 차별금지법이 관계의 평등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보는 이유다.

개인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자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러셀(Bertrand Arthur William Russell)은,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전통의 권위, 자신의 열정,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은 자신을 반대하는 주장들을 기꺼이 들어야(listen) 하며 비판적인 고찰로써 자신의 논리를 정립해야 한다(Russell, 1944, p. 3).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믿음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믿음을 어떠한 방법으로 갖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만약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으면 그의 생각은 자유롭지 않다. 어떠한 의심이나 비판 없이 논리적인 근거를 도외시하면서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믿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편견이다. 그러나 비록 스스로 비판적인 고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도,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는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Mill/서병훈, 1859/2013, 45-46쪽).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한정의 자유가 아니다.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권위와 자신의 욕망에 복종하지 않으며 단지 증거와 논리에 자신의 판단 근거를 두고 있는 지적인 자유 내에서의 자유를 추구한다. 따라서 그들은 만약 자신의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판명이 나면, 새로운 사실을 추구하며 나아가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비록 자신의 의견이 매우 소중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의견을 기꺼이 바꾼다. 검열과 같이 의견이 그르다고 판단하여 사람들이 해당 의견을 듣지 못하게 한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항상 옳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력을 이용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과 같다(Mill/서병훈, 1859/2013, 45쪽; 56쪽). 더불어 그릇된 의견이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면, 즉, 그릇된 의견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하는 검열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앗아간다. 결국, 최종 판단은 남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해야 한다.

검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항상 옳다는 “무오류성”을 전제하고 있다. 무오류성의 전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는 의견을 듣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Mill/서병훈, 1859/2013, 45쪽). 여기서 밀이 강조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검열 행위는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에게도 해가 되지만, 그 표현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침묵을 강요당한 의견의 가치를 박탈한다. 밀이 의미하고 있는 무오류성은 자신의 의견이나 학설에 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의견이나 학설을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의견이나 학설이 확실하다고 결정함을 의미한다(Mill/서병훈, 1859/2013, 56쪽). 따라서 밀의 무오류성 주장은 바로 말하는 행위보다는 해당 주제에 관한 모든 의견이 진위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들려야 함’을 의미한다.

만해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을 생각해 보자. 한국 사람치고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님’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님이 무슨 의미인지도 중요하지만,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은 침묵에 방점을 찍는다. 민주주의에서는 침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발적인 침묵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율에 의한 침묵은 민주주의에서의 공인(公人)로서의 개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타율에 의한 침묵이 어떻게 가능한가? 첫째, 권력에 의한 압력이다. 이는 부정적인 자유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인류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외부 권력에 저항해 왔다. 즉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보이는 권력’에 대한 저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둘째, 특정 집단 혹은 개인이 말을 하는데, 듣지 않을 때이다. ‘표현의 자유’ 이름으로 소수 집단에게 말을 하라고 하지만, 과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셋째, 특정 개인과 집단의 의식을 다수 집단이 통제하면서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비근한 예로 2014년에 나타난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다. 의식의 노예가 되면 과연 자신의 자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합리적 자유를 통한 동등한 인간관계 정립의 필요성

개인의 주체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환경으로서 밀은 “합리적 자유”(Mill, 1869/2006, 184쪽)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행위자가 처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권력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행위자로서의 개인이 어떠한 권력 구조에 처해있는가에 따라 자신이 주체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Baum, 2000, pp. 4-5;10-12). 합리적 자유(rational freedom) 개념은 자유론자의 자유 개념과 매우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에서 시작된 개념으로서, 인간은 자신들을 개인적으로 특성화(individuation)하기 위해서 공적인 삶에 참여를 해야 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개념이 있다. 자신이 타인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호호혜 관계(reciprocal relations)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 협조를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자유는 개인만을 강조하는 자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관계를 배제한 자유에 관한 논의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사람에게 자유라는 개념은 바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다. 사람이 혼자 산다면 자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유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따라서 그러한 자유는 개인과 사회의 선(善)을 실현하기 위해 비록 분리된 개인이지만 하나로 융합됨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 수준에서의 권리의 관계에서 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교훈은, 사람으로서의 존재 이유는 비록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로 융합되는 데 있다(Clark, 1975, pp.107-108).

밀은 <여성의 종속>에서 합리적 자유를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바람직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상호 우월성을 인정한 상호 호혜 관계(reciprocal superiority)(Mill, 1869/2006, 182쪽)”라고 본다. 상호 호혜 관계는 인간 관계의 이상형으로 인식될 수 있다. 밀이 주장하고 있는 상호 호혜 관계는 서로 협조하면서 혼자서 가능하지 않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관계로 보고 있다. 밀이 윌리엄 브리지 아담스(William Bridges Adams)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부인인 해리엇 테일러(Harriet Taylor Mill)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연구자는 밀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들은 서로 각자의 고유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마음과 마음의 우정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넘치는 샘물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것도 사람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존재에게는 그리 흥미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서로

의 우월성을 인정한 상호 호혜적인 관계(reciprocal superiority)이다. 우리는 각각 상대방이 알고 있지 않은 것을 많이 알고 있다. 더불어 상대방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할 수 없는, 혹은 잘 하지 못하는 많은 것을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다. 각자에게 상대방이 매우 소중할 수밖에 없는 다른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각자가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 더욱 강할 수밖에 없다.”(밀이 1832년 10월 20일에 William Bridges Adams에게 보낸 편지).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방법의 하나로서 밀이 강조하고 있는 상대방의 우월성을 인정한 상호호혜적인 관계는 개인들에게서, 나아가 사회에서 서로 간의 다른 점을 배우고 서로 위해주고 협조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깨우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관계는 개인들의 지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들이 한 곳에 모여면서 상호간의 존경과 사랑으로 - 당시의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 서로 관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과 경험의 교환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인간관계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밀은, 상호 호혜적인 관계는 친구 사이에서 각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상대방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에게는 자신과 동일한 존재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 사이의 다름이 매우 중요하다. 상호 호혜적인 관계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한다.”(Mill, 1869/2006, 183쪽). 밀의 설명에서 연구진은 다음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밀은 각자가 추상적 수준에서의 평등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주위에서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여성의 종속> 말미에서 밀은 자유와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은 영원히 대립(Mill, 1869/2006, 187쪽)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치적 혹은 사회적 삶에서 제외시키고 사람들의 선택권을 축소할 수 있는 권력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의 성격 형성 과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성격을 만들어 가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침해하는 수많은 권력들이 존재한다. 타인의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 개인의 마음이 위축된다면, 열정은 축소되고, 영혼은 짓밟힐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의 자유에 대한 주장은 무의미하다. 단지 ‘싫증나는 노래’에 불과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밀은 비록 성문법(成文法), 즉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여성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회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음을 경고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력들 간의 균형을 제시하고 있다.

밀은 <여성의 종속>에서 남성에 의해 여성들이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는 모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밀은 이러한 심리적인 위축의 상태를 벗어나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삶을 “합리적인 자유

의 삶”(Mill, 1869/2006, 184쪽)이라고 하였다. 합리적인 자유는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 세력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개인의 개별성을 스스로 제고시킬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단순히 공적인 차원에서의 남녀평등을 보장함이 여성의 주체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보이지 않는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횡포가 불공정하다고 인지될 필요가 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인식 지배는 남성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여성의 도덕적인 권리를 앗아가는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밀은 성문법 차원에서의 평등이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하는 명문화된 법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위해 타인에게 그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도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도덕성이 전제된 합리적인 자유’는 모든 사람이 타인을 위한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밀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추상적으로 명문화된 자유에 대한 법의 존재, 그 이상을 의미한다. 개인들이 처한 상황요인들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개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권력 간의 역학 관계에 의해 개인들이 자신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자유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국내 법규범 고찰

1) 헌법 차원에서 차별금지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장애, 나이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차원에서 차별금지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헌법은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데 국가적 차원에서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은 차별을 방지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근간이 된다. 예를 들어,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헌법」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을 바탕으로 평등권의 개별적 보장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차별 없이 개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헌법」은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 평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사람의 편견과 고정 관념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를 미리 방지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인, 기관·조직, 사회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차별금지 관련 법규범 역시 존재하고 있으며, 기관·조직 단위 법규범(예, 「국가인권위원회법」, 「방송법」 등)이 보다 구체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2〉 평등권 관련 「헌법」 조항

조항	세부 내용
제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3조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규범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 속 인권 상황을 진단하고 인간다운 삶의 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정책적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인권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자기 결정권과 같은 자유권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환경권, 주거에 관한 권리와 같은 사회권, 그리고 재판청구권 등 각종 청구권과 같은 온갖 종류의 인권이 포함된다(인권교육용결정사례집, 2024, 27쪽)”고 강조한다.

모든 개인은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을 받아야 하며, 인권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가치를 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으로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해 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시 개인 구제를 하고 인권 관련 법률 및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관이다. 해당 위원회는 차별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성희롱 등의 문제를 다루며,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인권과 인격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 개인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언론의

보도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위원회는 특정 보도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할지라도 이를 강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언론의 차별적 보도를 선정하는 장치와 기준이 기관 수준에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의 차별적 보도를 판별하고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법규범 자체의 추상성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표 3〉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	세부 내용
제2조 제3항	<p>“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하 “차별 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p>
제2조 제7항	<p>“군인권침해”란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병영생활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p>
제48조	<p>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 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의 중지 5.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p>
제19조	<p>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차별적 언론보도에 대한 직접 제재 범조항

언론의 차별적 보도 관련하여서는 「방송법」을 꼽을 수 있다. 「방송법」은 국내 방송사를 대상으로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언론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동법 제6조에 따르면 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방송사의 언론보도에서 특정 인물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차별적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서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한다. 아울러,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 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방송사가 부당하게 시청자를 대상으로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표 4〉 차별금지 관련 「방송법」 조항

조항	세부 내용
제6조	②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① 방송 사업자는 다른 방송 사업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76조	③ 국민 관심 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 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85조의 2항	④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음으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하, ‘뉴스통신법’)은 우리나라 뉴스 통신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사회적, 공적 책임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다. 방송, 신문, 통신사의 발전을 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 차원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통신법 제5조는 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뉴스 통신사들이 차별 없이 보도하는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규정은 국내 뉴스 통신사들이 차별적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뉴스통신법은 뉴스 통신사업자가 지속해서 중단 없이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생산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뉴스 통신사들이 보도 활동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동시에 언론보도에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하고 차별이 없는 사회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뉴스통신법은 언론의 차별적 보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언론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 차별금지 관련 뉴스통신법

조항	세부 내용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뉴스통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뉴스통신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뉴스통신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하여야 한다 ⑤ 뉴스통신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 뉴스통신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할 때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편집에서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차별적 언론보도 방지 및 제재를 위한 심의규정

차별적 언론보도는 방송과 통신 기관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150호에 따라 공표되었다. 해당 규정은 방송에서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특정 성정체성을 지닌 인물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부정적, 희화화,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특정 성정체성을 다른 정보보다 열등하게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은 정치와 공직 선거 관련 문제를 다룰 때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입장에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며, 대담 및 토론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가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방송은 신체적·정신적 차이, 학력, 재력, 출신지역, 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거나 부정적,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 성별과 연령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특정 집단의 인물이나 집단이 언론보도를 모방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범죄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다.

이 규정은 방송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방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며, 차별 없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다원성과 포용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법조항은 아래와 같다.

〈표 6〉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조항	세부 내용
제9조 공정성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양성평등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차별적 언론보도 금지 및 제재를 위한 시정권고

대한민국의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분쟁 조정 및 중재하는 기능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존엄성과 명예 침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및 배상의 기능적 역할 뿐만 아니라 차별적 언론보도로 인한 혐오와 낙인의 문화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시정권고를 제도화하였다.

국내 차별적 언론보도 시정권고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차별적 언론보도는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뉴스를 의미한다. 언론보도 내용 중 ‘절름발이’, ‘눈먼 돈’, ‘결정 장애’, ‘절름발이 제도’ 등 표현을 새롭게 만들어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부정적 비유를 차별적 보도라고 명시할 수 있다(이세원, 2024). 이러한 차별적 언론보도는 (1) 성별, (2) 연령, (3) 지역, (4) 종교, (5) 장애인, (6) 문화, (7) 국가 등 다양한 인물과 집단을 대상으로 국내 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뉴스통신, 방송 등의 보도물에서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적 보도를 제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존재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³⁾과 제33조 제1항⁴⁾을 근거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알려 향후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권고적 조치를 하는데, 언론의 차별적 보도에 대해서도 그 시정을 권고한다(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편람 2024. 05일자).

시정권고위원회는 7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며⁵⁾, 심의대상은 개인적 법익(예,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보도, 명예훼손 보도, 형사사건 피의자 및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에 대한 신원 공개 보도 등), 사회적 법익(예, 인종, 국적, 지역 등에 대한 차별 보도 등), 국가적 법익(예,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침해 보도 등)으로 구분하여 심의하고 있다.

〈표 7〉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대상⁶⁾

심의 권고 대상	세부 내용
개인적 법익	단순 고소·고발사건 보도,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보도, 아동·청소년의 보호 규정 위반 보도, 공익신고자·부패행위신고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규정 위반 보도, 정신질환자·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보도 등
사회적 법익	인종, 국가, 지역 등에 대한 차별 보도, 재난 보도 시 피해자 및 가족의 인격권 침해 보도, 범죄사건에 대한 필요 이상의 설명 보도, 성과 관련된 선정적 묘사 보도, 자살사건에 대한 상세한 묘사 보도,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않거나 왜곡된 제목, 자극적·선정적 제목 보도 등
국가적 법익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보도, 국가기밀 누설 보도 등

특히,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편람에서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에 관한 범규범은 (1) 보도 윤리, (2) 차별금지, (3) 재난 보도, (4) 범죄 묘사, (5) 성 관련 보도, (6) 자살 보도, (7) 마약 및 약물 보도, (8) 폭력 묘사, (9) 충격·혐오감, (10) 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11) 여론조사 보도, (12) 기사와 광고의 구분, (13) 기사 제목의 항목으로 분류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내 언론사가 사회 질서에 해악을 끼치거나 침해하는 보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체 권고사항을 마련하였는데, ‘마치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언론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였다.

그 중, 차별금지 항목의 내용은 언론이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

3)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

4)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5) 해당 위원회 구성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을 근거로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6) 시정권고를 위한 심의기준은 부록에 수록했다.

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도록 권고한다. 언론보도에서 특정 인물이나 집단 관련 내용 중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지나치게 보도하면서 시민들에게 차별 및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을 시정권고 결정을 한다.⁷⁾

이러한 차별적 보도 시정권고는 다양한 국내 주요 법규범을 바탕으로 정비되었다. 시정권고 심의 기준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6) 차별금지를 위한 윤리 및 준칙

①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언론은 개인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인 의제로 확산시키는 데 소임을 수행한다(한국기자협회 인권 보도 준칙, 2024). 특히, 한국기자협회 인권 보도준칙에 따르면, 언론사는 언론보도 과정과 결과물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언론인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언론보도로 인해 차별과 소외의 대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자세히 탐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를 위해 특정 인물이나 집단·계층에 편향되지 않도록 보도를 수행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국내법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의 범주화를 구분한 바와 같이 기자협회에서도 차별적 언론보도 금지를 위해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인 차원에서 언론보도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② 신문윤리실천요강: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4항에 따르면, 언론인은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보도는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부추기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며,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언론은 차별과 편견 없이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언론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명시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2조는 기자가 취재를 위해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7)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편람 제2장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 제10조의 2항(차별금지)은 2019년 3월 20일 개정되었음을 밝힌다.

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는 행동은 언론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도의 질을 저하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에 따르면, 기자는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고,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이는 언론보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선정적인 보도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보도는 대중의 오해를 초래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조항들을 살펴보면, 언론은 여론 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지만, 차별과 편견을 배제하고, 공정성과 윤리성을 유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보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윤리강령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윤리강령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또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비해 요약 형식으로 정리되었다. 본 규정은 인터넷신문의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적 보도를 지양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등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으며, 편견, 차별, 혐오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인터넷신문은 저작물 활용 시 출처를 표시하고 표절을 금지한다. 취재·보도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광고와 기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신뢰성 있는 광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를 보장하고, 게시글로 인한 타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인터넷신문의 책임과 윤리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보도와 광고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2.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영국 법규범 고찰

1) 언론보도 규제기구

언론의 차별적 보도 규제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방송과, 방송 이외의 언론(신문과 잡지)의 두 체제로 나뉘어 작동되고 있다. 방송 분야 규제는 오프콤(Ofcom)이, 그외의 언론에 대해서는 2014

년에 출범한 영국언론표준기구(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zation, 이하 IPSO)와 2016년 출범한 독립언론모니터(IMPRESS)가 있다. IPSO는 영국의 최대 독립적 언론 규제기관이며, 독립언론모니터(IMPRESS)는 후원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다. 언론사를 회원사로 하며, 불만 접수 및 처리뿐만 아니라 언론사·언론인·대중에 대한 교육과 회원사의 표준규약 준수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뉴스 인터내셔널 도청 스캔들’과 관련된 사건부터 살펴보자. 이 사건은 당시 인기 신문이었던 뉴스오브 더 월드(News of the World)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사건이다. 이 신문은 뉴스 소재를 얻기 위해 도청을 했으며,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조사에서 이들이 유명인, 정치인, 그리고 영국 왕실 구성원을 대상으로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범죄 행위가 공개되면서 언론의 비윤리적 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레베슨 청문회(The Leveson Inquiry)를 시작하였다. 레베슨 청문회는 2011년 7월, 레베슨 판사가 주재하였고,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여러 차례의 공개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12년 11월에 레베슨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영국 언론의 문화와 윤리를 평가하고, 기존의 언론불만위원회를 대신할 새로운 독립기관을 설립할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이 신규 기관은 새로운 법률을 통해 국가의 공식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사건은 언론의 책임과 윤리를 재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레베슨 조사단은 2012년 11월에 보고서를 발표하며 새로운 독립기관의 설립을 권고하였다. 기존의 언론 위원회는 뉴스 인터내셔널 도청 스캔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으며,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를 포함한 정치인들은 2011년 7월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레베슨 조사는 법적 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규제 기관에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예외적 손해 배상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 정치적 논의 끝에 2013년 10월에 자문회의를 통해 언론 자율규제가 승인되었다.

언론사들은 이 승인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대안을 제시했으나, 고등법원은 이 대안이 레베슨 보고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신문출판업계는 자체 규제방안을 계속 추진했으나, 일부에서는 업계 대표들이 여전히 규제기관 의장 및 이사 선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미디어 스탠다드 트러스트(Media Standards Trust)는 레베슨 권고안을 충족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조사 권고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언론 스스로 규제해야 한다는 자율규제의 원칙과 함께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약속을 하였다. 언론인식패널(Press Recognition Panel, PRP)은

2014년 11월 3일에 설립되어 언론 규제기관의 활동을 검증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기능한다. IPSO는 PRP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 없다고 선언했으며, PRP는 독립언론모니터(IMPRESS)를 공식적인 규제기관으로 인정하였다. PRP는 ‘뉴스인터내셔널 도청 스캔들’ 이후 레베슨 조사의 결과로 설립되었으며, 새로운 독립적 언론 규제시스템은 모든 정당의 지지를 받으며 공공의 보호와 언론자유 증진을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2016년 10월, 독립언론모니터는 PRP의 승인을 받아 영국 최초의 공식 인정을 받은 언론 규제기관이 되었다.

독립언론모니터는 PRP로부터 처음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독립적 언론 감시기구로, 레베슨 조사 권고안을 철저히 따른다. 이 기관은 영국 전역의 독립적 지역 언론, 탐사보도 매체, 특수 분야 뉴스 출판물 등 200개 이상의 매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전국 신문들은 독립언론모니터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IPSO에 남아 있다.

IPSO는 2014년 9월 8일에 설립된 영국의 최대 독립적 언론 규제기관이다. 이는 1990년부터 운영된 언론불만위원회(PCC)가 해산된 후 설립된 기구이다. IPSO의 목표는 저널리즘 전문성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기자연합(NJU) 등은 IPSO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쓸모없는 이른바 ‘규제’ 기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IPSO의 에디터 코드(Editor's Code of Practice)는 정확성, 사생활 침해, 충격 및 슬픔의 처리, 괴롭힘 등의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IPSO는 신문과 잡지의 편집내용과 기자들의 행위를 규제하며, 불만을 처리하고 자체조사를 통해 에디터 코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 IPSO는 정정을 요구하거나 심각하고 지속적인 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벌금부과도 가능하다.

2)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법 동향

영국의 차별 보도와 관련된 법은 2010년 「평등법」(The Equality Act 2010)과 2003년 〈의사소통법〉(The Communications Act 2003) 그리고 영국언론표준기구(IPSO)의 에디터 코드(Editor's Code of Practice)의 제12조⁸⁾ 등이 있다. 특히 제12조는 개인에게만 적용된다는 다음의 특성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도 편견적이거나 경멸적인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a) 나이 (b) 장애 (c) 건강 (d) 성별 정체성 또는 전환 (e) 혼인 또는 시민 결합 상태 (f) 임신 (g) 인종

8) 제12조 1) 언론(press)은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신체적·정신적 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경멸적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 2) 언론(press)은 기사 내용과 진정하게 관련되지 않는 한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신체적·정신적 질환이나 장애를 드러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h) 종교 (i) 성별 또는 성적지향 (j) 차별의 위험에 처한 다른 모든 특성. 즉, 언론은 주제와 관련이 없는 한 장애, 건강, 성별 전환 또는 정체성, 임신, 인종, 종교 또는 성적 지향을 언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4.1 조항에 명시된 특성에 기반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나 학대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한편, 독립언론모니터의 표준강령(Standard Code)의 경우, 차별 사안과 관련하여 제4조⁹⁾의 규정이 있다.

영국 「평등법」의 법제정 과정을 보면, 먼저 1997년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여러 가지로 나뉘었던 법들의 통합입법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 노동당이 선거공약으로 「평등법」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년 차별금지법 검토기구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단일한 「평등법」안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영국은 2010년 「평등법」제정 이래 2020년 현재까지도 그 영향으로 많은 법제가 변화되고 있다. 「평등법」의 의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국가구성원에 대한 평등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평등 관련 법률들을 종합하기 위함이다. 2010년 「평등법」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로서, 하나는 차별금지 법률의 체계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등 촉진 지원 법률을 강화하는 것이다(김선화, 2020). 「평등법」에서는 차별에 대해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하고 있다.

더불어 2003년에 제정된 「의사소통법」은 통신과 방송이 융합됨에 따라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각각의 법률 체계를 통합하는 데 의미가 있다. 동법은 오프콤(Ofcom)이라는 새로운 규제기구 설치와 역할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 두 법에 따라 영국 방송이 규제받고 있다.

3) 영국 「평등법」의 의미

「평등법」에서는 차별에 대해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¹⁰⁾

(1) 직접 차별

직접차별(direct discrimination)이란, 법에 따라 보호되는 속성으로 인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덜 우호적으로(less favorably)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제13조 제1항). 즉, A가 장애가 있는

9) 4.1 언론(Publishers)은 나이, 장애, 정신건강, 성전환(gender reassignment) 혹은 성별 정체성, 혼인 혹은 시민 동반관계, 임신, 인종, 종교, 성 혹은 성적지향 기타 차별에 취약하게 만드는 특징들을 근거로 하여 편견이나 경멸적 언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4.2 언론(Publishers)은 기사 내용이 관련되지 않는 한 사람의 장애, 정신건강, 성전환 혹은 성별 정체성, 임신, 인종, 종교, 성적지향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된다. 4.3 언론(Publishers)은 나이, 장애, 정신건강, 성전환 혹은 성별 정체성, 혼인 혹은 시민 동반관계, 임신, 인종, 종교, 성 혹은 성적지향 기타 차별에 취약하게 만드는 특징들을 근거로 하여 적대감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

10) 이 부분은 심재진(2017)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영국의 2010년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논문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B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였으면 A가 B를 차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직접차별은 금지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직접차별은 보호되어야 하는 특성 때문에 특정인을 다른 사람보다 불평등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특정한 사람이 흑인 혹은 동성연애자라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가 해당된다.

「평등법」은 두 가지의 속성을 결합하여 차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소위 복합차별 조항을 도입하였다(제14조). 이 경우 B는 자신에 대한 A의 대우가 결합되어 있는 두 가지 속성 중의 각각을 이유로 한 직접차별이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B가 여성 장애인인 경우, 이전에는 B가 차별받은 이유가 여성이라는 것이나 장애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차별이 인정되었는데, 이제는 여성이라는 것 혹은 장애인이라는 것 각각을 이유로 한 직접차별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양자의 결합으로 차별이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간접차별

「평등법」은 간접차별의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고, 예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장애와 성전환으로 확대하였다. 「평등법」 제19조는 간접차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어떤 사람(A)이 다른 사람(B)의 해당 보호 특성에 관하여 차별적 규정, 기준, 관행을 B에게 적용한 경우, A는 B를 차별한 것이 된다. (2) 제1항에 관하여 규정, 기준, 관행은 다음의 경우에 B의 해당 보호 특성에 관하여 차별적인 것이 된다. (a) A가 B의 보호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해 규정, 기준, 관행을 적용하면, 또는 적용하려고 생각하였을 때, (b) 당해 규정, 기준, 관행에 의해 B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B의 특성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특히 불이익을 입은 경우, (c) 당해 규정, 기준, 관행에 의해 B가 이러한 불이익을 입었을 때 또는 입는다고 생각하였을 때, (d) 그것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을 A가 입증할 수 없는 경우이다. (3) 해당 보호 특성은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및 시민 동반관계,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을 포함한다. 즉 모든 보호 대상 특성에 간접차별이 인정되었다. 외관상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특성이 있는 사람이나 집단에 불리한 효과가 초래되어 발생하는 차별을 의미한다. 직접차별이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에 근거한 인위적인 차별이라면, 간접차별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보호되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에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

(3) 공적 영역의 평등 의무(Public Sector Equality Duty)

공적 영역의 평등 의무는 2010년 영국 「평등법」에 신설된 의무이다(제149조). 이에 따르면, 공적 기관이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조항은 (a) 차별(discrimination), 괴롭힘(harassment), 부당한 괴롭힘(victimisation) 그리고 <평등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제거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서 (b) 보호되는 인적 속성을 갖는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기회균등을 진전시키고, (c) 보호되는 속성을 갖는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 사이의 우호 관계(good relations)를 강화할 필요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due regard)해야 한다(제149조 제1항). 이 평등의무 중 (b)에 해당하는 기회균등을 진전시킬 필요에 대한 적절한 고려는 (a) 보호되는 속성을 갖는 사람들이 겪는 불이익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필요, (b) 보호되는 속성을 갖는 사람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할 필요, (c) 보호되는 속성을 갖는 사람들이 공공의 영역이나 그 참여가 비례하지 않는 낮은 영역에 참여하도록 고취할 필요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포함한다(involve)(제149조 제3항). 위 평등의무 중 (c)에 해당하는 우호관계의 증진은 특히 편견에 대처하고 이해를 증진할 필요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포함한다. 영국 공영방송 BBC와 Channel 4, 그리고 S4C가 이 조항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의사소통법」(the Communications Act 2003)의 32조 7항에서 규정한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a content service"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평등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07년 10월 1일에는 「평등법」에 따라 평등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로써 이제까지 차별금지 관련 사안을 담당해 왔던 세 기구, 즉 기회균등위원회, 인종평등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이 평등인권위원회에 흡수되었다. 평등인권위원회는 세 기구를 단지 통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령, 성적 지향, 종교 등 관련 차별 사안을 담당하는 한편, 1998년 「인권법」(the Human Rights Act 1998)의 집행을 담당하게 되었다. 평등인권위원회는 「평등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 불법적인 차별의 시정과 평등의 증진 책임을 맡는다(제8조). 또한, 사람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능력이 편견 혹은 차별로 제한되지 않는 사회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2006년 「평등법」 제3조[a]).

4) 차별적 보도와 관련된 「의사소통법」 조항

구체적으로 방송이 차별적 보도를 할 때 어떠한 조항에 따라 규제를 받는지 살펴본다. 2003년 「의사소통법」에서 차별적 언론보도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프콤(Ofcom)의 기준에 관한 조항(제319조)이다. 이에 따르면 오프콤은 텔레비전에서 전송되는 모든 프로그램

의 기준을 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다. △뉴스는 정확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면 안 된다. △368E 조항의 해로운 소재(Harmful material)를 피해야 한다. △사람들 간에 혹은 집단 간에 폭력이나 혐오를 초래하는 프로그램을 전송하면 안 된다. 즉 인종주의,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도덕과 정신 발달에 해가 되는 소재를 취급하면 안 된다.

둘째, 오프콤의 일반적인 의무(General duties of Ofcom) 사항(제3조)과 관련하여 다음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영국의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 제320조에 따라, 특수한 불편부당의 요구 사항(Special impartiality requirements)에서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불편부당하게(due impartiality) 전송해야 한다. 즉 지나치게 돌출되는(undue prominence) 식으로 전송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정치 분야와 산업 분야에서 논쟁이 되고 있거나 현재의 공공 정책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해 오프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인데, 대부분 불편부당(due impartiality)을 중립적 의미로 오해하고 있는데, 즉 문제가 되는 사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동일한 방송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수학적 의미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프콤에 따르면 이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데, 아주 작은 단어지만, ‘due’가 매우 중요하다. 이 의미는 프로그램의 주제와 특성에 적합하고 적당한지와 관련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불편부당을 적용할 때, 주제의 성격, 프로그램과 채널의 특성, 예상되는 시청자들의 기대 등의 상황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째, 공정성 조항을 준수할 의무(Duty to observe fairness code)(제326조)와 관련하여, 제107조의 형평성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서 특정 개인들과 조직을 불공평하게 다루면 안 된다.

3.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독일 법규범 고찰

1) 독일 언론평의회와 규제

독일 언론평의회(Presserat)는 독일 언론의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처리와 함께 독일 언론강령에 명시된 윤리규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1953년 영국 언론위원회에서 영감을 받아 1956년 11월 20일 언론협회가 설립했으며, 비영리 단체이다.

언론평의회는 독일 언론의 명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책임을 갖는다. 또한, 기자들의 취재원 접근을 자유롭게 하고, 편집 데이터 보호 및 금융시장 보도에 대한 자율규제를 실행하고 있다.

〈표 8〉 독일 언론평의회 개요

항목	세부 내용
구조와 조직	<p>언론평의회는 독일 법에 따라 등록된 협회로 구성된다. 이 협회는 두 개의 출판사 단체와 두 개의 기자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독일 신문 출판사 연합 (BDZV) ② 독일 기자 연맹 (DJV) ③ 독일 통합 서비스 노조 내의 독일 기자 연합 (dju in ver.di) ④ 독일 잡지 출판사 연합 (VDZ) <p>독일 언론평의회는 주요 기관인 "총회"는 2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각 단체는 7명의 회원을 파견한다. 28명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된 세 개의 불만처리위원회가 있다: 일반불만처리위원회 두 개는 각각 8명의 회원으로, 편집데이터 보호를 위한 위원회는 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기관은 각 단체의 제안에 따라 2년 동안 출판사와 기자들로 구성된다. 각 기관의 의장은 2년마다 네 개 단체 중 한 단체가 맡는다.</p>
언론윤리강령	<p>언론평의회는 언론윤리강령은 1973년에 처음 발표된 후 개정되어 왔다. 기자들의 일상적인 보도행위를 위한 규칙은 다음과 같은 윤리를 준수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진실에 대한 존중과 인간 존엄성 유지 ② 철저하고 공정한 연구 ③ 사생활과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존중, 침해 금지 ④ 폭력과 잔혹함에 대한 부적절한 선정적 묘사 회피
불만 제기와 제재	<p>개인, 단체, 또는 정당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독일 언론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에 게시된 모든 종류의 저널리즘 작업에 대해 불만을 접수받는다. 그러나 무료신문이나 개인 홈페이지,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광고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 불만접수는 무료이며, 법률적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p> <p>언론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개 경고 (해당 내용을 인쇄 출판해야 하는 의무 포함) ② 비공개 경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③ 견책 통보 ④ 권고 통보 <p>또한, 출판물이 독자의 편지나 편집 교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 불만처리위원회는 정당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p>

2)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조항

독일의 언론윤리강령 제12항은 누구도 성별, 장애, 민족, 종교, 사회적 혹은 국가적 소속 때문에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범죄행위를 보도할 때 피의자나 범죄자의 민족, 종교, 소수 집단 소속을 언급할 경우, 이러한 정보가 개별 사건을 전체 집단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거나, 공익을 위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런 소속을 언급해서는

안 되며,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 '12.1'과 그 후속 지침들은 범죄보도 시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 지침들은 범죄자와 피의자의 소수 집단 소속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편집자들이 각 사례에서 그룹 소속을 언급할 정당한 공익이 있는지, 혹은 차별적 일반화의 위험이 더 큰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단순한 호기심은 책임 있는 언론 윤리적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당국이 집단 소속을 명시한 경우에도 언론사는 독립적인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집단 소속과 범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가정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추측이나 소문은 보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다만, 범죄가 특히 심각하거나 예외적인 성격을 지닐 때, 다수의 범죄자가 공통된 특징으로 연결될 때, 범죄자의 정보가 중요할 때, 범죄 형태나 빈도와 집단 소속 간의 연관성이 보도의 주제일 때, 범죄자가 자신의 집단 네트워크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의자의 집단 소속이 수사 절차에서 특별한 처우를 받을 때,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소속이 중요한 문제일 때 등은 소속을 언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집단 소속을 언급함으로써 개별 사건의 차별적 일반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이는 차별적 고정 관념을 사용하거나 집단을 헐뜯는 경우, 머리기사에서 부적절하게 강조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언론보도에서는 독자들이 편집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표 9〉 독일 언론평의회 차별금지 관련 조항

조항	세부 내용
조항 12	누구도 성별, 장애, 민족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국가적 집단에 대한 소속으로 인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침 12.1	범죄를 보도할 때, 용의자나 범죄자의 소속이 되는 민족적, 종교적 또는 기타 소수자 집단을 언급함으로써 개인의 비행이 차별적으로 일반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소속은 정당한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만 언급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언급이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범죄가 특히 심각하거나 예외적인 성격 또는 규모를 가진 경우 ② 다수의 집단에 의해 범죄가 저질러졌으며, 이 집단의 상당 부분이 민족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국가적 기원 등의 공통 특성으로 연결되는 경우 ③ 범죄자의 생애가 범죄 보도에 중요한 경우. 범죄 형태나 빈도와 범죄자 또는 용의자의 집단 소속 간의 연결이 보도의 주제가 되는 경우 ④ 범죄자가 자신의 소속 집단의 독립적인 구조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용의자의 소속이 수사 절차에서 특별대우를 받은 경우

위 제12조와 관련된 지침 '12.1'은 가해자나 용의자의 소수 집단 소속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편집부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혹은 차별적 일반화의 위험이 있는지를 각 사례

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단순한 호기심은 책임 있는 언론윤리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관련 자료가 집단 소속을 언급하더라도 언론사는 독립적인 윤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범죄와 집단 소속 간의 연관성에 대한 가정은 사실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추측이나 풍문은 책임 있는 보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해자나 용의자의 집단 소속을 언급하는 것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로 인정될 수 있다.

- 범죄의 성격이 심각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예) 테러, 조직범죄, 살인, 고문, 폭발물 공격(분데스리가 BVB 팀 버스 사건, 2017년)
- 범죄가 특정 집단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 예) 2015/16년 쾰른 새해 전야 사건
- 용의자의 이력이 범죄 보도에 중요한 경우: 예) 피의자가 난민으로, 이주 과정 중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범죄와 집단 소속 간 연관성이 보도의 주제일 경우
- 용의자가 집단 구조를 활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 범죄 집단의 침묵 의무나 연대 의무를 이용한 범죄
- 수사 과정에서 집단 소속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경우: 예) 외국 국적 때문에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체포 영장 발부
- 재판 중 집단 소속이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경우: 예) 집단 내 갈등해결 전통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3) 독일 언론평의회 불만 처리 절차

독일 언론평의회에서 차별적 일반화는 (1) 집단 소속을 강조해 고정 관념을 조장하는 경우, (2) 부적절하게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반복하거나 제목에 강조하는 경우, (3) 단순한 수사적 장치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차별적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 접수시 이용자 불만의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는 서면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명백한 근거가 발견되었을 경우, 관련 언론사 편집국에 해당 불만접수 내용을 전달하고 중재하도록 한다. 중재는 언론평의회 소관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언론평의회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불만 처리과정은 접수, 초기 검토, 편집국 의견 수렴, 필요 시 중재, 위원회 검토 및 결정, 결과 통보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4) 방송 규제

주미디어청(Landesmediananstalt)은 민영방송 프로그램 및 텔레미디어(Telemedien)에 적용되는 규칙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이 규칙에는 미디어에서의 청소년 보호, 광고, 일반 프로그램 원칙에 관한 법적 규정이 포함된다.

주미디어청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영방송 및 저널리즘-편집(journalistisch-redaktionell) 콘텐츠를 포함한 텔레미디어에서 저널리즘적 주의 의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둘째, 미디어에서 법적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통제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촉진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한다. 셋째, 미디어 접근성, 투명성 등을 촉진하여 미디어 참여 기회가 증가하도록 보장한다. 넷째, 방송 및 텔레미디어에서의 미디어 법 광고 규정 위반을 감독한다.

다섯째, 인터넷 영역에서의 의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마지막으로, 민영방송,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에서 경쟁 관련 규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주미디어청의 인허가 및 감독위원회(ZAK)는 일반 저널리즘 원칙, 경품 규정 및 광고 규정 준수 여부를 또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는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JMStV)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독일 <기본법>(Grundgesetz)은 방송이 각 주(州)의 소관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방 차원의 프로젝트 등의 경우, 주미디어청은 전국위원회, 전문가위원회, 연구그룹 등을 두고 협력한다.

주미디어청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브레멘주, 함부르크/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헤센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니더작센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라인란트-팔츠주, 잘란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 등 각 주에 1개씩 또는 주 규모에 따라 지역범위를 합해 1개씩 설치되어 있다.

〈표 10〉 주미디어청 차별금지 관련 조항

조항 번호	내용
제4조 제1항 제3호	인구의 일부 또는 국가, 인종, 종교 또는 민족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해당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폭정을 옹호하거나 인구의 일부 또는 상기 명시된 집단을 모욕, 악의적으로 폄하 또는 명예를 훼손하여 타인의 인간 존엄성을 공격하는 행위

4.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일본 법규범 고찰

일본에는 국내 언론중재위원회 및 유럽의 언론평의회 및 관련 기구와 같은 일본 전체 언론보도를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이진아·최은진, 2009). 일본은 총무성을 중심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언론사 보도 내용을 심의하거나 규제하는 데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1945년 이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시스템을 참고해 일본 언론전파감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폐지하였다. 이후 우정성을 설치해 언론 정책과 규제를 시도하였으나 정부의 통제와 간섭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었다. 2000년 후반 무렵 일본 내 언론사를 중심으로 자치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차현숙, 2009).

일본 「방송법」은 방송 콘텐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1) 공정성과 중립성, (2) 프로그램 선정 기준, (3) 방송사 허가 및 등록, (4) 전파 사용 규제, (5) 공공서비스 등의 조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본 「방송법」은 이러한 조항 내에서 방송 콘텐츠의 품질 향상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소위 「신문법」이라는 명명 하에 언론 규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판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판별하는 「출판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 총무성 산하 언론 규제기구도 존재한다.

특히, 일본은 언론사 자체적으로 언론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이진아·최은진, 2009). 아사히신문은 '보도와인권위원회', 마이니치신문의 '열린신문위원회', 니혼게이지신문의 '독자위원회', 산케이신문의 '산케이신문보도검증위원회', 교도통신사의 '보도와독자위원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먼저, 일본신문협회는 가입된 회원을 대상으로 언론 보도 윤리강령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협회에서 제공하는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표 11〉 일본신문협회 윤리강령

원칙 및 조항	세부 내용
기본 원칙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보편적 원리이다. 이 권리는 언론·표현의 자유 아래, 높은 윤리의식을 갖추고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미디어가 존재해야만 보장된다. 신문은 그에 가장 적합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자 한다. 엄청난 양의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에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이 강하게 요구된다. 신문의 책무는 정확하고 공정한 기사와 책임 있는 논평으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공적문화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편집, 제작, 광고, 판매 등 모든 신문인은 그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또한 독자와의 신뢰 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언론·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스스로를 엄격히 단속하고, 품격을 존중해야 한다.
자유와 책임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신문은 보도·논평의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그만큼 행사에 있어 무거운 책임을 자각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원칙 및 조항	세부 내용
정확성과 공정	신문은 역사의 기록자이며, 기자의 임무는 진실의 추구이다. 보도는 정확하고 공정해야 하며, 기자 개인의 입장이나 신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은 세상에 아부하지 않고, 소신을 관철해야 한다.
독립성과 관용	신문은 공정한 언론을 위해 독립을 확보한다. 모든 세력의 간섭을 배제함과 동시에, 이용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한편, 신문은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도 정확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언론에 대해서는 기꺼이 지면을 제공해야 한다.
인권 존중	신문은 인간의 존엄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며 사생활을 배려한다. 보도가 잘못되었을 때는 신속히 정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될 때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품격과 절제	공적·문화적 사명을 다해야 할 신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동등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기사와 광고 모두 표현에는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판매에 있어서는 절제와 양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접해야 한다.

1) 일본방송협회(NHK)의 방송지침

일본방송협회(NHK)는 국민 전체의 기반에 서 있는 공공방송기관으로서 어떠한 간섭받지 않고, 부당하지 않은 견해를 유지하며, 방송을 통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양질의 방송을 통해 공공의 복지 증진과 문화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방송협회는 다음과 같은 방송지침을 마련하였다.

〈표 12〉 NHK의 방송지침 주요 내용

기준	세부 내용
인종·민족·국제 관계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일으키는 방송과 국제 친선을 방해하는 방송은 금지된다. 이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 간의 편견을 예방하고, 국제적 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종교의 공정한 다름	종교에 관한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는 종교적 차별을 방지하고, 다양한 신앙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치적 문제의 공정성	정치적 문제는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편향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보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차별 방지	방송 프로그램은 사회적 평등을 유지하고, 상호 지원의 정신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안 및 공익을 해치는 방송은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폭력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승인되지 않는다.
표현의 품위 유지	방송에서는 저속한 어휘 사용을 최대한 피하고, 인간의 공포나 불안 또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방송 표현의 품위를 유지하고, 수신자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NHK의 방송지침은 차별적 언론보도 규제 관련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부당하게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침해하지 않도록 취재와 정책의 과정에서 세심함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먼저, 차별적 언론보도 규제를 위한 헌법 조항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차별적 언론보도 규제 관련 헌법 조항

조항	세부 내용
헌법 제11조 (기본적 인권의 행사)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행사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현재와 미래의 국민에게 주어진다.
헌법 제13조 (개인의 존엄, 행복 추구권)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경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법률과 기타의 국정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헌법 제14조 (법의 아래 평등)	모든 국민은 법의 아래에 평등하여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특출성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일본 헌법을 바탕으로 NHK는 인종, 민족, 피부색, 차별,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그 밖의 의견, 출신국가, 사회적 출신, 직업 또는 재산의 여부 등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차별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거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떤 표현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방송 전체의 구성이나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인종이나 성별, 직업 또는 장애 등에 대해 이유 없이 언급하는 것은 차별에 이를 우려가 있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종, 민족, 국가, 풍속이나 관습, 언어, 종교에 대해 경멸하거나 비웃어서, 차별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삼가도록 밝히고 있으며,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룰 때는 해당 개인이나 관련자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 입히지 않도록 밝히고 있다.

희소병이나 유전성 질환 등의 방송에서도 말로서의 표현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차별이나 프라이버시 등 인권에 충분히 유의해야 하고,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로 방송에서 종교적 신앙, 교리, 종파를 다룰 때는 정확하고 편향 없이 송출되어야 한다. 종교적 행사나 유례 등을 희화하거나 비웃는 표현은 방송되어서는 안 된다.

2) 니혼 TV 취재 및 방송 규범

〈니혼 TV〉(Nippon TV)의 취재 및 방송 규범은 텔레비전 취재 및 방송 규범에서 사실 및 사실에 대한 논평을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가 표현의 자유를 담당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사회적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며 자율적이고 공정한 취재와 방송을 수행해야 한다. 〈니혼 TV〉는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힌다. 취재와 방송은 진실을 추구하며 공익을 위해 공공성 있는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홍보, 이익, 비방, 중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도 배제해야 한다고 밝히고있다.

인권의 존중 또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취재와 방송은 인권을 존중하고 불합리하게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건·사고의 취재와 방송에서는 피해자와 피해 관계자의 감정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며, 집단 취재나 강제적인 취재로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 장소에 부당하게 침입하거나 촬영해서는 안 되며,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숨은 촬영도 금지된다.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신조, 신체적 조건, 성적체 성, 성적 성향,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방송 목적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있다.

보도 전체 과정에서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방송은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날조는 절대 배제해야 한다. 정보의 근거를 가능한 한 명시하고, 취재원의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과장된 표현이나 단정적인 표현을 피해야 한다. 방송의 공정성이 의심될 만한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향력의 자각도 중요한 부분이다.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자각하고 품위와 절제를 유지하면서 시청자의 목소리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과도한 폭력적 표현과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피하는 한편,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시청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중하게 대응하며, 잘못된 방송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고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규범들은 방송이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보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3) TBS 방송윤리강령

〈TBS〉는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사명을 인식하고, 미디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문화의 보급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평화롭고 민주적인 세계, 더 나은 사회 환경, 지구 환경의 실현 및 공공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TBS 방송윤리강령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방송 프로그램 구성, 심의, 광고, 공정성 및 객관성, 교양 및 교육 프로그램, 예술 및 스포츠 등의 콘텐츠와 장르적 종류에 따른 제작 기준을 다소 제공하고 있으나 언론의 차별적 보도 관련 규범 및 윤리강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4) TV 아사히 방송윤리강령

〈TV 아사히〉(TV Asahi)의 윤리강령은 〈TBS〉와 유사하다. 〈TV 아사히〉는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사명을 중시하며, 진실을 전달하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강조한다. 방송의 품격을 높이고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민간방송의 특색을 살려 다양하고 건전한 프로그램 편성 정책을 세우고, 이를 통해 문화의 향상과 교육에 이바지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 풍부한 생활 정보 및 매력적인 예능을 제공하여 공공의 복지와 산업 경제의 번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령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는 시청자의 생활시간을 고려하여 보도, 교육, 교양, 오락 프로그램 및 광고의 조화를 유지하도록 밝혔으며, 사내외 심의기구를 활용하여 방송의 질적 향상과 품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보편적인 방송’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후지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기준

〈후지 TV〉(Fuji TV)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기준은 방송의 공적 임무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제작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무(無)편견의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준수하며 진실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힌다. 공공의 복지와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등 가치 추구적 규범을 제공하고 있으나 차별적 언론보도에 관한 구체성을 띤 윤리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6) TV 도쿄 언론보도 윤리지침

〈TV 도쿄〉(TV Tokyo)는 더욱 구체적으로 언론보도 윤리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자사 언론종사자들의 보도 임무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 지침은 언론보도 시 지켜야 할 기본태도와 행동지침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도를 실현하고자 한다. 주요 조항과 내용은 다음 〈표 14〉에 요약하였다.

〈표 14〉 차별적 언론보도 규제 관련 윤리지침

조항	세부 내용
기본 태도	보도의 임무는 진실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이다. 보도의 자유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모든 권력과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저널리스트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을 존중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고통과 고민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항	세부 내용
알 권리에 봉사	보도는 시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고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모든 압력과 간섭을 배제하고, 정보 사회에서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보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객관성의 확보	다각적인 취재를 통해 사실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하며, 편견이나 불필요한 강조를 피해야 한다. 다양한 견해를 공정하게 제시하고,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해야 한다.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은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보도 내용은 과도한 연출 없이 품위와 절도를 유지해야 한다.
인권의 존중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인종, 성별, 직업 등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보도 목적으로 얻은 개인 정보는 철저히 관리하고, 보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필요에 따라 익명 보도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관련자의 심정을 고려해야 한다. 과열 보도나 강제적인 취재로 대상자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회적 영향력의 자각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자각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시청자의 문명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하며, 잘못된 보도는 신속히 정정해야 한다.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인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일본민간방송연맹 방송기준

2023년 5월에 개정된 일본민간방송연맹 방송기준에 따르면, 일본 민간방송은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지향하면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인종, 성정체성, 국가, 종교, 지역, 직업, 신념 등의 차이로 차별적인 취급을 하지 않도록 강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장면을 다루지 않도록 권장하며, 모방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언론보도의 책임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표 15〉 일본민간방송연맹 보도 책임 조항

조항	세부 내용
보도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도 활동은 시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며, 사실에 기반하고 공정해야 한다. ② 뉴스 보도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자유를 불합리하게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취재와 편집 과정에서 편향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시청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뉴스에서 의견을 다룰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⑤ 사실을 보도할 때라도 잔인한 장면의 세부 묘사는 피해야 한다. ⑥ 뉴스, 뉴스 해설 및 중계 등은 부당한 목적이나 홍보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⑦ 잘못된 뉴스 보도는 즉시 철회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5.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유럽연합(EU) 법규범 고찰

1)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기능조약」 차원에서의 차별금지

유럽연합(EU)은 EU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두 가지 주요 조약인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이하 ‘TEU’)과 「유럽연합기능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TFEU’)을 통해 모든 시민이 평등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TEU 제2조는 “EU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주의 및 인권 존중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EU의 근본 가치로서 평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TEU 제21조에서는 EU의 국제 활동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기반으로 하며, 평등과 연대의 원칙을 존중한다고 규정하여, EU의 외교 정책에서도 차별금지와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음을 나타낸다.

아울러, TEU를 통해 EU는 직접적으로 차별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어, TEU 제3조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EU 내에서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반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16〉 평등권 추구 및 차별금지 관련 TEU 조항

조항	세부 내용
제2조	EU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주의 및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하며,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가치는 다원주의, 차별금지, 관용, 정의, 연대 및 남녀 평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가치이다.
제3조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맞서며, 사회적 정의와 보호, 여성과 남성의 평등, 세대 간 연대와 아동의 권리 보호를 도모한다.
제21조 1항	EU의 국제 활동은 그 자체의 창설, 발전 및 확장을 영감한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며, 이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인간 존엄성 존중, 평등과 연대의 원칙, 그리고 유엔 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다.

TEU가 평등 추구와 차별금지를 중요한 가치로 삼으며 EU의 기본 가치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면, TFEU는 남녀 평등, 인종, 종교, 장애, 연령 등에 따른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즉,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TFEU 제8조는 EU는 모든 활동에서 남녀 간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근거가 된다. 아울러, TFEU 제

10조에 따르면, EU는 정책을 정의하고 실행하는 데 성별, 인종 또는 민족적 출신,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과 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차별금지를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TFEU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및 제도 수립의 근간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TFEU 제18조는 조약의 적용 범위 내, 포함된 특별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적에 따른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EU 내 모든 국민이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한다. 또한, TFEU 제19조는 성별, 인종 또는 민족적 출신,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과 싸우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차별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표 17〉 평등권 추구 및 차별금지 관련 TFEU 조항

조항	세부 내용
제8조	EU는 모든 활동에서 남녀 간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0조	EU는 정책과 활동을 정의하고 실행함에 있어 성별, 인종 또는 민족적 출신,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과 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국적에 따른 모든 차별을 금지하며,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통상 입법 절차에 따라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제19조	EU에 부여된 권한 내, 다른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사회는 특별 입법 절차에 따라 만장일치로 행동하고 유럽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성별, 인종 또는 민족적 출신,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과 싸우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EU는 TEU와 TFEU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사용하여 유럽 내 모든 시민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TEU와 TFEU를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차별금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규범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이하 ‘ECHR’)과 「EU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CFREU’)은 유럽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EU는 모든 시민이 생명권, 표현의 자유, 종교

의 자유, 자기 결정권과 같은 기본적인 자유권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을 보호받을 권리, 환경권, 선거권 등 다양한 사회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CHR와 CFREU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포괄적인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ECHR은 제10조를 통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표현을 통해서라도 개인이 타인의 명예 또는 권리를 침해할 시 처벌이 될 수 있음 또한 명시하며 차별적 보도 또는 혐오표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EU는 ECHR을 통해 인권 보호를 주장하며 모든 차별 행위를 금지한다. 예를 들어, ECHR 제14조는 권리와 자유가 성별, 인종, 언어,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보장한다고 규정하였다.

〈표 18〉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유럽인권협약」 조항

조항	세부 내용
제10조	①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공공 당국의 간섭 없이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여 의견을 보유하고 정보를 수령하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이 조항은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 기업의 면허 요구를 금지하지 않는다. ② 이러한 자유의 행사는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므로, 민주적 사회에서 국가 안전, 영토의 통합 또는 공공 안전의 이익, 질서 또는 범죄 예방, 건강 또는 도덕 보호, 타인의 명예 또는 권리 보호, 비밀로 받은 정보의 공개 방지,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 유지를 위해 법률로 규정된 형식, 조건, 제한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4조	이 협약에서 설정한 권리와 자유의 향유는 성별, 인종,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 민족과의 연관,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 등의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없이 보장된다.

CFREU은 ECHR에 비해 차별금지과 평등 추구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제21조는 성별, 인종뿐만 아니라 재산, 정치 성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하였고, 제22조를 통해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별도로 적시하며 이들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만약, 이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별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긴급 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표 19〉 개인의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와 관련된 「EU 기본권 헌장」

조항	세부 내용
제21조	① 성별, 인종, 민족, 출신, 언어, 종교, 신념, 정치적 성향, 재산, 출생, 장애, 나이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한다. ② 유럽 공동체 설립 조약과 유럽연합 조약의 적용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러한 조약의 특별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은 금지된다.

조항	세부 내용
제22조	EU는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23조	고용, 임금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남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성적 소수자를 위한 이점을 제공하는 조치를 유지하거나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24조 1항	아동은 복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그들의 의견은 그들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들을 관련하는 문제들에 고려되어야 한다.
제25조	EU는 노인이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사회 및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6조	EU는 장애인이 독립을 유지하고 사회적 및 직업적 통합을 보장받으며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인권과 사회적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ECHR와 CFREU를 통해 유럽 내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ECHR와 CFREU는 포괄적인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하므로 실제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탄압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특정 보도가 차별적이거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강제로 중단시킬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언론의 차별적 보도를 판별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보도 시정 조치 또는 권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3) 차별적 보도에 직접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이하 'DSA')은 EU 내에서 차별적 보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도구로 작용한다. 언론의 차별금지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나 중재 절차는 각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EU에는 관련 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EU는 DSA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환경에서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차별적 보도가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DSA 제34조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신중하게 식별, 분석 및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본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 특히 차별을 내포하는 보도 또는 기사가 포함된다.

DSA는 이러한 위험 평가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차별적 콘텐츠가 확산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완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DSA 제35조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 사업자가 차별적 또는 불법적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플랫폼 사업자는 중요 발언이나 차별적 보도 발견 시 신속한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수행해야만 한다.

EU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업로드될 때 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명확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의 조항들은 DSA가 차별적 보도를 포함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DSA는 EU 내에서 차별적 보도를 제재하고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20〉 차별적 보도 제재와 관련된 「디지털서비스법」

조항	세부 내용
제34조 1항	거대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 사업자는 서비스 관련 시스템과 알고리즘의 기능, 또는 이용으로 인한 연합 내의 모든 위험을 신중하게 식별, 분석 및 평가해야 한다.
제35조 1항	거대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 사업자는 제34조에 따라 식별된 특정 위험에 맞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완화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의 기본권에 대한 영향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제48조 4항	위기 프로토콜은 아래의 규정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a) 위기 프로토콜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비상 상황을 결정하는 구체적 한도 및 목표 (b) 각 참가자의 역할 및 위기 프로토콜이 활성화된 후 준비 및 실행해야 할 조치 (c) 위기 프로토콜을 활성화하는 절차 (d) 특정 비상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 (e) 헌장에 명시된 기본권 행사, 특히 표현 및 정보의 자유와 차별금지 권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보호 조치

4)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EU 강령 및 준칙

(1)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EU는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을 제재하기 위하여 '온라인 내 불법 혐오표현 반대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을 도입하였다. 최근 혐오표현 및 차별적 보도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Facebook),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트위터(현 X), 유튜브(YouTube) 등 주요 IT 기업들과 협력하여 본 강령을 제작하였다.

해당 강령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혐오표현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강령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또는 민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 또는 증오를 선동하는 모든 행위를 혐오표현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혐오표현 행위는 사회

적 갈등을 초래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강령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혐오표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IT 기업은 혐오표현에 대한 신고를 검토하기 위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혐오 표현을 발견할 때 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뜻하며, 신고된 콘텐츠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IT 기업은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시 24시간 이내에 이를 검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혐오 또는 차별적인 내용의 콘텐츠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용자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해당 강령을 통해 회원국들이 불법 혐오표현을 철저히 단속하고, IT 기업들이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차별적 보도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21〉 EU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조항	세부 내용
제1조	IT 기업은 자신의 서비스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신고를 검수할 수 있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IT 기업은 폭력 선동과 혐오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	IT 기업은 유효한 불법 혐오 발언 제거 통지의 대다수를 24시간 이내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비활성화해야 한다.

(2) 차별금지를 위한 윤리 및 준칙

유럽평의회는 ‘언론윤리규정’(Ethics of Journalism)을 제정함으로써 미디어가 사회에서 갖는 역할과 그 책임에 걸맞은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하였다. 언론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전쟁, 테러와 같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단순히 정보 전달의 역할을 넘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에 유럽평의회에서 언론이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윤리적 규정은 언론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다양한 공동체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리규정은 민주주의 수호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 이는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혐오표현을 통해서도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언론은 갈등 상황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부정적인 고정 관념을 강화하는 보도가 아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여 공동체 내의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윤리 규정은 실질적으로 차별적 보도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윤리 규정은 폭력성과 선정성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콘텐츠를 금지한다. 이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언론은 책임감 있는 보도를 통해 미래 세대가 폭력과 차별이 아닌, 평화와 관용을 가치로 여기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언론보도의 윤리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표 22〉 유럽평의회 ‘언론윤리규정’ 조항

조항	세부 내용
제33조	사회에서 테러, 소수자에 대한 차별, 외국인 혐오 또는 전쟁 등의 상황으로 인해 긴장 또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은 다음의 민주적 가치를 수호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인간 존엄성 존중, 평화롭고 관대한 문제 해결, 폭력과 증오 방지, 혐오표현 방지, 문화, 성별, 종교를 기반으로 한 모든 차별 방지
제34조	민주주의 가치를 방어하는 데 있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언론은 갈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상호 이해, 관용 및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제35조	텔레비전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폭력을 미화하거나 성과 소비주의를 착취하거나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메시지 또는 이미지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

6. 소결

대한민국, 독일, 영국, 일본, 유럽연합은 차별적 언론보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언론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법적 가치를 정비하고 언론사는 이를 준수하는 의무를 행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는 헌법적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조항을 바탕으로 「헌법」 제11조에서 (1) 성별, (2) 종교, (3) 사회적 신분, (4) 출신 지역, (5) 장애, (6) 나이 등 어떠한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조항을 바탕으로 언론사는 차별적 언론보도를 금지해야 한다. 언론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명시해야 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반드시 금지해야한다는 기타 법규범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테두리에서 직접적인 제재 및 규제 권한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일본은 언론보도 규제에 있어 우리나라와 차별점이 존재한다. 일본은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언론사 자체적으로 콘텐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있다. 예

를 들어, 일본 NHK는 인권 존중과 차별적 표현 금지를 명시한 방송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본의 주요 신문사들도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차별적인 보도를 규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자체적인 언론보도 공정성 및 차별금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평등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언론윤리강령에 따라 (1) 성별, (2) 장애, (3) 민족, (4)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범죄 보도의 경우에도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 보도를 권고한다. 언론평의회는 이와 관련해 불만 제기를 접수하고 필요 시 중재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주미디어청을 통해 민영방송 프로그램 규정 준수를 확인하고, 청소년 보호와 광고 규정 등을 모니터링하기도 한다.

유럽연합은 TEU와 TFEU를 통해 언론의 차별적 보도를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해당 기구는 남녀 평등, 인종, 종교, 장애, 연령 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럽 인권 협약 차원에서도 차별적 보도와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차별적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공정성과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차별적 언론보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평등법」과 「의사소통법」 차원에서 공공기관 평등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등한 인권 차원에서 평등성을 중요시한다. 「의사소통법」은 오프콤(Ofcom)이라는 규제기구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조항이 존재한다. 실제로 해당 기구를 통해 차별적 언론보도 규제를 수행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각국에서 차별적 언론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는 공통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법규범의 구체성과 규제 기구의 차이점은 존재한다. 공통으로 성별, 종교, 인종, 신분, 장애 등을 중심으로 차별적 표현 및 언론보도를 금지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와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나 자율성의 차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독일, 영국, 대한민국은 차별적 언론보도를 규제할 수 있는 공공기구(기관)이 존재하는 반면에, 일본은 언론사 자체 규제안을 장려한다. 아울러 규제를 수행하는 방법과 장치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 대한민국

1) 국내 사례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성별, 연령, 종교, 장애, 국가/문화, 인종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차별하지는 않지만, 특정 인물의 사생활 및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뉴스 기사들이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은 뉴스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 「헌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등을 근거로 권고가 이루어진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언론중재법 제5조는 언론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등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정권고 제1조는 왜곡된 제목이나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조항을 근거로 차별적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사항을 권고한다. 2024년 ‘차별금지’ 조항 관련 시정권고는 1차(37건), 2차(16건), 3차(23건), 4차(24건) 등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한 여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영향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언론보도가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비유하는 표현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조장

2022년 <위키트리>는 '예뻐서 결정 장애 온다는 아이코스 일루나...'의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를 받았다. 해당 기사는 당시 출시된 전자 제품을 소개하면서 제품 선택 시 다양한 색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겪을 어려움을 '결정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장애인 또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 비유 대상 표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제목의 경우, 우리 사회 속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일지라도 뉴스 제목에 사용되는 단어 선정에는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2022년 <텐아시아>는 '꿀 먹은 병어리...제니...'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뉴스를 제공하였다. 해당 기사 또한 장애를 부정적으로 비유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비하를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뉴스 기사에서 '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2022년 경남신문은 '동서남북 눈 먼 돈...'이라는 제목을 통해 장애를 부정적으로 비유하였다. 이외에도 장애인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인 '선택 장애', '정신장애', '외눈박이' 등이 뉴스 기사에 다수 존재하였다.

(2) 특정 국가 및 지역 문화에 대한 차별적 표현

2023년 <DBCnews>는 '중국이 중국 했다 자국민도 설드 못 한 코로나 확진 중국인'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를 보도하였다. 해당 기사는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은유적으로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기사는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뉴스 이용자들에게 특정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고정 관념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23년 <원픽뉴스>는 '우리나라 중국이 다 됐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해당 뉴스 또한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맥락적인 차원에서 차별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2023년 <DBCnews>는 '직접 먹어본, 퀄리티 보장...마계인천 고3생, 3명 오피스텔서 마약 팔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다. 해당 기사는 인천 지역 대상에 대한 선입견/고정 관념을 심어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특정 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판단했다.

(3) 특정 나이에 대한 차별적 표현

2023년 <DBCnews>는 '회사서 브이로그 찍는 MZ신입, 지적하면 틀니 딱딱인가요'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게재하였다. 해당 뉴스 기사는 단어를 통해 특정 연령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 관념을 유발하였다고 판단되었다. 세대 차이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나, MZ세대가 아닌 세대를 '틀니

딱딱'이라고 언급하면서 특정 연령층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였다. 이러한 표현의 의도성은 파악하기 불분명하나 표현 자체가 특정 연령대를 암묵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4)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

2023년 <케이데일리>는 '년 선처해 줄 가치 없다. 맘충에 가해진 엄청난 사이다'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보도하였다. 해당 뉴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정제하지 않고 뉴스 제목에서 다루었다. 그뿐만 아니라, 2023년 <위키트리>는 '맘충 악성 민원으로... 등판했다.'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하였는데, 해당 기사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여성을 비하하나 경멸적 내용의 기사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성차별을 내포하는 뉴스

2023년 <경남도민신문>은 '총각 많고 처녀가 부족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보도하였다. 해당 기사는 성매매 합법화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뉴스 기사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성별만을 기준으로 인구 집단을 양분하여 특정 성별의 해외 방문을 특정 목적으로 단정하고 사회적 논란의 대상인 성범죄자들이 특정 성별의 본성에 기인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진실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해 <포스트쉐어>는 '김길수 검거한 남자 경찰 특진 누락되고 내근직 여경만 특진했다'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발표하였다. 해당 뉴스 기사는 경찰 승진 대상에서 성별은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경만 특진하여 문제인 것처럼 부각해 보도하였다. 이에 해당 뉴스는 성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6) 대표적인 국내 차별금지 위반 사례¹⁾

① <위키트리> 2022년 11월 21일 경제면

「예뻐서 결정 장애 온다는 '아이코스 일루나'... 모델별 인기 색상 알려드립니다」 기사

해당 기사는 최근 출시된 전자제품을 소개하며 제품 선택 시 다양한 색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겪을 어려움을 장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인 '결정 장애'로 묘사하였다. 비록 유사한 상황에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나 영향력을 고려할 때

1) 해당 사례는 언론중재위원회 2023년 시정권고 전체 목록에서 발췌하였으며, 언론사 별 위반 사례가 중복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각종 보도 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 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② <텐아시아> 2022년 10월 03일 연예면

「꿀 먹은 병어리였던 YG, 제니 키스·반신욕 사진에 5개월만 사태 수습[TEN피플]」 기사

이 기사는 특정 연예인의 각종 논란에 대한 소속 연예 기획사의 미진한 대처를 ‘꿀 먹은 병어리’에 빗대어 언급하며 장애를 부정적으로 비유한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였다. 비록 유사한 경우에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또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각종 보도 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③ 인터넷 <경남신문> 2022년 11월 20일 오피니언면

「[동서남북]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기사

이 기사는 바다 양식장 관련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에 빗대어 언급함으로써 장애인에 부정적인 표현을 제목과 본문에 사용하였다. 비록 유사한 상황에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또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각종 보도 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 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④ <DBCnews> 2023년 01월 06일 사회·문화면

「“중국이 중국했다” 자국민도 실드 못 한 코로나 확진 중국인」 기사

해당 기사는 국내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에도 불구하고 격리 의무를 위반하여 도주한 중국 국적 입국자를 보도하며,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이고 몰상식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비유

적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였다. 비록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사인 방역과 관련된 소식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국적에 대한 편견 조장 또는 경멸의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국적 소지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⑤ <부천매일> 2023년 01월 12일 뉴스면

「영상문화 단지개발...‘결정 장애나, 대수술이나?’」 기사

위 기사는 지역개발사업의 진척 부진에 관한 해당 지자체장의 모호한 입장을 ‘결정 장애’에 빗대어 언급함으로써 장애를 부정적으로 비유한 표현을 제목과 본문에 사용하였다. 비록 유사한 상황에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각종 보도 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⑥ <DBCnews> 2023년 02월 27일 뉴스면

「회사서 브이로그 찍는 MZ신입, 지적하면 틀니 딱딱인가요?» 누리꾼 '시끌'」 기사

해당 기사는 MZ세대와의 시각차로 인한 직장 내 갈등을 보도하며, 중노년층을 ‘틀니 딱딱’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특정 연령층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한 사례이다. 비록 해당 보도가 세대 차이에 기인한 직장 내 갈등 현상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연령에 대한 편견 또는 경멸의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 표현을 통해 세대 간 혐오와 차별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크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⑦ 인터넷 <지큐(GQ)> 한국판 2023년 03월 15일 엔터테인먼트면

「결정 장애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멘트」 기사

이 기사는 일상의 사소한 선택에도 주저하는 사람들의 우유부단함을 ‘결정 장애’에 빗대어 언급하여 장애를 부정적으로 비유한 표현을 제목과 본문에 사용하였다. 비록 유사한 상황에 해당 표현

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또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각종 보도 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⑧ <오마이뉴스> 2023년 03월 09일

「가족이나? 인류냐, 지구 종말 앞에 선택 장애 온 사람들」 기사

위 기사는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당한 일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미스터리 영화를 소개하며, 딜레마 속 선택의 어려움을 ‘선택 장애’에 빗대어 언급하여 장애를 부정적으로 비유한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였다. 비록 유사한 상황에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각종 보도 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⑨ <울산제일일보> 2023년 03월 02일 06면

「정신장애 앓는 친구 딸 성추행·신체 촬영 70대 징역 6년」 기사

해당 기사는 울산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범죄를 보도하며, 장애를 ‘앓다’로 표현하여 마치 장애가 질병과 같은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제목과 본문에 사용하였다. 비록 유사한 상황에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또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각종 보도 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⑩ <원픽뉴스> 2023년 04월 09일 사회면

「“우리나라 중국이 됐네”... 길거리서 바지 밑으로 대변 ‘툭’ 흘리고 사라진 남성」 기사

해당 기사는 국내 한 변화가에서 행인이 노상에 인분을 투기한 사건을 보도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 또는 경멸적 표현을 보도에 사용하였다. 비록 화제가 된 사건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의 보도라고 하더라도, 특정 국적에 대한 편견이나 경멸의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혐오와 차별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크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⑪ <DBCnews> 2023년 04월 20일 사회·문화면

「"직접 먹어본, 퀄리티 보장"...마계인천 고3생 3명, 오피스텔서 마약 팔았다」 기사

본 기사는 미성년자 마약 유통 범죄를 보도하며, 범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피의자들의 소속 학교 소재지를 언급하며 편견 또는 경멸이 내포된 표현을 보도에 사용하였다. 비록 해당 보도가 마약 유통 범죄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이나 경멸의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혐오와 차별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크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⑫ <경북도민일보> 2023년 04월 05일 15면

「지지층만 보는 '외눈박이 정치' 청산돼야」 기사

해당 기사는 국의 전반을 대변해야 할 정치권이 각 진영별 지지층만을 의식하는 편향된 행태를 '외눈박이'에 빗대어 언급하여 장애를 부정적으로 비유한 표현을 보도에 사용하였다. 비록 유사한 상황에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또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각종 보도 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⑬ <원픽뉴스> 2023년 05월 08일 사회면

「"사진 보고 중국인 줄"...상자에 아기 넣은 채 오토바이 주행하는 소름 돋는 모습에 누리꾼 발칵」 기사

위 기사는 실제 아기를 상자에 담아 오토바이에 싣고 주행하는 위험한 모습이 목격된 사실을 전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 또는 경멸이 내포된 표현을 보도에 사용하였다. 비록 해당 보도가

화제가 된 사건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국적에 대한 편견이나 경멸의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국적 소지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크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⑭ <DBCnews> 2023년 05월 14일 연예면

「“나야? 바비 인형이야?” 장원영, 러블리 ‘바비 인형’ 자태…결정장애 일으키는 비주얼」 기사

해당 기사는 유명 소녀 그룹 아이돌의 외모가 인형에 견주어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임을 ‘결정 장애’에 빗대어 언급하여 장애를 부정적으로 비유한 표현을 보도에 사용하였다. 비록 유사한 상황에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또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각종 보도 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⑮ 인터넷 <뉴제주일보> 2023년 05월 10일 오피니언면

「입도세 논란, 제주도정은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 기사

이 기사는 환경보전 분담금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을 ‘꿀 먹은 벙어리’에 빗대어 언급하여 장애를 부정적으로 비유한 표현을 보도에 사용하였다. 비록 유사한 상황에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또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각종 보도 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⑯ <케이데일리> 2023년 06월 07일

「“넌 선처해줄 가치 없다”...슈퍼카 훼손하고 적반하장 하는 ‘맘충’에 가해진 엄청난 사이다」 기사

해당 기사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아이들의 보호자가 차주에게 보인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도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을 비하 내지 경멸하는 표현을 보도에 사용하였다. 설령 해당 인물의 행

태가 사회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혹은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집단 간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⑰ <데일리메디> 2023년 05월 09일 뉴스면

「문지마 보건소 확대→‘절름발이 제도’ 우려」 기사

이 기사는 의료 공백 보완을 위한 보건진료소 확대 정책에 정작 의료인력 확보 대책은 미비한 상황을 ‘절름발이’에 빗대어 언급하며 장애를 부정적으로 비유한 표현을 보도에 사용하였다. 비록 유사한 경우에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또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각종 보도 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⑱ <남도방송> 2023년 07월 09일 뉴스면

「순천·여수 검찰출신 정치인들, 검찰 특활비 ‘꿀 먹은 병어리」 기사

해당 기사는 검찰 특수 활동비 지출 내역에 대한 검찰 출신 정치인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를 ‘꿀 먹은 병어리’에 빗대어 언급하여 장애를 부정적으로 비유한 표현을 보도에 사용하였다. 비록 유사한 상황에 해당 표현이 미디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또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각종 보도 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⑲ <연합뉴스> 2023년 07월 25일 최신기사면

「“푸틴, 바그너 반란 당시 결정 장애…경고 받고도 진압 지시 안 해”」 기사

본 기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란 당시 하루 동안 지시를 내리지 않은 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비유한 ‘결정 장애’라는 표현으로 보도에 사용하였다. 일상생활에서 ‘결정 장애’라는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용어에 대한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

회적 책임 또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각종 보도 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㉔ <위키투리> 2023년 07월 25일 사회면

「맘충 ‘악성 민원’으로 문 닫은 소아과 원장, 직접 등판했다 (ft. 사이다 결말)」 기사

이 기사는 최근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폐업 사유로 밝힌 악성 민원 경위를 보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을 비하 내지 경멸하는 표현을 보도에 사용하였다. 설령 해당 인물의 행태가 사회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혹은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 사용은 집단 간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㉕ 인터넷 <한국경제> 2023년 10월 16일 오피니언면

「[홍영식 칼럼] “민주당 정권 때 평화가 왔다”라는 외눈박이 도그마」 기사

해당 기사는 역대 대북정책에 대한 야당의 시각을 비판하며 ‘외눈박이’에 빗대며 장애를 부정적으로 비유한 표현을 보도에 사용하였다. 비록 유사한 경우에 해당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각종 보도 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㉖ <경남도민신문> 2023년 10월 05일 14면(오피니언)

「총각 많고 처녀가 부족한 이유」 기사

이 기사는 성매매 합법화 주장을 보도하며, 직접적 인과관계나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성차별적 내용들을 마치 사실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실 또는 논평의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내용이라면 일부 사실관계가 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성별만을 기준으로 인구 집단을 양분하여 특정한 성별의 해외 방문을 특정 목적으로 단정하

고 사회적 논란의 대상인 성범죄가 특정 성별의 본성에 기인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진실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㉓ <인사이트> 2023년 11월 06일 사회면

「“일본행 비행기에 아기 데리고 탔는데, 딱 30초 울었다고 맘충 취급당했습니다”... 엄마의 호소 글」 기사

이 기사는 항공기 내 유아 동반 탑승객이 아기 울음소리로 인한 민폐 우려 등의 고충을 토로한 온라인 게시글을 인용 보도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을 비하 내지 경멸하는 표현을 보도에 사용하였다.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혹은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㉔ <시사저널e> 2023년 10월 04일 기업면

「정유업계, 국정감사 CEO 증인 출석·횡재세 재점화에 ‘병어리 냉가슴」 기사

위 기사는 국내 정유업계가 이른바 횡재세 도입과 물가 관리 압력 등에 반발하면서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의증을 거스르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을 ‘병어리 냉가슴’에 빗대어 언급하였다. 비록 유사한 경우에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각종 보도 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㉕ <포스트웨어> 2023년 11월 10일 실시간 이슈면

「“김길수 검거”한 남자 경찰 특진 누락되고, 내근직 여경만 특진했다.» 기사

위 기사는 최근 탈주범 검거 후 경찰이 단행한 승진 인사에서 특진대상자 중 현장 검거 인력이 배제되고 내근 직원만 특진한 상황을 지적하였다. 남성 경찰도 특진하여 성별은 특진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경만 특진한 것처럼 부각하여 보도함으로써 성차별을 조장할 우

려가 있다. 또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제목을 사용하여 독자를 오인케 하였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2항과 제21조 따라 시정권고 사항을 결정하였다.

2) 국내 시정권고 특징

(1) 왜곡된 제목으로 특정 인물/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 주입

개인 및 관련 인물의 신상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뉴스 기사 제목에 공개하면서 타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 훼손의 소지가 있는 뉴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알려진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Influencer) 관련 뉴스 기사에서 해당 인물이 관련 없는 인물의 부정적 사안을 다루고 제목에서 추측 및 단정적 언어를 사용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독자를 혼동할 뉴스 기사를 의미한다. 자극적인 제목 표현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뉴스는 실제 본문이 관련 없는 제목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술집 아가씨랑 결혼해서 낳은 딸... 과거 폭로됐다”라는 제목은 뉴스 본문과 전혀 관련 없는 제목을 제시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XXX 영상 2000원에 팝니다”라는 뉴스 제목도 뉴스 본문에서 다루는 주제와 맥락이 관련 없이 제목에서 뉴스 이용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선정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왜곡된 제목’으로 보도하는 언론보도 사례는 언론중재법 제5조에 의거해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에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아울러,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을 비추어 볼 때,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이 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21조에 따라 언론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않고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비추어 볼 때, 본문이 관련이 없는 왜곡된 제목은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적 언론보도에 해당할 수 있다.

왜곡된 제목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약어 및 구어체를 사용하는 때도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 널리 사용하는 단어를 제목에 사용하기 때문에 더 쉽게 뉴스를 클릭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뉴스의 제목은 본문의 주제 및 맥락과 무관한 문구 및 문장을 다루며 사람들을 오도한다.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사진 사용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포럼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유명인의 사생활 사진 및 동영상 초기 화면 이미지 등을 뉴스 기사에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의 사생활 사진의 유출 경로는 확인 불가능하며, 사생활 사진 유출을 더욱 확산시키는 뉴스 기사로서, 이와 같은 기사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적 인물일지라도 자신의 사생활을 모든 뉴스 이용자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언론사 뉴스 기사가 공개 노출을 하였다.

이러한 뉴스 보도는 “과거 SNS 글 눈길…” 또는 “원본 사진 캡처” 등의 주석을 달기도 한다. 마치 출처가 있는 것처럼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 속 자극적인 단어(예, “영상 다 풀렸다”)를 사용하며 이용자들이 사진에 주목하게끔 유도한다. 실제로 사진은 뉴스에서 다루는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제공하기도 한다.

사진은 언론보도에서 뉴스 이용자들의 이목을 쉽게 끌 수 있다. 언론보도와 관련이 없는 이미지를 게시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노출하는 때도 차별적 언론보도에 해당한다. 언론중재법 제5조 1항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개인의 얼굴 및 신체를 무단으로 뉴스에서 다루는 것은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해 차별적 언론보도에 해당할 수 있다. 언론은 언론보도 대상에 대한 인격권을 존중할 의무도 존재한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사진을 사용하는 기사는 주로 특정 인물을 다룬다. 예를 들어, 연예인, 유명 인플루언서, 화제가 되는 인물 등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인물을 중심으로 기사를 다루고, 사진에서 해당 인물의 과거 사진과 주변 인물을 다룬다. 또한, 여러 사진을 합치기도 하고 의도적인 사진 편집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진은 출처도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

(3) 일반인의 실명 공개로 인한 인격권 침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초래할 수 있는 일반인들의 사례를 뉴스에서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는 개인의 실명을 직접 공개하며 추가 사고 및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특정 사건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내용일지라도 관련 인물의 인격권을 보장해야 한다. 미성년자 및 사회적 약자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가해자의 신원을 낱낱이 공개하는 언론보도 역시 차별적 언론보도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히, 기자가 직접 특정 인물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실명 이미지를 캡처해 뉴스 기사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인격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언론보도에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춘천 지역에서 사는 XXX(11)양이 실종되었다고 할 때, 실종의 경위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실종자 관련 정보를 종합하기 위해 뉴스 기사를 배포하고자 할지라도 해당 인물의 초상과 성명 공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당사자 가족과 변호인의 동의 없이 기사는 실명을 무단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존재하고, 특정강력범죄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인물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대해 방송 또는 유선 방송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제2조 제1항 제2호-6호). 따라서, 일반인에 대한 실명 공개는 기사 작성 시 신중해야 한다.

일반인 실명 공개로 인한 인격권 침해 사례 기사는 실제 소셜 미디어에 유통되는 내용을 발췌하여 기사에서 활용하는 때도 많다. 기사는 직접 특정 인물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도 차별적 언론보도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해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 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뉴스 댓글 및 소셜 미디어 게시글을 마치 근거 자료인 것처럼 인용하는 경우 역시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4) 사건과 무관한 인물 공개

언론사는 유명인 또는 공인의 이슈를 다루면서 저널리즘 가치 중 ‘인간적 흥미’를 자극한다. 인간적 흥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선정주의’에 빠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가 있는 일반인이 약 3시간 동안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기사는 공중에게 관심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를 앓는 유명인의 가족이 행방불명 후 발견되었더라고 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유명인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질 것이며, 유명인의 관련 인물이 무슨 일에 처했는지 흥미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뉴스 기사는 사회적 영향력과 근접성 차원에서 전혀 뉴스 소재가 될 수 없으나, 유명인의 저명성과 인간적 흥미 차원에서 뉴스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공인은 뉴스의 소재가 될 수 있으나, 관련 가족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XX뉴스는 재벌 그룹 회장 자녀의 남자 친구에 대한 뉴스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뉴스 기사는 재벌 그룹 회장의 자녀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회장의 자녀는 어떤 인물을 만나는지 사람들의 관심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언론보도는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의 인물 사진을 공표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뉴스는 공공 이익의 성격을 가지기도 힘들다. 타인의 법익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나 공인이 관련된 인물(예, 가족, 친구, 연인 등)의 실명 공개뿐

만 아니라 사진을 공표하는 때도 많다.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 관련된 인물이 자신의 초상 공표를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인물은 일반인에 불과하며, 특정 사건의 경우와도 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격권 및 초상권 위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이 관련 인물(친구나 가족 등)의 신상 공개 노출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진 공인과 함께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뉴스에서 가감 없이 공개하면서 특정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사례이다. 설령,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인물일지라도 관련 인물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신상 공개는 언론 기사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뉴스 기사는 모자이크 및 블러(Blur) 처리 없이 뉴스의 주제와 맥락에 관련 없는 인물의 얼굴 및 신체를 공개하기도 한다. 개인의 초상권 침해는 주로 사진 제공에서 위반된다. 사진에서 뉴스 주제와 관련 없는 인물이 드러나는 때도 있으며, SNS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일지라도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인물의 실명과 사진을 공표하는 예도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제5조 1항과 헌법 제18조를 따라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5) 개인의 사적 메시지 내용 공개

디지털 미디어 이용자들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및 휴대용 기기를 통해 주고받는 메시지의 내용이 뉴스에서 소위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투명성 차원에서 메시지 전체를 공개하거나 사람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자극적인 메시지 내용을 캡처한 후 뉴스 기사에서 마치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뉴스 기사는 전체 맥락 파악이 부족하고 자극적인 메시지의 단어 표현을 강조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선입견 및 고정 관념을 의도적으로 주입할 수 있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유통되는 메시지 또는 개인 메신저의 내용을 뉴스에서 직접 제공하는 뉴스 기사가 존재한다. 개인 SNS 메신저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뉴스 기사에서 제공하는 것은 타인의 인격적 가치에 해당하는 항목(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사전문서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였으며,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밝힌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사적 메시지 내용은 개인의 민감 정보 및 상황을 의도치 않게 뉴스 이용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 정체성, 종교, 장애 유무 등의 내용이 사적인 메시지에서 공유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특정 인물의 인격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2. 영국

1) 영국 사례

자율규제기구로서 영국언론표준기구(IPSO)의 차별 조항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별 조항으로서 12조는 다음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언론은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적지향 또는 신체적이나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경멸적인 언급을 피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정체성, 성적지향,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야기와 관련이 없는 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언론보도에서 특정 개인의 보호받는 특성을 불필요하게 언급하거나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차별 조항 12조의 목적은 개인을 차별적인 보도에서 보호하는 것이며, 공익을 이유로 한 방어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집단이나 카테고리에 대한 일반적인 발언을 다루지 않는다. 이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토론을 억제할 수 있고,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되며,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는 판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대중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 즉 개인적으로 차별적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게 느끼거나 때로는 공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견해를 가질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다양성을 가진 자유로운 사회에서 주관적인 취향과 품위 문제는 편집자의 재량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과 잡지는 지속적으로 대중의 의견 법정에서 답변해야 하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독자들은 게시 후 몇 분 내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시민들이 법규범을 준수하는 것처럼 언론사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²⁾. IPSO의 대표적인 결정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2) 언론사 편집인이 고려해야 하는 기준 ① (보도사) 개인 또는 명확한 개별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이는 이름이 명시되거나 쉽게 식별 가능한 사람, 또는 유사하게 식별 가능한 명확한 개별 집단이어야 함. ②(보도사) 차별적인 방식으로 편견적이거나 경멸적인가? ③ (보도사) 조항 12에서 다루는 특성에 대해 진정으로 관련성이 있는가?

(1) 레이몬드 브라이스와 <데일리 메일>

레이몬드 브라이스(Raymond Bryce)는 2023년 3월 15일자 <데일리 메일>(Daily Mail) 기사 "Being dyslexic like me is never an excuse for being late"에 대해 IPSO에 제소하였으며, 이 기사가 IPSO의 1조(정확성)와 12조(차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기사는 레베카 윌콕스가 학창 시절 난독증으로 인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레베카는 자신의 난독증 경험을 바탕으로, 난독증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레베카는 레이몬드 브라이스가 난독증을 이유로 상사를 차별로 고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레베카는 "나도 난독증 때문에 아날로그 시계를 읽는 것이 어려웠고, 일정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러한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레베카는 "난독증은 실패한 원인이 될 수 없다. 즉, 약속을 준비하지 못하고 약속에 늦는 등의 이유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 난독증이 있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시간 연장이 필요한 사람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든지, 고용주가 당신을 기다려야 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당신의 인생이 당신을 기다려 줄 것이라고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난독증과는 상관없이 매우 무례한 행동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기사는 인터넷에도 게재되었으며, "나와 내 두 아들이 난독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것이 실패한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레이몬드 브라이스는 이 기사가 법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확성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레이몬드는 자신이 난독증뿐만 아니라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레이몬드 브라이스는 IPSO에 법원의 판결을 제시하였다. 그는 고용주에게 난독증으로 인해 시간을 잘못 읽을 수 있으니, 근무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해 주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난독증이 읽기, 쓰기, 산수, 기억력에 영향을 주며, 이에 따라 시간을 준수하기가 어려워 불안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안은 아스퍼거 증후군이 관련되고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근무 시간에 유연성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문제가 근무 시간 변동을 허락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레이몬드는 레베카의 글이 12조의 차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레베카가 난독증은 실패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한 부분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법정에서 난독증이 있는 자신이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데일리 메일>은 정확성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

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아스퍼저 증후군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부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레베카의 주장은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라고 하였다. <데일리 메일>은 이 기사가 레이몬드 의 불성실함을 부각하는 인상을 준다는 그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기사는 오히려 레이몬드가 난독증으로 인해 직장에 지각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데일리 메일은 기사가 차별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기사 어디에도 레이몬드를 경멸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이 없으며, 그의 무능력이 관련된 언급도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IPSO는 데일리 메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기사가 정확성 및 편향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영국의 이슬람 센터와 <더 주이시 크로니클>

영국의 이슬람 센터(The Islamic Centre of England)는 IPSO에 <더 주이시 크로니클>(The Jewish Chronicle)의 2022년 11월 25일 기사 "Children chant massacre-Jews song at north London school"이 정확성과 차별 조항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기사는 "이란의 독가스 선전 계획 (Iran's toxic propaganda project)"이라는 제목 하에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유대인 학살을 언급하는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런던에서 촬영했다고 보도했다. 영상의 일부 장면은 이슬람 센터에서 촬영된 것을 다루었다.

해당 뉴스는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죽어야 한다는 반유대주의 신화적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신청인은 해당 기사에 대해 반박하며 노래의 의미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종교 차원에서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다는 점이 요지이다. 또한, 이 노래는 이란식 해석이 아니라 특정 지역 버전의 해석을 사용했다고 강조한다.

해당 신문사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사에서 노래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는 부정확하거나 오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사에서 다룬 노래는 이란의 글로벌 선전 캠페인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기사 제목이 기사 내용을 충분히 논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증거를 판단할 때 노래의 정치, 문화, 종교적 맥락이 매우 복잡하므로 결국 위원회는 불만 제기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비록 제목이 약간 과장되었지만, 노래의 맥락을 고려하면 정확성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한 여성과 <더 메일 온 선데이>

한 여성이 2022년 7월 <더 메일 온 선데이>(The Mail on Sunday)에 발행된 기사에 대해 IPSO

에 정확성 및 차별 보도 위반으로 제소하였다. 해당 기사는 이 여성을 호전적인 성전환자 권리 활동가로 묘사하며, 그녀가 성전환자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거친 온라인 공격을 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이 여성은 한 페미니스트 작가를 나치에 비유하며 성전환자에 대해 히틀러를 옹호한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기사는 이에 대해 반박하였다.

이 기사는 이 여성이 토리당에 의해 훈련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그녀가 보수당 지도자인 페니 모던트 의원과 관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페니 의원의 강력한 후원자로, 성전환자 권리를 논의하기 위해 최소 세 번 만났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두 사람이 자선 모임에서 약 5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였다. 또한, 기사는 그녀의 성전환 수술 전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여성은 해당 기사가 차별 보도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성전환 수술 전의 모습은 정치적 모임에 참석하고 작가에 대해 이야기한 것과 무관하며, 공적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기사는 그녀의 예전 이름을 언급하며 호전적이고 귀에 거슬린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성 정체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고 주장하였다.

〈더 메일 온 선데이〉는 차별 보도 윤리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기사는 불만 제기자의 성정체성에 대해 편견이 가득한 경멸조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성전환 수술 전의 상황을 보도한 것은 공적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불만 제기자가 2015년 통신사와 인터뷰에서 사용한 이름을 언급한 것은 편견이나 경멸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기사의 논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 전의 행동을 설명한 것이라고 하였다. 〈더 메일 온 선데이〉는 기사에서 언급한 특정 용어는 불만 제기자의 트윗에서 언급한 용어와 일치한다고 반박하였다.

IPSO는 기사가 불만 제기자의 성정체성을 언급한 방식이 명백히 차별 보도 금지 조항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사의 중심 내용과 불만 제기자의 성정체성에 대한 정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심의하였다. IPSO는 기사가 불만 제기자의 성정체성을 편견이나 경멸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호전적이고 귀에 거슬린다는 표현은 불만 제기자의 성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IPSO는 해당 기사가 불만 제기자의 성 정체성을 언급하는 데 있어 차별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4) 뱅크스와 〈더 볼턴 뉴스〉

크리스토퍼 뱅크스(Christopher Banls)는 IPSO에 〈더 볼턴 뉴스〉(theboltonnews.co.uk)의 다 음 기사들이 차별적 발언 보도 조항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 2022년 8월 11일 게재된 기사 “볼턴 남자가 맨체스터 시의 코치에 대한 보복을 거부하였다”
- 2022년 8월 11일 게재된 기사 “맨체스터 시티의 코치가 이메일을 통해 해고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 2022년 8월 11일 게재된 기사 “배심원이 trolling 사례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재심이 요구되었다”
- 2022년 9월 11일 페이스북에 게재된 “크리스토퍼 벅크스가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였다”라는 글과 불만 제기자의 온라인 기사
- 2022년 8월 11일 페이스북에 게재된 “나는 무척 혼란스러웠고, 이로 인해 완전히 망했다”라는 글과 두 번째 기사 “배심원이 트롤링(trolling) 사례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재심이 요구되었다”
- 2022년 8월 12일 페이스북에 게재된 “크리스토퍼 벅크스는 내년에 다시 법정에 갈 것이다”라는 글과 2022년 8월 12일 기사에 대한 링크

위 기사들은 동일 사건에 대한 여러 기사이다. 2022년 8월 11일에 게재된 첫 번째 기사는 온라인에만 게재된 것으로, 볼턴 크라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내용이다. 이 재판은 프리미어 리그 축구 코치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메일 발송 상황과 법정에서 언급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고인이 자원봉사를 했던 조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기사는 피고인이 법원을 떠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기사 역시 같은 재판을 보도하며, 피고인이 고통이나 불안을 초래할 의도로 전자 통신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 기사에도 피고인이 법원을 떠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기사 또한 같은 재판을 다루며, 배심원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재심이 요구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이 기사에도 피고인이 법원을 떠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신청인은 자신이 자원봉사를 했던 조직에 대한 기사에서의 언급이 IPSO의 제2조(정확성), 제3조(프라이버시), 그리고 제12조(차별)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해당 조직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이 없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언급이 포함된 페이스북 게시물도 나중에 수정되어 제거되기 전까지 같은 조항들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페이스북 게시물에 자신의 전체 이름이 게시된 것이 소셜 미디어에서 이름을 보도하는 매체의 일반 절차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출판사는 차별 조항인 제12조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매체는 법정 절차에 대한 진실하고 정확한 내용을 게재했으며, 신청인의 전체 이름과

자원봉사를 했던 자선단체에 대한 언급이 법정에서 공개된 정보였기 때문에 제2조(정확성)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IPSO는 제12조가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특정 개인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조항이라고 언급하였다. IPSO는 불만 제기자의 전체 이름을 사용하거나 자원봉사를 했던 장소를 언급하는 것이 불만 제기자의 보호 특성에 대한 경멸적, 편견적, 또는 관련 없는 언급이라고 간주하지 않았다. 따라서 IPSO는 제12조 위반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5) 칼리드 샤리프와 <더 쥬이시 크로니클>

칼리드 샤리프(Khalid Sharif)는 2021년 11월 5일 <더 쥬이시 크로니클>(The Jewish Chronicle)에 게재된 “토리 의회 후보, 시온주의는 인종차별인가? 여론조사 시행 후 정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에디터 코드(Editor’s Code)의 제1조(정확성), 제2조(사생활), 제3조(괴롭힘), 제12조(차별)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IPSO에 제소하였다.

이 기사는 샤리프가 보수당 의회 후보로서 시온주의를 인종차별로 간주할지에 대한 투표를 주최하는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한 사실 관련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그룹은 시온주의자들을 큰 권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는 등 여러 음모론을 유포했으며,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그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 반유대주의자로 몰린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그룹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직 대표자 이사회 회원이자 전자상거래 전문가가 폭로한 사실도 전하고 있다. 보수당 대변인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샤리프는 정직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샤리프의 과거 트윗을 통해 그가 보수당으로 전환하기 전에 특정 인물을 열렬히 지지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가 왜 노동당을 탈당하고 보수당에 가입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샤리프는 이 기사가 자신의 무슬림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며, 무슬림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12조(차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사가 구성원의 80%가 무슬림인 공공 페이스북 그룹을 침묵시키려는 시도였으며, 해당 그룹의 토론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 기사가 그룹 내 특정 개인의 견해를 무슬림 커뮤니티 전체와 연관지어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매체는 제12조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매체는 이 기사가 단순히 샤리프의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를 보도한 것일 뿐이며, 샤리프가 제12조의 조건에 해당하는 차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위원회는 샤리프가 기사에 정보가 게재된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우려한 것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기사는 샤리프의 종교는 기사와 관련이 있었으며, 기사는 그의 종교에 대해 편견적이

거나 경멸적인 언급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IPSO는 샤리프의 제소가 제12조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6) 샤를롯 빈센트와 <더 선데이 타임즈>

샤를롯 빈센트(Charlotte Vincent)는 2022년 10월 16일 <더 선데이 타임즈>(The Sunday Times)에 게재된 “페미니스트 니콜라 스테이션은 여성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기사에 대해 영국언론표준기구(IPSO)에 제소하였다. 빈센트는 이 기사가 에디터 코드(Editor’s Code)의 제1조(정확성)와 제12조(차별)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기사는 새로운 「성정체성인식법」(Gender Recognition Act)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 칼럼으로, 이 법이 여성에게 잠재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사에서는 획득한 성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스코틀랜드에서 출생증명서의 성별 변경이 여권 변경보다 쉬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는 남성들이 여성 전용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 여성과 소녀들에게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공간에는 공공 화장실, 탈의실, 강간 지원 센터, 가정 폭력 보호소, 병원 병동, 여성 전용 교도소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기사는 또한 2019년에 <더 선데이 타임즈>가 법무부에 정보 공개 요청을 했고, 그 결과 거의 90%의 성범죄가 남녀공용 탈의실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이어서 기사는 세 가지 주요 주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주장은 트랜스 여성들이 생물학적 여성들보다 극도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은 트랜스 남성들이 다른 남성들과 달리 여성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 주장은 남성이 여성의 정체성을 사칭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트랜스를 혐오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기사는 성범죄자들이 다양한 직종에서 활동을 위장해왔으며, 이러한 남성들이 여성으로 사칭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신청인은 이 기사가 트랜스젠더를 잘못된 성별로 분류하고, 사실이 아닌 편견을 바탕으로 한 가정들을 퍼뜨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사가 소수자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모든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무죄 추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은 위험하다는 주장이 차별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 주장이 유엔(UN)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는데,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차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피고 매체는 빈센트의 주장에 대해 제12조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매체는 이 조항이 특정

개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며, 해당 기사가 특정 개인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 다룬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사의 내용이 차별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성별 정체성이나 인종 등으로 정의된 전체 범주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오히려 위협하다고 덧붙였다.

IPSO는 빈센트가 제기한 제12조 위반 주장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 조항은 특정 개인을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특정 개인이 아닌 집단이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IPSO는 빈센트의 제소가 제1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7) 한 남성과 〈스코틀랜드 데일리 메일〉

한 남성이 2022년 11월 10일에 〈스코틀랜드 데일리 메일〉(Scottish Daily Mail)에 게재된 “블랙리스트는 인종차별적 단어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IPSO에 제소하였다. 그는 이 기사가 에디터 코드(Editor's Code)의 제1조(정확성), 제2조(사생활), 제4조(슬픔이나 충격에 대한 침해), 제12조(차별)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기사는 신청인이 그의 전 직장인 IBM을 상대로 노동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보도한 내용이였다. 기사에서는 불만 제기자를 아시아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식별하며, 그의 나이와 함께, 그가 인종, 장애, 종교적 차별을 주장하며 IB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불만 제기자이 30건 이상의 차별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동료가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인종차별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 주장이 자신의 사건을 강화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신청인은 매니저들이 그에게 ‘블랙 마법’과 ‘부도교’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IBM에서 승진이 거부된 이유가 자신의 인종 때문이라고 주장한 신청인의 주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판사는 그가 승진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결하였다. 기사는 불만 제기자의 IBM에서의 근무 이력, 급여, 근무 부서 및 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보도하였다.

신청인은 기사에서 자신을 아시아계라고 언급한 것이 제12조(차별)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기사의 보도 내용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제4조(슬픔이나 충격에 대한 침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매체는 신청인의 인종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이 진정성과 관련성이 있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IPSO는 제12조가 특정 보호된 특성에 대해 불필요하거나 경멸적인 언급을 금지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경우에는 기사가 불만 제기자이 제기한 인종 차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어, 신청인의 인종에 대한 언급은 관련성이 있으며 경멸적이거나 편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제12조 위반은 없다고 결정되었다. 또한, IPSO는 제4조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며, 기사가 노동 법원 절차에 대한 정확한 보도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4조는 법적 절차를 보도하는 출판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기사가 불만 제기자에게 심적 불편을 초래했다더라도, 이는 제4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8) ‘파트너십 인 케어’와 <에어셔 포스트>

영국 <에어셔 포스트>(Ayrshire Post)라는 신문이 2015년 4월 3일에 보도한 “Ayr Clinic is rapped”라는 기사와 관련된 사건이다. 파트너십 인 케어(Partnership in Care)라는 클리닉이 이 신문을 제했는데, 이 기사가 부정확한 정보(제1조, 정확성)와 차별적인 표현(제12조, 차별)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보안 정신과 병동인 에어 클리닉(Ayr Clinic)에 대한 검사를 다루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충격적이라고 묘사하고 클리닉이 비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클리닉이 다섯 가지 검사 영역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검사관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파트너십 인 케어’는 신문이 클리닉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제소한 것이다.

해당 신청인은 이 기사가 보고서의 결과를 오해하게 하여 왜곡된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섯 가지 품질 주제 모두에서 클리닉은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인 매우 좋음(very good)을 받았다. 제안된 권고 사항은 사소한 문제였으며, 이 기사는 보고서의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만을 선택하여 전체적인 결과를 왜곡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사에서 ‘급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검사관들이 우려가 제기된 후 클리닉을 조사했다고 암시하였으나, 이는 계획되지 않은 검사가 일상적이라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하였다. 신청인은 이 보도가 신문사가 지역 내 새로운 재활 센터 건립 신청에 반대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기사에서 클리닉이 범죄자들을 돌본다는 주장이 환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적이고 경멸적인 언급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용어는 클리닉에 거주하는 특정 그룹의 사람들의 정신 질환을 지칭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해당 신문사는 기사가 클리닉의 다섯 가지 주요 검사 영역에서 ‘매우 좋음’ 등급을 받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검사관들이 여러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고 정확하게 보도하였다고 주

장하였다. 따라서 이 기사가 검사를 오해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하였다. ‘급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클리닉이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편집 재량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문사는 ‘미친’이라는 단어가 편견적이거나 경멸적이지 않으며, 정신 질환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신문사는 이 단어가 클리닉의 모든 환자나 특정 개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므로 제12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신문사는 클리닉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불만 제기자의 편지를 게재하겠다고 제안하였다.

IPSO는 규정에 따라 편집자는 보도할 자료를 선택하고 논평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편집자에게 출처 자료의 성격이나 표현에 있어 상당한 자유를 부여하지만, 제1조는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였다. 스코틀랜드 건강개선기관(Healthcare Improvement Scotland)의 보고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모든 검사 영역에서 클리닉이 ‘매우 좋음’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보고서를 충격적이라고 묘사하고 클리닉이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검사관의 결론에 대한 정당한 편집적 해석을 넘어 보고서의 결과를 왜곡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신문사가 일부 정확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이는 전체 기사에서 왜곡된 인상을 수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신문사는 왜곡된 정보를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았으므로 제1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미친 범죄자들’이라는 언급은 클리닉에 거주하는 특정 개인 그룹과 관련이 있었으므로 제12조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IPSO는 ‘미친’이라는 용어가 편견적일 수 있지만, 해당 개인의 범죄 행위를 언급한 것이며, 이는 그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하여 차별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IPSO는 에디터 코드 위반 결정을 내렸다¹³⁾.

13) 관련 조항

조항 1(정확성): i) 언론은 부정확하고, 오해를 일으키며 왜곡된 정보를 포함한 사진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ii) 중요한 부정확성, 오해를 일으키는 진술 또는 왜곡이 인식되면 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정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사과문을 게시해야 함. iii) 언론은 자유롭게 편향적일 수 있지만, 의견, 추측 및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

조항 12(차별): i) 언론은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편견적이거나 경멸적인 언급을 피해야 함. ii)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적 지향,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야 함.

(9) 기타 사례

① 셀리아 히버트(Celia Hibbert) 위원은 <버밍엄 메일>(birminghammail.co.uk)이 에디터 코드(Editor's Code) 제12조(차별)를 위반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제12조(차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 언론은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 또는 장애에 대한 편견 또는 경멸적인 언급을 피해야 한다. ii)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또는 장애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야기와 관련이 없는 한 피해야 한다. 제12조에 따르면, 출판물은 개인의 보호된 특성에 대한 편견, 경멸 또는 무관한 언급을 피해야 하며,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일반적인 우려와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1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② 한 남성이 <데일리 텔레그래프>(The Daily Telegraph)가 에디터 코드 제12조(차별)를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그는 해당 기사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자신을 아시아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매체는 원고의 인종이 재판에서 제기된 직접 및 간접 인종차별 주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사가 실제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체는 원고의 인종에 대한 언급이 편견적이거나 경멸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12조는 개인의 보호된 특성에 대한 무관하거나 경멸적인 언급을 금지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인종에 대한 언급은 관련이 있고 경멸적이거나 편견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제12조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③ 한 남성이 <메일 온라인>(Mail Online)이 제12조(차별)를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매체는 신청인의 민족과 종교가 재판에서 제기되었고, 이는 그의 직접적 및 간접적 인종차별 주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사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제12조는 개인의 보호된 특성에 대한 무관하고 경멸적인 언급을 금지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인종과 종교에 대한 언급은 관련이 있고 경멸적이거나 편견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제12조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결하였다.

④ 제임스 맥도걸(James MacDougall)은 자신의 부모님을 대신하여 <메일 온라인>(Mail Online)이 제12조(차별)를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그는 매체가 그를 인터뷰할 때 그가 자폐증을 가진 취약한 성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매체는 그의 자폐증을 고려하여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해당 조항과 관련이 없다고 말

했다. 제12조는 언론이 개인의 장애에 대한 편견적이거나 경멸적인 언급을 피해야 하며, 그 세부 사항이 이야기와 진정으로 관련이 없는 한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문제가 된 기사들 중 어느 것도 보호된 특성에 대한 그러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⑤ 수지 그린(Susie Green)은 자신과 딸 재키 그린(Jackie Green)을 대신하여 <더 선데이 타임즈>(The Sunday Times)가 제12조(차별)를 위반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신청인은 자신의 딸이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청인은 기사에서 재키를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여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키는 수술 당시 법적 성별이 여성이었으며, 이에 수지 그린은 매체가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불만 제기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제12조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IPSO는 재키의 성별 확인 수술에 대한 언급과 재키가 수술 후 그녀를 보여주는 이미지의 캡션에서 불만 제기자의 딸로 언급된 상황에서 남성 대명사의 사용이 편견적이거나 경멸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대명사들은 재키가 성전환을 겪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했고, “그” 대명사의 사용은 그녀가 태어날 때 할당된 성을 언급했다. 제12조를 위반한 것은 없었다고 판결하였다.

⑥ 린지 존슨(Lindsey Johnson)은 <크라벤 헤럴드와 파이오니어>(the Craven Herald & Pioneer)가 제12조(차별)를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신청인은 온라인 기사가 대명사를 언급할 때 뒤집힌 심표를 사용하는 것이 개인의 성적체성에 대한 아이러니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기사가 제12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매체는 대명사에 대한 언급이 뒤집힌 심표 내에 배치될 필요가 없다는 신청인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이 사용이 제12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IPSO는 기사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참조 내용이 편견적이거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며, 제한된 세부 정보가 독자들이 불만 제기자의 선호하는 대명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IPSO는 신고인이 참조 내용에 대해 연락을 취했을 때, 매체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를 삭제한 점을 주목했다. 이는 편견적이거나 경멸적인 의도가 아니었고 출판물이 제공한 이유로 포함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제12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⑦ 린지 존슨(Lindsey Johnson)은 <텔레그래프 앤 아거스>(the telegraph and argus.co.uk)가

제12조(차별)를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신청인은 온라인 기사가 대명사를 지칭할 때 뒤집힌 심표를 사용하는 것이 비정형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아이러니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주하여 기사가 제12조(차별)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매체는 그 기사가 불만 제기자이 주장한 방식으로 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IPSO는 신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연락을 취했을 때 매체가 신속하게 대응한 점을 주목했다. IPSO는 제12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⑧ 제드 클라버트(Jed Calvert)는 <데일리 텔레그래프>(The Daily Telegraph)가 제12조를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신청인은 기사가 성 정체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12조를 위반하여 LGBTQ+ 사람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기사에 개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제12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12조는 특정 개인의 보호된 특성에 대한 무관하거나 편견적이거나 경멸적인 언급과 관련이 있다. 제12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기한 우려는 이와 관련이 없으며, 위반도 없었다고 결정하였다.

⑨ 마르셀로 마샤 드 시케이라(Marcelo Marshall De Siqueira)는 <더 타임스>(the times.co.uk)가 제12조를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신청인은 기사가 브라질 국적을 언급함으로써 제12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일론 머스크 주식회사가 합법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차별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기사가 불만 제기자의 국적을 언급했으며, 국적은 제12조에 언급된 보호된 특성이 아니라고 밝혔다. IPSO는 기사가 단순히 브라질 사람이라고만 언급했으며, 이는 제12조(i)에 정의된 편견적이거나 경멸적인 참조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제12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다.

⑩ 포켓 소사이어티(Fawcett Society)와 더 와일드 재단(The WILDE Foundation)은 <더 선>(The Sun)이 제12조(차별)를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저자가 자신의 칼럼에서 묘사한 행위와 사용된 언어가 본질적으로 여성 혐오적이고 성적인 것으로 성차별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가정 폭력의 생존자인 여성과 소녀들을 지원하는 자선 단체인 더 와일드 재단은 그 기사에 대해 별도의 불만을 제기했다. 그들은 기사가 여성을 향한 폭력을 허용하고, 가해하고, 조장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문사는 제12조의 해석이 고의적으로 편협하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의 범위 내에서 품위, 취향, 또는 불쾌감을 조절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신문사는 제12조의 조항이 합리적인 독자가 문제의 특성, 예를 들어 성별이나 인종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은 좁게 해석되어야 하며, 보호된 특성과 관련하여 비판적이거나 경멸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언급이 제12조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사는 기사에서 다른 인물에 대한 비판은 행동에 대한 비판일 뿐,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차별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불만 제기자들이 기사로 인해 여성 및 더 구체적으로는 유색 여성 그룹에 가해졌다고 주장한 피해는 제12조에서 적절히 고려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IPSO는 기사 표현이 단순한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는 함의를 가질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표현은 인종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한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특정 인종의 인종에 대해 비하적이거나 편견적인 참조를 포함한다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⑪ 파크런(Parkrun) 이벤트에서 여성 기록을 산산조각 냈다고 언급하며 트랜스젠더인 불만 제기자의 성 정체성에 대한 편견적인 보도가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신청인은 성 차별적인 내용이 기사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는 기사에 성 정체성에 대한 편견적이거나 경멸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IPSO는 기사 내용이 사실적이며 공적 논의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제12조(차별)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⑫ 에든버러 아동 병원의 기도실이 LGBTQI+ 깃발로 장식된 사건을 보도하며 기도실이 성전환자가 이용하며 LGBTQI+ 활동가가 관리한다는 보도가 문제가 되었다. 보도에는 관리자가 병원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청인은 기사와 관련 없이 관리인의 성 정체성과 지향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IPSO는 기사가 성 정체성을 언급했지만, 주제와 관련이 있고, 성전환자이며, LGBTQI+ 커뮤니티를 지지하고 활동한 것은 사실이라 판단했다. 또한, 기사에서 성 정체성을 편견적으로 묘사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제12조(차별)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⑬ 한 신청인이 전 연인을 '괴롭힘'이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가 문제가 됐다. 또한, 의학적 이유로 대마초를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IPSO는 기사에서 신청인의 대마초 사용이 의학적인 이유로 처방되었다는 점을 언급했기 때문에 보도가 차별적이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기사의 내용이 편견적이거나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⑭ 한 신청인이 노동당에서 자유민주당으로 옮기려 했고,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보도가 문제가 됐다. 추가로, 그녀가 과거 여러 차례 정직된 사실도 보도에서 언급됐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기사가 자신을 ‘곤경에 처한’, ‘게으른’, ‘비도덕적인’로 표현하며 인종차별적이며 성차별적인 발언이라 주장했다. IPSO는 기사가 특정 인종, 성 차별적 발언이 아님을 밝히며 제12조(차별)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⑮ 하마스에 가족이 납치된 한 여성을 보도하며 하마스를 ‘야만인이 학살 중 아기를 참수했다’라는 보도의 표현이 문제가 됐다. 이에 신청인은 이스라엘 희생자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팔레스타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편향적 보도라 주장했다. IPSO는 제12조는 특정 개인에 대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에 대한 것이며, 이 기사는 팔레스타인 전체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12조의 위반이 없다고 판결했다.

⑯ 한 신청인을 친(親) 하마스 활동가(pro-hamas activist)라 표현하며, 팔레스타인을 위한 국가대행진을 주도한 알-히와르(al-Hiwar)에서 일하는 기자라는 보도가 문제가 됐다. 또한, 그가 트위터에서 하마스의 공격을 정당화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은 자신을 친 하마스 활동가(pro-hamas activist)로 묘사한 것이 부당하며 종교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이고 합리적인 사실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IPSO는 신청인이 팔레스타인을 위한 대행진(National March for Palestine)에 참가한 것이 사실이며 경멸적이거나 편견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12조(차별)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⑰ 한 신청인을 피고로 언급하며 그의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보도가 문제가 됐다. 기사에는 법정에서의 검찰과 불만 제기자의 발언과 함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사가 나간 후 대중의 비난으로 인해 정신 건강이 악화되었고, 성차별적 보도였다고 주장했다. IPSO는 법원의 명령과 그의 의료 기록이 사실이기 때문에 보도에 정당성이 있으며, 제12조(차별)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⑱ 한 신청인은 자신의 주소 및 사진과 재판에서 있었던 검찰과 피해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사가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로 낙인찍었으며, 주소 등의 신상 공개가

여성 혐오, 나이 차별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언론사는 피해자의 발언을 사실대로 전달하여 오해를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 IPSO는 불만 제기자가 문제 삼은 용어가 편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차별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⑲ 한 신청인은 IPSO에 <도셋 라이브>(dorset.live) 기사의 제목이 자신이 성범죄로 체포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으며, 실제로는 "경미한 교통 위반"으로 체포되었을 뿐이라며 제12조(차별 조항)를 위반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 불만제기가 성공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IPSO는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⑳ 한 신청인은 2023년 10월 4일에 게재된 "학교 정문에서의 혼란: 격분한 지역 주민들이 부모들이 집 앞에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로 의자들을 놓는 장면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순간을 담은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메일 온라인>(Mail Online)이 제12조(차별 조항)를 위반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는 신청인의 우려가 제12조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불만제기는 성공적으로 조정되었으므로, IPSO는 에디터 코드 위반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2) 영국의 시정권고 특징

영국 언론의 차별적 보도 사례를 종합하여 중요한 특징들을 분석하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간의 균형, 법적 판단의 역할, 개인과 집단 간의 구분, 문화적·종교적·인종적 민감성에 대한 대응, 그리고 언론의 편집 재량 등이 두드러진다. 이들 요소는 영국 언론보도에서 차별적 요소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1)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간의 균형

IPSO의 에디터 코드(Editor's Code)는 언론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차별 조항인 제12조는 언론보도에서 특정 개인의 보호된 특성(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신체적이나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대한 경멸적이거나 편견적인 언급을 금지하며, 관련이 없는 세부 사항을 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코드의 핵심은 개인을 차별적 보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라는 대원칙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예를 들어, 브라이스와 <데일리 메일> 사건에서 <데일리 메일>은 난독증

을 겪고 있는 인물에 대해 보도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차별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례에서 IPSO는 데일리 메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도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적 발언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대중의 권리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항상 명확하지 않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규정들이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으며, 이는 언론과 대중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영국 언론은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지속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중한 판단을 요구받는다.

(2) 법적 판단의 중요성과 영향력

법적 판단은 언론보도에서 차별적 요소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 사례에서, 법원이나 IPSO의 결정은 해당 보도가 차별적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는 언론보도의 자유와 법적 책임 간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며, 언론의 보도가 법적으로 평가되는 기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이슬람 센터와 <더 저이시 클로니클>에서는 법원이 언론보도의 정확성과 차별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더 저이시 클로니클>이 이슬람 센터에서 촬영된 영상에 대해 반유대주의적 내용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IPSO는 법원이 제시한 증거와 맥락을 고려하여 보도가 차별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는 법적 판단이 언론보도의 차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한 여성과 <더 메일 온 선데이> 사건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차별적 보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사건에서 <더 메일 온 선데이>는 성전환자 활동가를 호전적인 인물로 묘사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보도가 차별적이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법원이 언론보도에서 차별적 요소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3) 개인과 집단 간 구분

IPSO의 규정은 개인의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으며, 특정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은 규제하지 않는다. 이는 집단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차별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집단에 대한 공격적 보도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샤를롯 빈센트와 <더 선데이 타임즈> 사건에서는 해당 언론사가 성전환자 문제와 관련된 칼럼을 게재했지만, 이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IPSO는 차별 조항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집단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개인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과 개인 간의 구분은 때로는 모호할 수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비판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집단에 대한 비판이 곧 개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언론은 집단에 대해 보도할 때도 그 내용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 문화적·종교적·인종적 민감성에 대한 대응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민감성은 영국 언론보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에서 언론은 특정 민족이나 종교와 관련된 언급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감성에 대한 대응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영국의 이슬람 센터와 <더 저이시 클로니클> 사건은 이러한 문화적 민감성이 어떻게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더 저이시 클로니클> 사건은 이슬람 센터에서 촬영된 영상에 대해 반유대주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슬람 센터는 이 보도가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IPSO는 언론보도의 맥락과 증거를 고려하여 보도가 차별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더 저이시 클로니클> 사건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을 다루면서, 하마스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었을 때 팔레스타인 희생자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IPSO는 이 보도가 특정 개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차별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문화적 민감성을 다루는 언론보도가 항상 쉽지 않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5) 언론의 편집 재량과 자율성

영국 언론의 차별적 보도 사례에서는 언론의 편집 재량과 자율성이 강조된다. 대부분 사례에서 편집자들의 결정은 존중되며, 이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이 때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향적 보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뱅크스와 <더 볼튼 뉴스> 사건에서 편집자의 결정이 어떻게 보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다. <더 볼튼 뉴스>는 특정 인물에 대한 보도를 통해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차별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IPSO는 언론의 편집 재량을 존중하며, 이러한 보도가 차별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파트너십 인 케어'와 <에어서 포스트>에서는 언론사가 보안 정신과 병동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다룰 때 편집적 재량을 행사하여 보도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는 검사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였고, 이에 대한 고소가 제기되었다. IPSO는 일부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인정했지만, 언론의 편집 재량권을 존중하는 결정도 내렸다. 이는 언론이 보도를 구성할 때 편집적 재량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6) 영국 언론보도의 자유와 책임

영국 언론의 차별적 보도 사례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은 언론보도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는 영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존중되며, 이는 언론보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항상 개인의 권리와 균형을 맞춰야 하며, 법적 판단과 사회적 책임이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법적 판단은 언론보도의 차별적 요소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는 언론이 보도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또한, 언론은 개인과 집단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보도의 범위를 설정하고, 문화적·종교적·인종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보도 내용을 신중하게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언론보도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영국 언론의 차별적 보도 사례들은 언론보도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잘 보여주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언론은 자유로운 보도의 권리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 보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 이는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3. 독일

1) 독일 사례

독일 언론평의회(Presserat)의 언론윤리강령은 16개 조항과, 각 조항 내 세부 항목으로 되어있다. 언론평의회는 불만처리 절차는 불만접수로 시작된다.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이는 즉시 예비조사 단계로 넘어간다. 예비조사에서는 불만사항의 명백한 근거유무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불만사항이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내용은 서면통보를 통해 처리된다. 반면, 불만사항이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언론사는 이에 대해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

한 경우 중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불만 사항은 성공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중재가 필요하지 않거나 중재가 실패한 경우, 불만사항은 해당 언론사의 입장을 요구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다음 단계는 불만처리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이다. 불만처리위원회는 모여 해당 불만사항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위원회의 결정결과, 불만사항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된다. 반면, 불만사항이 정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결정내용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며, 만약 공개경고나 내려진 경우, 해당 경고 내용은 다음 호에 공개된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불만사항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되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불만사항의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평의회 시정권고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⁴⁾. 여기에서는 2023년 독일 언론평의회에서 발표한 시정권고 사례 중 특정 인물 및 집단에 대한 차별적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이외에도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위반해 언론평의회 경고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차별적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결과 중 ‘공개경고’는 언론평의회에서 부과하는 가장 심각한 제재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였다.¹⁵⁾

(1) 차별

① 용의자 국적 언급

독일 한 주간신문이 성범죄 혐의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소녀(11세) 성폭행! 아프가니스탄인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공원에서 11세 소녀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체포되었지만, 수사관들이 혼란에 빠졌다. 그는 신분증이 없었으며, 그의 신원이 불확실했다. 용의자는 혐의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다. 신문에 따르면 그의 변호사는 경찰에 그가 미성년 난민이라고 말했다.

14) 독일 언론평의회 시정권고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진실성과 인간 존엄성 존중(Truthfulness and respect for human dignity), 주의(Care), 정정(Correction), 취재의 한계(Limits of research), 직업적 비밀 유지(Professional secrecy), 활동의 분리(Separation of activities), 광고와 편집의 분리(Separation of advertising and editorial), 인격보호(Protection of personality), 명예보호(Protection of honour), 종교, 세계관, 관습(Religion, worldview, customs), 선정적 보도, 미성년자 보호(Sensational reporting, protection of minors), 차별(Discriminations), 무죄추정(Presumption of innocence), 의료보도(Medical reporting), 할인(Discounts), 불만사항 게시(Publication of complaints) 등이다.

15) 본 연구진은 독일 언론평의회에서 온라인에 공표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기재하지 않았다.

한 독자는 이 보도가 언론윤리강령 제12조, 지침 12.1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독자는 신문이 용의자의 국적을 언급해서는 안 되었으며, 제목에서 사실처럼 주장한 내용을 본문에서는 추측으로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신문사의 법무팀은 반박했다. 언론윤리강령 제12조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팀은 기사에서 언급된 “용의자는 체포되었지만, 수사관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특히 중범죄 혐의의 경우 공공의 정당한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서는 용의자의 개인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인 전체를 일반화하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법무팀은 ‘누가?’라는 질문이 정보성 언론보도의 전통적인 ‘5W’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특정 국적을 언급하는 것이 언론의 전통적 역할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언론평의회는 차별금지 규정(제12조, 지침 12.1)과 무죄추정원칙(제13조, 지침 13.1)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경고를 결정했다. 이 경우, 성폭행 혐의는 기사 본문에서 추정된 것으로 정확히 전달되었다. 그러나 제목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인 구속’이라는 표현은 차별적인 효과를 낳는다. 더군다나 용의자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사실로 묘사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기사에서는 추정된 국적을 세 번 언급했다.

② 종교적 신념 비방

베를린의 한 지역 신문이 “사회가 과부하 상태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새해 전날 논평을 게재했다. 논평은 “새해 전날 베를린의 분쟁 지역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폭죽을 사람들에게 던진 이들이 누구였는지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은 낙후된 무슬림 문화 출신의 젊은 남성들이었다. 이 사실에 대한 반응은 여러 측면에서 사회가 이에 압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쓰고 있다.

한 독자가 이에 대해 언론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무슬림 집단을 낙후된 것으로 일반화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언론윤리강령 제10조와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강령들에 따르면 언론은 종교적 신념을 비방하거나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언론평의회는 사전검토에서 이 불만사항을 제2조로 확대 적용했는데, 이 조항은 언론이 보도에 앞서 진실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문사의 편집장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폭죽을 던진 사람들은 대부분 낙후된 무슬림 문화의 젊은 남성들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여러 목격자의 진술과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피해자의 출신 배경을 밝히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수많은 목격자, 이미지, 동영상은 존재하는 이처럼 주목받는 사건에서 가해자 집단의 사회적 공통점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것이다.

언론평의회는 기사내용 중 “폭죽을 던진 사람들은 대부분 낙후된 무슬림 문화 출신의 젊은 남성들”이라는 표현이 윤리강령 제2조와 제1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③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

한 온라인 스포츠 포털의 칼럼은 FC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수 마티스 텔(Mathys Tel)을 독일로 귀화시켜 국가대표로 활약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칼럼은 “좋은 소식부터 전하자면, 텔은 순혈 프랑스인이 아니다. 그의 부모는 과들루프라는 카리브 해의 해외 영토 출신이다”라고 언급하며 그의 출신 배경을 설명했다. 독자는 해당 문구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이주 배경을 가진 프랑스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순혈’이라는 표현이 인종주의적 언어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측은 이에 대해 해명했다. 해당 단어가 독일의 역사적 맥락에서 민감하게 여겨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는 이 표현이 나치 시대의 인종주의적 의미와는 무관하며, 단순히 ‘토착’ 혹은 ‘진짜’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칼럼의 맥락에서 필자는 텔을 칭찬하고 그의 귀화를 긍정적으로 제안한 것일 뿐, 배타적이거나 차별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표현은 게시 후 몇 시간 내에 수정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언론평의회는 만장일치로 이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칼럼에 대해 공개 경고를 내렸다. 평의회는 “순혈 프랑스인”이라는 표현이 선수의 출신을 인종적 범주로 분류하는 차별적 언어라고 보았다. 이는 언론윤리강령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 강령은 민족, 종교, 사회적 배경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평의회는 이 칼럼이 의견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차별적 표현이라고 결론지었다.

④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

한 타블로이드 신문은 “러시아 여성, 내 여자친구의 손가락을 물어뜯다”라는 제목으로 태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룬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는 독일의 전직 올림픽 펜싱 선수가 한 러시아 관광객이 자신의 친구의 중지 끝부분을 물어뜯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기사에는 부상 사진 두 장과 가해자의 얼굴을 일부 가린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해자는 바바라(Vavara G., 32세)로 묘사되었다. 이에 대해 한 독자가 문제제기를 하며,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했다. 첫째, 부상 사진의 공개가 부적절하며 선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기사에서 국적을 언급한

것이 러시아인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신문사의 법무팀은 반박을 제기했다. 피해 여성이 스스로 사진을 제공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간 존엄성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해당 기사가 차별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러시아 국적의 언급은 피해자 친구와 경찰 대변인의 발언을 직접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재로 인해 러시아 시민들의 여행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해자가 사건 직후 말레이시아로 떠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적 언급이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평의회는 해당 기사에 대해 공개경고를 결정했다. 평의회는 두 장의 부상 사진이 언론 윤리 강령 제11조에 따라 선정적 표현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진들은 사건 이해에 필요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윤리강령 제12조(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제목에서 러시아 국적을 강조한 표현이 정당한 공익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러시아인들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특정 국가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표현

프랑스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범 죄자들이 수송차량에서 죄수를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두 명의 교도관이 사망했다. 도주한 죄수 모하메드 암라(Mohamed Amra)와 공범들은 여전히 도주 중이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프랑스 내에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우익 정치인들은 이를 정부의 범죄 및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았다. 또한, 프랑스에서 마약 관련 폭력과 부패의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의 원래 제목은 “프랑스의 멕시코화? - 도주한 죄수는 잡히지 않았다”였으며, 이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비판받았다. “멕시코화”라는 표현은 프랑스가 멕시코처럼 마약 범죄와 무법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었으며, 이는 유해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표현은 멕시코를 무법과 폭력의 상징으로 묘사함으로써 부적절하고 차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기사 제목은 수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문화적 고정관념을 조장하지 않고 더 민감한 보도를 장려하는 조치였다. 이 사례는 언론보도에서의 언어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국가 간의 비교가 특정 국가를 낙인찍거나 사회 문제를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⑥ 특정 민족에 대한 풍자적 표현

독일 언론평의회는 <쥐트도이체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이 반이스라엘 만평을 게재하며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만평에는 "독일이 당신을 위해 봉사합니다. 수십 년간 이스라엘에 무기가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이 나라를 탐욕스러운 몰로크(Moloch)로 여깁니다"라는 캡션이 붙어 있었다. 언론평의회는 공식 경고는 하지 않았지만, 해당 만평이 차별 정책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독일 주요 유대인 신문 <유디셰 알게마이네>(Judische Allgemeine)에 따르면, 언론평의회 불만처리위원회 의장 페터 엔노 티아르크스(Peter Enno Tiarks)는 이 만평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고 평가했다. 에다 크레머(Edda Kremer) 평의회 관계자는 신문이 스스로 자기 비판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공식 경고를 면했다고 밝혔다. 이후 신문은 독자의 항의와 반유대주의 비판에 따라 사과했다.

(2) 인격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함축적 차별 보도

① 출신에 대한 편견

독일 한 전국 일간지가 칼을 사용한 폭력 가해자의 출신지에 대해 다뤘다. "출신지와 연관성은 없다"라는 제목 하에 신문은 이름이 명시된 한 범죄학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칼 폭력과 용의자의 출신지 간에 연관성이 없고, 대신 연령, 성별, 계층, 교육 수준 등의 다른 위험 요소가 있다고 썼다. 해당 기사에서 한 저널리즘 교수는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2021년 칼 사건 용의자의 42.6%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베를린에서는 51.7%였다고 하였다. 즉, 해당 신문은 외국인 범죄 비율이 대략 1대 1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신문사가 범죄율을 범죄와 출신지 간의 연관성이 없다는 근거로 사용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며, 사건 수는 각 전체 인구수의 비율과 비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독일의 외국인 비율은 14%이기 때문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외국인의 범죄율은 독일 국적자의 4.5배, 베를린에서는 6.5배 높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신지와 연관성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신문사는 해당 문장이 너무 짧고 불완전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틀리거나 부정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경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독자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평의회는 평가 이전에 이미 온라인 버전과 전자 신문에서 해당 부분을 명확히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2021년 칼 사건 용의자의 42.6%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베를

린에서는 51.7%였다. 이는 외국 국적자들의 범죄가 통계적으로 과잉 대표된 것이며, 이는 주로 성별, 빈곤, 연령 등의 요인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본다.”

해당 신문사는 크리미널 로지칼 센트럴 오피스(Criminal logical central office)의 연구를 인용했으며, 해당 연구는 연령, 성별, 상태 등을 제외하면 출신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외국인 용의자가 실제로 독일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며, 관광객과 이동 중인 범죄자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의회는 만장일치로 진실성과 언론의 명예를 훼손한 제1조와 주의의무를 위반한 제2조에 따라 비난을 결정했다. 해당 문장은 실제 인구비율을 무시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중심적인 측면을 간과했다고 보았다.

② 특정 국민에 대한 왜곡 보도

“수천 명이 이스라엘을 폭격하라! 라고 외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신문은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에서는 “사람들이 처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군중 속에서 수천 명이 이스라엘을 폭격하라고 외쳤다”라고 정확히 언급했다. 언론평의회는 이 보도에 대해 두 건의 불만을 접수했다. 신청인들은 기사가 다섯 가지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 명은 반유대주의자를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그들에 관한 내용도 함께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위 내내 참가자들 사이에 있었지만, 그런 구호를 한 번도 듣지 못했으며, 경찰도 그의 질문에 그런 구호를 듣지 못했다고 확실히 부인했다. 그는 신문의 허위정보가 선동,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신청인은 시위 참가자로서, 구호가 잘못 인용되었고 맥락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올바른 구호는 “이스라엘이 폭격하고, 독일이 자금을 대고 있다”라고 하였다.

해당 신문사는 현장에 있던 두 명의 기자가 “이스라엘을 폭격하라!”라는 구호를 정확히 들었다고 주장했다. 사실 수천 명의 참가자들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 폭격하고, 독일이 자금을 대고 있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여러 명의 팔레스타인 지지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이스라엘을 폭격하라”라는 구호가 나왔으며, 이는 여러 번 들렸지만, 대다수에게 공유되지 않았다. 일부 불만제 기자들이 특정 구호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호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증명하지 못한다면서 상반된 주장 사이에서는 언론 자유가 우선시된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신중하게 보도했으며 정정 요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언론평의회는 만장일치로 이 보도가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공개경고를 결정했다. 수천 명이 이스라엘을 폭격하라고 외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참가자만이 불법적인 친팔레스타

인 구호를 외쳤으며, 이스라엘이 폭격하고, 독일이 자금을 대고 있다는 구호가 있었다고 명시했다. 해당 신문사도 다수의 참가자가 아닌 몇몇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자들이 “이스라엘을 폭격하라”라고 외쳤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평의회는 신문사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위반은 특히 심각하게 평가되며, 제목과 본문에서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여 독자들에게 시위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판단했다.

2) 독일의 시정권고 특징

독일 언론평의회의 언론윤리강령에서 차별 금지 조항(제12조)은 언론이 소수자, 민족, 종교, 사회적 배경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보도 내용이 특정 집단을 부당하게 일반화하거나 차별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경우 경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 조항은 균형 잡힌 보도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기준이다. 독일의 차별적 언론보도 사례를 종합하면, 특정 인물 및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표면적인 폄하뿐만 아니라 언론인의 고정 관념을 반영하는 뉴스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언론평의회는 종교, 민족, 국가, 성적채성 등 관련 보도에서 차별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평가한다.

(1) 특정 인물 국적 언급

독일 언론평의회는 특정 인물에 대해 의도성을 내포하지 않은 뉴스일지라도 해당 인물에 대한 국적을 불필요하게 언급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내린다. 예를 들어, 한 주간 신문은 성폭행 사건 보도에서 아프가니스탄 국적을 강조하며, 제목에 “아프가니스탄인 구속”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용의자의 신원이 불확실하다고 언급해, 무죄추정원칙(제13조)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적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방식은 전체 집단에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위험이 있어 차별 금지 조항(제12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언론평의회는 국적 언급이 공익을 넘어서는 편견을 조장한다고 보아 경고를 내렸다. 이처럼, 특정 인물의 출신 및 거주 국가를 의도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2) 종교적 신념 비방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교 선택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뉴스에서는 특정 종교에 대한 의도적 폄하를 한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베를린의 한 지역 신문은 “낙후된 무슬림 문화 출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특정 집단을 폄하했다. 편집자는 목격자 진술과 사회적 배경을 강조하며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언론평의회는 이러한 표현이 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며 진실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수 민족이 믿는 종교나 아랍 국가에서 믿는 종교에 대한 차별적 보도가 독일 사례에서 발견되었다.

(3) 인종 차별적 표현

언론에서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을 암묵적으로 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스포츠 칼럼에서 축구 선수 마티스 텔의 배경을 설명하며 ‘순혈 프랑스인’이 아니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독자는 이 표현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언론사 측은 의도적인 차별이 없었고 풍자적 맥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평의회는 해당 표현이 인종적 범주화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여 경고를 결정했다. 순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언론보도 내용을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일부 언론사는 이를 위반하였다.

(4) 국가 편견 조장

독일의 차별적 보도 사례에서 러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차별적 보도를 하여 경고를 받았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 러시아 여성이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며, 피해 사진을 포함한 보도가 이루어졌다. 독자는 부상 사진이 선정적이고, 러시아 국적을 언급한 것이 부정적 편견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평의회는 이러한 보도가 공익 목적을 벗어나 편견을 조장한다고 판단해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사건 이해에 필요 없는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윤리 강령 제11조의 선정성 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기사는 ‘러시아’라는 국적을 밝히지 않아도 사건 경위와 전개 과정을 전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적을 불필요하게 언급하였다.

(5) 부정적 고정관념 표현

언론보도를 하는 기자가 가지고 있는 암묵적 고정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 언론인은 자기 고정관념을 뉴스에 내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폭력 사건을 ‘프랑스의 멕시코화’로 표현한 보도는 멕시코를 마약 범죄와 무법 상태의 상징으로 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유해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의회는 이를 부적절한 비교로 간주했다. 보도 이후 제목이 수정되었으나, 이 사례는 언어 선택의 중요성과 국가 간 비교 시의 주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4. 일본

1) 일본 사례¹⁶⁾

일본에서는 각 언론사 자체적으로 차별적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한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일본의 방송과 통신을 관장하는 정부 기구는 '총무성'이며, 해당 기관은 통신과 방송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재정적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총무성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수행하지 않고, 방송사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다.

일본의 '방송윤리 및 프로그램개선기구'(Broadcasting Ethics & Program Improvement Organization, 이하 'BPO')에서는 보도물에서의 표현을 시정권고한다. 아울러, 해당 기구는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방송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차별적 보도에 대한 판단 결과를 함께 공표한다. BPO 자료에 의하면, 2023년 10월 BPO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은 총 5,150건으로, 전월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의견 접수방법으로는 이메일이 92.9%로 가장 많았고, 전화 6.6%, 우편 및 팩스가 0.5%를 차지한다. 성별로는 남성이 18%, 여성이 34%였으며, 나이별로는 30대가 25%로 가장 많다. BPO에 접수된 현황을 비추어 보면, 기업 최고경영자의 성범죄와 연예기획사의 기자회견 및 방송보도, 그리고 도쿄 주요 방송국들의 자체검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접수되었다.

BPO에 접수한 자료에서 팔레스타인인(人)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보도에 대한 비판이 있으며,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공황장애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음으로, 미디어가 연예기획사의 성범죄를 문제 삼지만,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이 있었다. 10월 중 청소년위원회에 접수된 의견은 총 188건으로 전월대비 102건 증가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요망·제안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도·정보와 표현·연출에 대한 의견도 다수 접수되었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외모비하 표현, 성적 가해 문제를 다룬 보도, 유명인 사망이 관련된 대담프로그램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성적 암시가 있는 장면이나 부적절한 표현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요약하자면, BPO는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각 방송사에 전달하고, 방송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일본 BPO는 '차별'이라는 규정 및 조항을 명시하지는 않는다. 다소 추상적으로 개인의 인격권 침해 또는 명예 훼손 등으로 명

¹⁶⁾ 해당 사례는 BPO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일부 사례는 차별적 언론보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수 있다.

시한다. 과거 BPO 결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에 대한 차별적 성적 표현과 차별

이 사건의 신청인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2022년 3월까지 6년 동안 주 1회 방영된 심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츠루츠루'에 출연해 왔다. 원고는 이 프로그램에서 다른 출연자들이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며 인권침해와 방송윤리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청인은 프로그램 초기부터 자신의 불만을 방송사에 전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방송사 측은 신청인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출연했으며, 신청인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반박했다. 신청인은 성적인 발언과 행동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국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송국이 이 문제를 인지하는데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021년 11월, 신청인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당시 자신의 고민을 프로듀서에게 전달한 녹음본이 있었으며, 이때 프로듀서가 처음으로 신청인의 고민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방송국이 당시 원고의 문제를 알게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신청인이 그동안 자신의 직업적 자존심 때문에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고, 프로그램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송국이 이전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11월 이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방송국은 신청인의 고민을 전달받은 후 즉시 다른 출연자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원고가 불쾌하게 여긴 부분을 방송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므로 이 시점 이후 방송국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심야 버라이어티로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성적인 발언과 행동을 포함했는지, 그리고 신청인의 인격을 훼손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과 행동이 방송국의 책임을 묻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인권 침해로 판단하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프로그램에 다소 불쾌한 발언과 행동이 있었으나, 이를 인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하지 않는 심야시간대에 방송되었고, 출연자 간의 상호작용이 프로그램 연출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데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출연자들 사이에서 허용할 수 있는 발언의 범위가 늘었고, 신청인에게 향한 음담패설과 성적인 발언도 농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문제를 개별적인 윤리문제보다는 제작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방송국이 출연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이런 고려가 부족할 경우 방송윤리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방송국은 원고의 고민을 듣고 적절한 조치를 했으므로, 방송윤리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방송업계는 제작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방송국 간의 권력 차이, 남성 중심의 직장에서 여성의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는 약한 위치에 있었으나 방송국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방송국은 출연자가 자유롭게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젠더 균형을 유지하며, 출연자의 건강을 고려하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방송업계 전체가 자사의 환경과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2) 특정 인물의 사회적 지위 훼손

이 사건은 신청인이 일본 TV 방송국인 <니혼 TV>의 정보 프로그램 ‘스킷리’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1월 28일에 방송되었으며, 같은 달 12일에 한 독일 셰퍼드 강아지가 펫(pet) 살롱에서 목욕한 후 사망한 사건을 다루었다. 원고는 방송이 자신이 개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방송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펫 살롱에서 해당 개가 목욕을 하는 약 두 시간 동안 목줄이 싱크대 손잡이에 묶인 채로 고정되어 있었고, 이후 개가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서는 원고가 직원들에게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만둘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자들의 인터뷰도 함께 소개되었다. 또한, 방송 중 화면에는 “개가 갑자기 사망 - 매니저의 학대성 목욕?”라는 자막이 표시되었고, 스튜디오 토크에서는 원고를 비난하는 발언이 주로 이루어졌다. 방송윤리 문제와 관련해, 신청인과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은 점에 중점을 두며 판단을 내렸다. 방송에서는 신청인의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이미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정보로 인해 원고와 펫 살롱이 쉽게 식별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시청자라면 목욕 행위가 학대였고, 그것이 개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원고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니혼 TV>가 문제의 방송에서 진실성이나 합리성을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지가 논의되었다. 학대의 핵심은 개의 목줄이 손잡이에 묶인 채로, 약 두 시간 동안 지속해서 머리가 고정된

채 물에 맞아 개가 사망했다는 점에 있었다. 신청인은 목욕 과정의 일부만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니혼 TV〉는 펫 살롱 직원들과 개 주인으로부터 일관된 인터뷰 결과를 얻었으며, 방송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방송이 신청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또한, 〈니혼 TV〉가 원고와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에 대한 방송윤리 문제를 검토했다. 원칙적으로 인터뷰나 보도할 때는 대상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방어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인터뷰에 응할 때까지 방송이나 보도를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진지하게 요청했으나 대상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적절한 대체 조치가 취해졌다면 즉시성을 고려하여 대상자와의 인터뷰 없이도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니혼 TV〉는 원고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신청인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하였다. 또한, 방송에서는 원고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사과문과 반박 의견을 공개했다. 이는 인터뷰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는 없지만, 원고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목욕 과정에서 개가 사망했다”라는 사실 외에도, 방송은 원고의 반려동물 훈련방법을 비판하여 원고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신청인과의 직접 인터뷰가 필요했던 사례로서, 방송사가 더 큰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인과의 직접 인터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방송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해당 방송은 신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방송윤리 문제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이번 사건은 방송사가 대상자와의 직접 인터뷰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사례이므로, 〈니혼 TV〉가 앞으로의 프로그램 제작 시 대상자와의 인터뷰의 중요성을 상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3) 특정 인물에 대한 선입견 기반 보도

이 사건의 신청인은 특정 방송에서 사용된 “금전적인 문제”라는 표현이 피해자인 형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하여 형제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의 개인적인 존경심과 애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표현은 신청인의 주장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그 표현만으로 형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명확히 전달하거나 강하게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는 일반적인 시청자의 관점에서 방송 전체를 고려해보았을 때, 이 표

현이 형제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 표현은 형제와 용의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 배경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이 다수의 관련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느 정도 맥락을 확인한 후 견해로 전달되었다. 형제와 용의자 간의 관계 및 방화 동기에 대한 정보는 보도의 중요한 요소로, 이를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방화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다룬 이 방송은 공익적 가치가 높으며, 그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신청인이 가족을 갑작스럽고 잔혹한 방법으로 잃은 충격이 크더라도, 이번 방송이 신청인의 존경심과 애정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금전적인 문제”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방송윤리 문제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 표현이 형제도 잘못이 있다는 암시를 준다는 점과, 경찰 인터뷰에 의존해 신청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방송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방송 전체를 보면 형제가 잘못했다고 명확히 암시하는 것은 아니며, 형제와 용의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경찰이 여러 관련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전달한 것이므로, 방송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범죄를 보도할 때 ‘문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는 특정 위치나 맥락, 시청 방식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그러한 표현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4) 특정 종교 인물에 대한 인격권 침해

이 사건은 2018년 5월 16일 <TV 도쿄>에서 방영된 ‘유가타 위성’이라는 뉴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다. 이 방송은 옴진리교의 후계 조직인 알레프의 활동을 다루었으며, 신청인인 알레프 신자가 등장했다. 신청인은 방송이 자신을 알레프 신자로 식별 가능하게 만들었고,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방송윤리 위반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했다. 이 사건 심의 결과, 해당 방송이 사생활이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방송윤리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먼저, 신청인의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였고, 목소리도 대부분 편집되었으나, 일부 부분에서 신청인의 목소리가 편집되지 않고 방송되었다. 그러나 방송내용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청인이 알레프 신자임을 이미 알고 있는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한, 방송의 목적이 공익적이며, 신청인과 알레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촬영을 계속한 것은 불법이 아니고, 초상권 침해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일부 시청자가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이는 의도된 것이 아니었으며, 방송 후에는 이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송윤리 문제로 볼 수 없다고 결정되었다.

이번 뉴스가 공익성을 지닌 보도였지만, 신청인이 종교 조직 내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그를 식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평가다. 방송내용이 아무리 공익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방송의 목적과 상충하지 않으며, 이는 이번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TV 도쿄>가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흐름 처리와 음성 처리의 기술적 문제, 편집 과정의 문제, 그리고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 문제 등을 포함하여 더욱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5) 인권 침해

2021년 3월 30일, <후지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리얼리티 프로그램 ‘Terrace house Tokyo 2019-2020’에 출연한 여성 프로듀서 기무라 하나가 방송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은 기무라 하나 씨의 어머니가 딸의 죽음이 프로그램 내 과도한 연출 탓에 소셜 미디어에서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인권 침해를 이유로 신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후지 텔레비전>은 여성을 폭력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으며, 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심의 결과, 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지만, 출연자의 신체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점에서 방송윤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후지 텔레비전>이 이번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망하였다. 본 사건에서 후지 텔레비전은 출연자 자해 이후 조치를 했으며, 방송 결정 과정에서도 신중히 처리했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신청인은 기무라의 행동이 일방적인 '동의서 겸 서약서'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기 결정권 및 인격권의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성인이 된 출연자가 자유 의지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며, 제작진의 지시가 위법성을 띠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자기 결정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6)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한 비하

이 사건은 2017년 12월 29일에 <TBS>에서 방영된 “신정보 7일 뉴캐스터 초호화! 연예 뉴스 랭킹 2017 결정판”이라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의 주요 연예 뉴스를 랭킹 형식으로 소개했으며, 그중 14번째 항목에서 배우 호소카와 시게 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방송에서는 “14위, 배우 호소카와 시게키,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라는 해설과 함께 과거에 호소카와 시게키가 했던 발언이 재사용되었다. 그 발언에서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장난스럽게 인

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서 “작년 말, 호소카와 시게키는 소속사로부터 권력 남용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올해 5월, 그는 계약이 종료되면서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라고 보도하였다. 이 방송은 약 31초간 지속되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방송에서 호소카와 시게키의 장난스럽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해설에서 그가 권력 남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도된 점이다. 이에 따라 시청자들이 호소카와 시게키가 권력 남용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의 사회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 사건을 인권 침해로 다루지, 아니면 방송윤리 문제로 다루지가 관건이었다. 다음 세 가지 이유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방송윤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첫째, 방송은 매우 짧았고, 해설과 자막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했으나, 중요한 정보가 빠졌다. 방송 시간이 짧았고, 특별히 비꼬는 표현도 없었으며, 권력 남용이 있었다고 직접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소카와 시게키의 사회적 평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호소카와 시게키가 이 방송으로 인해 큰 피해를 느꼈을 수 있지만, <TBS>가 악의적으로 방송을 제작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TBS>는 방송 초기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논의에 응했으며, 피해 복구 조치를 빨리 취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방송윤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도쿄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 호소카와 시게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언급되지 않아, 사건을 다룰 때 공정성과 정확성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둘째, 호소카와 시게키의 “장난스러운 발언” 영상을 사용한 것이 그의 명예와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방송이 연말 특집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호소카와 시게키의 계약 문제가 오래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방송윤리 문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위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결국, 이 방송은 연예정보프로그램의 일부였지만, 호소카와 시게키의 연예인 경력에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했다. 위원회는 <TBS>가 이번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결정을 통해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며 이를 향후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7) 특정 집단 폄하 표현

2017년 1월 2일, <도쿄 메트로폴리탄 텔레비전>(Tokyo MX)는 ‘뉴스 걸즈’ 프로그램에서 오키나와 기지 문제를 다루었고, 1월 9일에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1월 2일 방송에 대한 시청자 반응을 논의했다. ‘뉴스 걸즈’는 외부 제작 프로그램이었지만, <도쿄 메트로폴리탄 텔레비전>은 방송내용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며, 이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방송이 헬리패드(Helipad)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로 묘사하고, 자신을 테러 및 범죄행위의 주도자로 오도하여 시청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이 자신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생활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반기지 운동의 주도자로 묘사되고 하루 5만 엔의 일당을 지급한 것처럼 보도된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쿄 메트로폴리탄 텔레비전>은 1월 2일 방송에서 신청인이 '노리코에 넷'의 호스트이며, 오키나와 기지 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을 뿐이며, 이 사실이 신청인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에서 신청인이 반기지 운동의 주도자라거나 참가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했다고 언급한 적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었고 그 내용도 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PO 위원회는 이 사건을 심의한 결과, 1월 2일 방송이 전반부의 녹화 영상과 후반부의 스튜디오 토크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두 부분이 불가분의 관계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영상에서는 반기지 운동이 과격하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묘사되고 이후 토크에서는 신청인이 관여한 '노리코에 넷'이라는 단체의 전단지 등이 언급되며, 출연자들의 발언과 자막, 해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신청인이 반기지 운동 참가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방송 전체를 고려했을 때, 해당 방송은 신청인을 과격하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반기지 운동의 주도자로, 참가자들에게 하루 5만 엔의 일당을 지급하는 사람으로 묘사하여, 그의 사회적 지위를 낮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방송이 공익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도쿄 메트로폴리탄 텔레비전>이 이러한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인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1월 2일과 1월 9일에 방영된 '뉴스 걸즈' 방송에는 두 가지 방송윤리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첫째, 방송윤리 원칙에 따르면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를 다룰 때는 가능한 많은 각도에서 문제를 명확히 하고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도쿄 메트로폴리탄 텔레비전>은 1월 2일 방송에서 신청인과의 인터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지 않았다. 둘째, 일본 민영방송 연합의 방송기준에 따르면 "인종, 민족 또는 국적이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는 해당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1월 2일과 1월 9일 방송에서는 이러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BPO 위원회는 <도쿄 메트로폴리탄 텔레비전>이 이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번 결정의 요지를 방송할 것을 권고하며, 방송윤리 원칙과 일본민영방송연맹의 방송기준에 따른 인권 관련 규정을 지킬 것, 방송내용에 대한 심사 및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8) 특정 인물에 대한 음모 의혹

2017년 1월 2일, <도쿄 메트로폴리탄 텔레비전>은 정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오키나와현 히가시무라 타카에 지역의 미군 헬리패드(Helipad) 건설 반대 운동을 특집으로 다뤘다. 군사 저널리스트가 오키나와를 방문해 보고한 VTR을 녹화한 후, 스튜디오에서 출연자들이 해당 영상에 관한 대답을 진행하였다. 다음 주인 1월 9일에는 이 특집에 대한 인터넷 반응을 소개하는 방송이 이어졌다. 이 방송에 이의를 제기한 신청인 신숙옥 씨는 이 프로그램이 헬리패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비방하고, 거짓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을 테러리스트의 배후로 묘사하며, 기지 반대 운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도되었으며, 인종차별을 조장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BPO 위원회는 심의 결과, 2018년 3월 8일 위원회 결정을 통해, 이 방송이 신숙옥 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도쿄 메트로폴리탄 텔레비전>에 대해 권고를 통보 및 공표했다. 방송에서 신청인이 과격한 범죄 행위를 통해 기지 반대 운동을 해온 인물이며 그 배후인, 신청인은 기지 반대 운동 참가자들에게 5만 엔의 일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도쿄 메트로폴리탄 텔레비전>이 이러한 주장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도쿄 메트로폴리탄 텔레비전>은 2017년 1월 2일 '뉴스 여성' 프로그램에서 오키나와 기지 문제를 다뤘고, 1월 9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1월 2일 방송에 대한 시청자 반응을 소개했다. 신숙옥 씨는 이 방송에서 자신이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로 묘사되었고, 자신이 테러 및 범죄 행위의 배후로 보도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방송이 자신을 사회적으로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여, 평온한 사회생활을 누릴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쿄 메트로폴리탄 텔레비전>은 1월 2일 방송이 단지 신숙옥 씨가 '노리코에넷'을 주관하고 있으며, 현재 오키나와 기지 문제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며, 이에 따라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송에서 신숙옥 씨가 기지 반대 운동의 배후라거나 참가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다고 언급된 적이 없으며, 설령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공익적인 주제를 다룬 방송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PO 위원회는 1월 2일 방송이 VTR과 스튜디오 토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VTR 내용에 따라 스튜디오 토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했다. VTR에서는 기지 반대 운동이 과격하고 범죄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묘사되었고, 스튜디오 토크에서는 신숙옥 씨의 이름이 적힌 '노리코에넷' 전단지만 언급되며, 신숙옥 씨가 기지 반대 운동 참가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출연자들의 발언과 자막이 반복적으로 나왔다고 하였다. 이러한 방송내용을 종합하여, 본 방송은 신숙옥 씨를 과격하고 범죄 행위를 반복하는 기지 반대 운동을 직업적으로 해온 인물이며 그 배후로 묘사하였고, 이에 따라 신숙옥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송내용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질 수 있으나, <도쿄 메트로폴리탄 텔레비전>은 이러한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신숙옥 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결론지었다.

(9) 여성에 대한 성적 표현

2023년 7월 18일, 에히메현의 <아이 텔레비전>(i-television)에서 방송된 로컬 심야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제기한 인권 침해 및 방송윤리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발표되었다. 신청인은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저속한 발언과 성적인 언행을 듣고 수치심을 느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아이 텔레비전>은 프로그램 내용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 침해나 방송윤리상의 문제는 없다고 반박하였다.

방송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방송국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인지했거나, 과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2021년 11월, 신청인이 프로그램 프로듀서에게 자신의 고민을 전달한 녹음 자료를 통해, 프로듀서가 그때 처음으로 신청인의 고민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아이 텔레비전>은 같은 해 11월에 처음으로 신청인의 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판단되었다. 그 이전의 과실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아나운서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고민을 숨겼고, 이메일이나 블로그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 텔레비전>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2021년 11월 이후, <아이 텔레비전>은 신청인의 고민을 듣고 즉시 다른 출연자들에게 저속한 발언을 중지하도록 전달하고, 녹화 시 신청인이 불쾌하다고 한 부분을 방송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따라서 <아이 텔레비전>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심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이 있었다면 인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언행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이 시청하지 않는 심야시간대에 방송되었으며, 출연자들 간의 대화와 표현이 주된 논점이 었다. 특정 발언이나 행동보다는 제작 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방송국이 출연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아이 텔레비전>은 시청인의 고민을 듣고 적절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방송윤리상의 문제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마지막으로, BPO는 제작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방송국 간의 위치 차이, 남성 중심의 직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여, <아이 텔레비전>은 출연자가 자신의 고민을 쉽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젠더 균형을 맞추는 등의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방송업계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방송업계 전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사의 환경과 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 일본의 시정권고 특징

일본의 방송과 통신을 관장하는 총무성은 통신과 방송에 관한 정책 수립과 재정적 규제를 담당하지만, 방송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규제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의 자율 규제에 의존한다. 일본의 '방송윤리 및 프로그램 개선 기구'(Broadcasting Ethics & Program Improvement Organization, BPO)는 보도물의 잘못된 표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BPO는 방송프로그램 전반에서 차별적 보도와 표현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표하며, 2023년 10월 기준, BPO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은 총 5,150건에 달하며 전월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BPO 위원회는 방송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인권 침해 사례를 심의하며, 방송사에 개선을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특정 사건을 심의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사례를 분석하고 결정을 내린다.

초기 사건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먼저 해당 방송내용이 법적 또는 윤리적 기준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주요 쟁점이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방송사의 입장을 확인한다. 초기 검토에서는 사건이 인권 침해,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오정보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해당 위원회는 사건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쟁점을 식별한다. 예를 들어, 성적 표현이 포함된 방송에서는 해당 표현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났는지, 당사자의 인격을 침해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오정보나 명예훼손이 문제된 경우, 방송내용의 진실성, 권리 침해 여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보도였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사실관계 조사 및 관련 자료 분석 위원

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는 방송된 내용이 관련된 인터뷰, 문서, 영상 자료 등을 철저히 검토하며, 대상자와 방송사의 입장을 비교 분석한다. 예를 들어, 특정 발언이나 행동이 방송에서 잘못 전달되었는지, 해당 표현이 대상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다.

BPO 위원회는 관련 법적, 윤리적 기준을 사건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의 경우, 방송내용이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했는지, 초상권 침해의 경우, 대상자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보도인지, 대상자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위원회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건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 일부 사건에서는 소수 의견도 함께 제기되며, 이러한 의견은 사건의 다각적 분석에 기여한다. 권고 및 공표 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결론을 바탕으로 방송사에 권고를 통보하고, 이를 공표한다. 권고는 방송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방송사가 문제를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인터뷰 절차의 개선, 사실 확인의 철저성 강화, 인권 보호 조치 등의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후속 조치에 대해서 방송사가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반영한 개선 조치를 했는지 모니터링 한다. 또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송사 내부에서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프로그램 제작 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속해서 촉구한다. BPO에 접수한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를 시행하고 공표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1) 차별적 보도와 편견 조장

BPO에 접수된 사건 중 일부는 차별적 보도와 관련되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차별이라고 명시할 수 있는지 모호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 연예 기획사의 기자회견을 다루는 방송에서 기업 소유주의 성범죄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 많은 불만이 접수되었다. 또한, 미국 연방의사당에서 유대인 단체가 이스라엘에 항의하는 영상을 잘못 보도한 사례에서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편견은 정신 질환이 관련된 보도에서도 나타났다. 한 사례로, 기업 최고경영자가 공황 장애로 인해 기자회견에 불참한 것을 다루면서 부적절한 발언이 방송되었고, 이는 정신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BPO 위원회는 사회적 균형을 위해 다양한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특정 인물 및 집단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2) 인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후지 TV〉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테라스 하우스(Terrace House)의 출연자가 자살한 후, 방송의 과도한 연출이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BPO 위원회는 이 사건을 심의하며,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사이에서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출연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방송윤리 문제를 지적하였다. 해당 위원회는 직접적이거나 물리적인 가해가 아닐지라도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 다면적으로 심의를 수행한다. 이는 방송윤리 차원에서 시정권고를 중요하게 간주한다고 볼 수 있다.

(3) 특정 집단에 대한 폄하 표현

〈도쿄 메트로폴리탄 텔레비전〉의 정보 프로그램에서는 오키나와 미군 기지 문제를 다루면서 반대 운동을 하는 주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묘사하여 논란이 되었다. BPO는 이 방송이 특정 집단을 폄하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였다.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모욕과 폄하는 차별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해당 위원회는 이에 대한 강력한 시정권고를 제안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내 헌법 차원에서 가치를 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통해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유럽연합(EU)

1) 유럽연합의 사례

(1) 언론의 ‘잊혀질 권리’ 침해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범죄와 사고 등의 과거 행동이나 발언으로 인해 현재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의 정보를 삭제 또는 접근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특히, 기사가 인터넷에 업로드 되는 빈도가 증가하며 과거의 뉴스가 계속해서 접근 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설령, 교통사고 가해자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중으로부터 잊혀질 권리가 있으므로 언론은 실명, 주소 등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피면접자(interviewee)의 차별적 표현

언론이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직접적으로 차별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것 이외에도 피면접자 또는 정보 제공자의 차별적인 발언을 여과 없이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역시 차별적 보도에 해당한다. 언론은 피면접자의 의견과 정보를 공중에게 최대한 사실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입을 빌려 특정 인종, 민족 또는 종교에 대한 혐오 또는 차별적 표현이 담긴 보도를 할 경우 언론이 암묵적으로 그들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 선입견이 강해지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

(3) 특정 집단 및 개인의 명예훼손 보도

언론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를 뜻한다. 기자가 성소수자 또는 종교에 관한 내용을 보도할 때 고정 관념 또는 선입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증오나 적대감을 조장하거나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4) 유럽연합의 시정권고

유럽연합은 유럽의 27개의 국가로 이루어진 국제 조직으로, 이들 간의 협력과 통합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각 회원국은 자국의 언론을 직접 규제하고 관리한다. 만약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차별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에 개입할 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차별 보도를 제한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할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회원국마다 문화와 정치에 따라 차별 보도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지침 및 기준선만 제공하며 이를 실행하는 것 또한 회원국의 자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혐오표현 및 차별 보도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의 인권, 평등,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은 세계 1차, 2차 대전을 거치며 인종차별과 혐오표현으로 인한 끔찍한 결과를 경험하며 인권 보호와 차별 방지를 국제적 목표로 삼아 이를 실천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모든 법과 지침은 민주적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언론의 차별적 보도에 대한 지침을 모든 회원국이 따를 수 있도록 지침으로 제작하였다. 더불어, 각 회원국의 문화와 정치 환경을 존중하는 선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각 국가의 법적, 규제적 차이를 줄이고 명확하고 균형 있는 법률을 도입하게끔 유도하기 위함이다.

2) 유럽연합의 시정권고 특징

유럽연합은 직접적인 시정권고를 할 수 없으므로 '유럽연합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이하 'FRA') 등의 기구를 통해 각 접적으로 회원국의 차별 보도 현황과 시정권고 법률 및 시스템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그 중 대표적인 보고서가 '기본권 보고서'(Fundamental Rights Report, 이하 'FRR')이다. FRR은 매년 FRA에서 발간하는 EU 회원국의 인권 보고서로 어린이, 집시, 난민 등의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 현황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 FRR은 미디어의 차별적 보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며 회원국의 차별적 보도 현황과 시정권고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직접적으로 회원국의 차별적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는 불가하지만, 매년 차별적 보도를 조사하고, 특정 국가의 차별 보도에 대응하는 법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이 차별적 보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한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내에서 인권 또는 자유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 이를 중재하는 유럽 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이하 'ECHR')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불만 제기자 또는 피해자는 인권 또는 자유가 침해당할 시 자국 법원과 언론 기관에 제소한다. 판결은 회원국의 절차를 따르나 보통 하급 법원에서 최고 법원 순으로 이루어진다. 국내 최종 판결 후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판결에 불만이 있을 시 ECHR에 제소할 수 있다.

따라서 차별적 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국내 판결이 끝난 이후 ECHR에 제소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차별적 보도로 인해 ECHR에 제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이유는 국내 하급 법원부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ECHR에 제소할 정도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을뿐더러 ECHR에서도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언론의 차별적 보도로 인해 자신의 인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ECHR에서 판결은 「유럽인권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ct)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론의 제약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많은 판례에서 인종, 종교 또는 성 차별적 기사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만큼의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예로, 피면접자가 특정 종교를 '악마를 따르는 종교'라고 칭하며 차별적인 내용이 여과 없이 보도되었지만, 기사가 법적 권한 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즉, ECHR은 차별적 보도로 인한 개인 또는 집단의 인권 침해로 인한 언론의 제약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다. ECHR은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기사에 교통사고 가해자의 실명이 언급되었을 때 가해자의 '잊혀질 권리'와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

가 대립 될 수 있다. 이 때 ECHR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며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언론에 가해자의 성명을 익명화할 것으로 판결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벨기에 일간지 <레소어>(Le Soir)의 발행인 패트릭 허바인(Patrick Hurbain)이 1994년에 일어난 치명적인 교통사고에 관한 기사에서 가해자의 이름을 익명화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사건이다. 가해자는 당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기사는 <레소어>의 디지털 아카이브에 남아 있었고, 가해자는 자신의 이름이 인터넷 검색 결과에 나타나면서 직업적인 불이익을 우려하였다. 이에 가해자는 해당 기사를 익명화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신문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가해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기사를 익명화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벨기에 언론윤리위원회(CDJ)에 이 사건 관련 불만제기를 하였다. CDJ는 이 요청을 기각하였으나, 법원은 가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여 기사를 익명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협약 제10조에 의거하여 표현의 자유와 잊혀질 권리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 사건이지만 이와 유사한 맥락의 사례는 드물다.

6. 소결

대부분 국가에서는 언론의 시정권고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언론평의회 등과 유사한 기관은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언론사들의 자율적인 규제와 책임을 강조한다. 국가별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범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언론 윤리강령을 기반으로 '차별' 금지를 위한 언론 시정권고를 공표한다. 언론보도에서 차별적 내용이 관련된 사례를 다루는 것은 각국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국가는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뉴스에서 다루어지는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인격권을 중요시한다. 규정 위반 시에는 해당 언론사에게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 등의 시정을 권고한다. 대부분의 언론평의회는 시민들의 불만(이의) 접수를 바탕으로 심의하며, 다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결정문을 공표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한국, 독일, 영국, 일본, 유럽연합 중심으로 차별적 언론보도에 관한 사례를 종합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국가 및 연합체가 공통으로 중요시하는 가치와 접근법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한국, 독일, 영국, 일본, 유럽연합의 차별적 보도 사례를 통해 볼 때, 이들 국가와 연합체는 차별적 보도의 위험성을 인식하

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에 따라 차별적 보도에 대한 규제와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인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공통된 노력은 이들 국가와 연합체의 언론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한 분석 대상 국가(유럽연합 포함)에서는 언론의 차별적 보도에 관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여 판단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시정권고를 공표하고 있다. 각 국가에서 심의하는 차별적 언론보도의 특성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1) 공통점

(1) 차별적 보도에 대한 민감성과 사회적 책임 강조: 한국, 독일, 영국, 일본, 유럽연합 모두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적 보도에 대한 민감성을 높게 유지하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한다. 이들 국가와 연합체는 차별적 보도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공통으로 차별적 보도를 억제하고,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2) 규제와 자율성의 균형: 국가 대부분과 유럽연합은 언론의 자율 규제를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감독을 적절히 결합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방송윤리 및 프로그램 개선 기구(BPO)는 자율규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영국도 자율 규제와 정부의 감독이 결합한 형태로 언론을 규제하고 있다.

(3) 인권 보호의 중요성: 인권 보호는 모든 국가와 유럽연합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독일과 유럽연합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 방지와 인권 보호에 강한 의지가 있으며, 법적 규제와 지침을 통해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를 언론보도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4)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표현의 자유는 각국과 유럽연합이 차별적 보도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면서도 중요한 가치로 보호하려는 요소이다. 유럽연합은 표현의 자유와 잊혀질 권리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판례를 통해 경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차별적 보도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2) 차이점

(1) 언론보도에서 차별의 성격 차이: 우리나라에서 심의한 차별적 언론보도에서는 주로 표현에 주목하였다.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직접적 차별과 선입견 조장의 사례보다 언론에서 사용한 표현에서 간접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피해를 심의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꿀떡은 병어리' 등의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일 수 있지만, 이러한 표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함축적 차별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의 사례는 다소 다르다. 뉴스 이용자가 특정 뉴스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을 판단하고, 이를 평의회에 제소한다. 즉, 특정 보도가 누군가의 인격권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는지를 다면적으로 심의한다. 개인이 차별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상대적으로 다르고, 특정 사례의 맥락과 배경을 분석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 규제 접근 방식의 차이: 각국의 규제 접근 방식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독일은 특정 종교 비하 또는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 표현 등 뉴스나 혐오 발언을 강력히 처벌하며, 차별적 보도를 금지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자율 규제를 강조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방송사 자체의 자율 규제를 중시하고 있다. BPO 위원회에서도 차별적 언론보도라고 명시하지는 않는다. 유럽연합은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여, 국가마다 규제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3)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보도 관행: 문화적 맥락은 각국의 보도 관행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해 차별적 보도에 대한 내부 비판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으나, 한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며 차별적 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 영국은 언론의 자유가 강하게 보호되면서도, 명예훼손법을 통해 차별적 보도를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

(4) 법적 대응의 차이: 독일과 유럽연합에서는 법원이 차별적 보도에 대한 판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은 명확한 법적 기준을 통해 차별적 보도를 규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ECHR를 통해 각국의 판결을 중재한다.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법원이 개입하기 전에 언론사 내부의 자율 규제 또는 정부 기관의 권고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5)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 유럽연합에서는 잊혀질 권리가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개인의 과거가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인식과 법적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지만, 여전히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V. 결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제언

본 연구진은 한국, 독일, 영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법규범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시정권고 사례를 종합 및 요약하였다. 각국의 차별적 언론보도 및 인권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였으며, 한국, 영국, 독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의 비교 분석 결과를 언론사의 역할과 책임, 개인의 인격권, 그리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를 위해 과제를 수행하면서 각국의 규제 방안의 목적에 내재된 언론 철학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개인의 표현 자유를 위한 언론의 사회적 역할: 사회 균형 추구를 중심으로

뉴스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언론인들이 주목하는 현안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접근하며, 전문 지식을 담아내는 중요한 매체다. 뉴스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조직, 기관, 나아가 시민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뉴스를 제작하는 언론인들은 직업적 소명 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오정보와 허위 정보가 범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뉴스가 쉽게 생산되고 유포되기도 한다. 언론은 '사회적 통제'와 '사회적 결속'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저널리즘의 가치 추구 차원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우리 사회가 균형 잡힌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결속은 사회적 균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언론보도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내용을 제공해야 하고 표현에서도 암묵적인 차별을 내포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별 보도는 일반 시민들에게 특정 인물 및 집단에 대한 선입견/편견을 갖게 함으로써, 개인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덕목이다. 언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자는 소신 있게 사건을 보도하지 못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정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에 언론 자유와 사회 책임의 조화가 화두가 된다. 사회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고, 언론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언론사의 사회 책임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각국의 차별보도를 대처하기 위하여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언론사는 자신들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은 실수를 한다. 때로는 공익에 대한 저마다의 개념이 다르다 보니, 간혹 개인 혹은 집단을 차별 하는 보도를 자신도 모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균형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연구진은 발견하였다. 비록 연구 대상이 아니지만, 영국의 오프콤(Ofcom) 사례는 언론의 사회적 균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본 사례에 제시된 차별적 보도를 지양하기 위한 불편부당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프콤의 입장을 간략하게 언급하면, 모든 의견에 동일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편부당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은 매우 용이하다. 특정한 입장을 선호하지 않고, 모든 주장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불편부당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는 작업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차별적 보도에 대한 판단과 관련, 영국의 사례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가령, 보수당 소속의 영국의회 의원이 <GB News> 프로그램에서 뉴스 앵커를 담당하였다. 이에 대해 오프콤은 불편부당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오프콤은 불편부당 원칙은 영향력 있는 미디어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모든 담론은 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동등한 민주주의 담론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럼으로써 시청자들은 다양한 견해들을 접할 수 있고, 민주주적인 과정에서의 숙의에 근거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비록 정치인이 어느 한쪽에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시청자들에게는 보수의 입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의 뉴스 진행은 해당 뉴스의 공신력을 손상시킨다고 판단하였다(2024년 3월18일). 시청자들이 뉴스 진행자의 특성으로부터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견은 시청자, 즉 개인이 해당 문제를 숙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언론의 사회적 균형에 대한 책임은 언론이 해당 사건을 불편부당하게 보도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국의 차별 보도에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면서 공통적인 판단 근거는 개인들이 자율적

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언론보도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¹⁷⁾ 그러나 동시에 언론과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피해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은 헌법적 가치와 인권의 중요성을 깊이 고민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언론이 이들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편견에 근거한 보도는 사회적 균형에 기여해야 하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손상하는 행위다. 사회적 균형은 행위자들 간의 균형을 의미한다.

2. 사회적 균형을 위한 관계의 평등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밀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밀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추상적인 진술 보다는 사람들 간의 관계의 평등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였다. 각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자들에게 혹은 제 3자에게 특정한 혹은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갖지 못하도록 차별적 보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격권 혹은 명예훼손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본다.

특정인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들의 평등이 보장되어야만 특정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해당 집단 혹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배척을 받거나 혹은 편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해당인 혹은 집단을 바라본다면, 자연스럽게 해당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밖으로 표출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모든 목소리가 사회에 들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압력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의 평등이 선결이다. 그렇다면 관계의 평등은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 밀은 “상호 우월성을 인정한 호혜 관계(reciprocal superiority)”를 제시하고 있다. 즉 추상적인 평등이 아니라 타인이 자신이 하지 못하

17)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88년 2월25일 시행된 헌법 조항에서는 언론사의 언론자유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언론사의 언론자유는 언론사의 언론자유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 명명하고자 한다.

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차별 보도를 금지하는 논리적 근거는 해당 기사를 구독한 사람들이 특정 집단 혹은 개인에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함이다. 선입견을 배제함과 동시에,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위축 효과를 방지함으로써,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이 언론의 사회적 균형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본 과제는 발견하였다. 본 과제의 일차 목표인 차별 보도 금지를 위한 논리적 근거로서 사회적 균형을 강조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재개념화 하였다.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추상적 차원의 평등이 아니라 실천적 차원의 평등을 모도하기 위하여 차별 보도 금지를 모든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한다. 본 보고서를 근거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이 첫째, 정부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둘째, 시민들에게 왜곡이 없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외에 관계의 평등을 위한 실천이 중요한 사회적 책임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 수립한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의 사회적 균형을 위한 관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와 관련하여 실천적인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3. 정책 제언

1) 차별적 언론보도 시정권고에 대한 대외홍보 강화

차별적 언론보도는 사회적 약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권고는 매우 중요하다. 국내외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평의회는 이러한 보도의 위험성과 그 영향력을 경계하며, 시정권고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시정권고는 단순히 개인의 초상권이나 신분 노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헌법과 법적 규범에 근거한 가치 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차별적 언론보도를 한 언론사에 관련 법적 규범을 명확히 고지하고, 시정권고의 근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언론인이 추구하는 가치관 또는 신념에 따라 뉴스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균형 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받게 된다. 이러한 훈련을 받은 언론인일지라도 차별적 언론보도를 할 수 있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시정권고를 알리기 위해서는 논리적 근거가 더욱 풍부해야 한다. 이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가 심의한 차별적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내용과 결과는 누구나 접근

할 수 있도록 공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언론사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차별적 언론보도를 지양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차별적 보도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정부 유관단체와의 협력 하에 진행되며, 다양한 언론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홍보는 전략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것은 차별적 언론보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책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선거캠페인 기간 동안 정치적 논쟁이 촉발되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선거캠페인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언론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 차별적 언론보도에 관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무료로 배포하는 것도 권장된다. 아울러, 국내 주요 언론사와 단기계약을 체결하여 차별적 언론보도를 지양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뉴스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한국언론중재위원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차별적 언론보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2) 국가별 규제 접근방식과 윤리강령의 정비

차별적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접근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각국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자율적인 윤리강령과 규범을 마련하고 공표하고 있지만, 이러한 윤리강령을 종합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내 언론사들도 저마다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결속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내 언론사의 윤리강령을 종합하여 재범주화하는 것을 제언한다.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에서는 저널리즘 가치를 제대로 추구하기 위한 언론 윤리강령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 윤리강령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현재 다양한 기관이 내세우는 언론보도 윤리강령 및 시정권고 심의 기준을 총망라하는 ‘백서’가 필요하다고 본다. ‘차별적 언론보도 방지를 위한 백서’는 장기적으로 교과서로 기록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시정권고 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언론 윤리강령을 총망라하고 상호배타적으로 조항을 정리하여 백서로 발간하고 국내 정부기관 및 언론사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차별적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차별적 언론보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이 백서는 차별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서 국내 다양한 언론사들이 차별적 언론보도의 소지가 존재하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보고서에서 논의한 사회적 균형 추구로서의 책임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언론사들에게 윤리강령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시정권고의 과정과 결과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전략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널리 알릴 필요가 있으며, 언론사들이 자발적으로 윤리강령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언론중재위원회는 다른 국가의 언론평의회 및 중재 기구와의 조직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옥스퍼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전 세계 언론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공표하는 방식을 참고하여, 유사한 기구를 운영하는 국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각국의 시정권고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가 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언론사 중재 및 규제를 위한 근거의 타당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국내 저널리즘 연구자들에게 언론 정책 및 윤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차별적 언론보도 사례와 시정권고 내용은 저널리즘 연구를 위한 귀중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연구 성과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론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의 오정보와 허위정보는 차별적 언론보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국내 주요 언론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시정권고 중심 언론보도는 수많은 온라인 언론사의 보도 활동에 경각심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는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과 업무적 제휴도 고려할 수 있다. 시정권고의 내용을 기사화한 후 해당 플랫폼에서 지속해서 제공하면서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차별적 언론보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4) 차별적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사례 접수제도의 활성화

우리나라에서도 차별적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사례 접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이 특정 언론보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예비 심사와 본 심사를 거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 신고제도를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으로 홍보하여, 뉴스 이용자들이 신고 대상 언론보도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다수의 이의가 제기된 언론보도물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개인 신고 활성화는 차별적 언론보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으며, 시정권고 검토를 위한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권, 평등, 저널리즘,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시정권고의 당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활동이 더욱 정당성을 확보하고, 차별적 언론보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심의 청구제도는 국민청원 또는 신문고 등의 웹 운영 방식을 참고하는 것이 적합하다. 독일 언론평의회에서 '이의' 또는 '불만' 처리 접수 절차를 참고할 필요성도 있다. 체계적으로 구성한 언론 심의결과는 조직 대 조직 조정·중재의 영역을 넘어 바람직한 언론문화를 자리 잡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의 언론문화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이 충족되어야 한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서버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 보다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또는 유관기관과 업무적 제휴를 맺고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차별적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시정권고 대상의 뉴스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신문고는 과거 '국민청원' 등의 성공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효과적으로 차별적 언론보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5) 언론의 차별적 보도에 대한 학술연구 장려

본 연구진은 관계론적 접근에서 사회적 균형에 대한 담론을 전개하였다. 국내외 언론보도 내용과 효과에 관한 내용에 대해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차별적 보도와 시정권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학문적 담론은 아직 미비하다. 사회적 균형 차원에서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바라보는 차별적 언론보도는 무엇이고 차별적 언론보도를 줄이기 위한 학술적 접근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전 세계적으로 혐오표현과 비시민성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표현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 혐오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부정적 감정과 태도를 진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차별적 보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차별적 언론보도에 대한 명확한 학술적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고, '차별'과 '언론'의 개념을 결합

한 연구에서는 학자마다 상이한 관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개념적 모호성으로 인해 차별적 언론보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본 연구진은 '차별적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적 연구 자료를 공개하고 공유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미디어 연구자들이 차별적 언론보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이 주제에 대한 학술적 담론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혐오표현'과 함께 '차별적 언론보도'를 근절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차별적 언론보도의 내용과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활성화도 중요하다.

다양한 연구결과물은 온라인에서 공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차별적 언론보도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차별적 언론보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더 나은 언론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선화. (2020).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63호, 국회입법조사처
- 김지혜. (2014). 차별선동의 규제: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조>, 64(9), 36-77
- 김찬중. (2019).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뉴스 보도가 혐오에 미치는 효과 연구 : 위협 보도와 온정주의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3(5), 31-60.
- 심재진. (2017).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영국의 2010년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강원법학>, 2017(50), 43-85.
- 언론중재위원회. (2024). <시정권고편람>
- 이세원. (2024).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4건중 1건은 차별금지 위반...장애 비하 많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9034300005>
- 전창영, 나은희, 최철호, 김민정. (20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심의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방송학보>, 2018(10), 70-102.
- 차현숙 (2009). 일본의 방송규제. <한국법제연구원>
- 홍주현, 나은경. (2016). 온라인 혐오표현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이슈 속성별 확산 패턴 및 혐오표현의 유형과 강도. <한국언론학보>, 60(5), 145-175.
- Badjatiya, P., Gupta, S., Gupta, M., & Varma, V. (2017). Deep Learning for Hate Speech Detection in Tweets. Proceedings of the 2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Wide Web Companion - WWW '17 Companion, 759-760. <https://doi.org/10.1145/3041021.3054223>
- Barnidge, M., Kim, B., Sherrill, L. A., Luknar, Ž., & Zhang, J. (2019). Perceived exposure to and avoidance of hate speech in various communication settings. Telematics and Informatics, 44, 101263. <https://doi.org/10.1016/j.tele.2019.101263>
- Kim, B., Lowrey, W., Buzzelli, N., & Heath, W. (2020). News Organizations and Social Cohesion in Small, Large, and Global-Local Communitie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23. <https://doi.org/10.1080/15205436.2020.1839103>
- Baum, B. (2000). Rereading power and freedom in J.S. Mill. Toronto, Canad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Clark, S. (1975). Aristotle's man: Speculations upon Aristotle's anthropology. Oxford, England: Clarendon Press.
- Fraser, N. (2008). Scales of Justice: Reimagining Political Space in a Globalizing World.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Hogg, M. (2005). Social Identity and Leadership. In D. M. Messick & R. M. Kramer (Eds.), The psychology of leadership: New perspectives and research (pp. 53-80).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Maitra, I. & K. McGowan (ed.). (2012). Speech and Harm: Controversies Over Free Speech.

-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cKinnon, c. (1988). *Feminism Unmodified: Discourses on Life and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 Mill, J. S. (1823). "Free Discussion, Letter I Morning Chronicle," in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XXII, Jan. 28.
- Mill, J. S. (1825). "Law of libel and liberty of the press," in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ume XXI.
- Mill, J. S. (1832). "Hickson's New Charter Examiner," in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ume XXII.
- Mill, J. S. (1832). On Genius. in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ume I.
- Mill, J. S. (1834). "The Gorgias," in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XI,
- Mill, J. S. (1837). *The Principles of Toleration*. London. reprinted New York, 1971.
- Mill, J. S. (1843). "System of Logic," in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ume VII.
- Mill, J. S. (1843). "Electoral Districts," in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ume XXV, July 25.
- Mill, J. S. (1848). "French law against the press", *Spectator*, 19 August 1848, in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ume XXV.
- Mill, J. S. (1859). On Liberty. 서병훈 (역), (2013).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서울: 책세상.
- Mill, J. S. (1865). "Auguste Comte and Positivism," in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X.
- Mill, J. S. (1869). The subjection of woman. 서병훈 (역), (2006). 「존 스튜어트 밀 여성의 종속」. 서울: 책세상.
- Mill, J. S. (1873). *Autobiography*. 최명관 (역), (2016).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 서울: 도서출판 창.
- Russell, B. (1944). *The Value of Free Thought*, Kansas: Haldeman-Julius Publications.
- Searle, J. (2010). *Making the Social World: The Structure of Human Civi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Schauer, F. (1982). *Free Speech: A Philosophical Enqui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wartzberg, M. (2014). *Counting the Many: The Origins and Limits of Supermajority Rul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dron, J. (2017). *One Another's Equals: The Basis of Human Equal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장 개인적 법익 침해금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헌법」 제17조,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 <개정 2014.12.15.>
- ②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개정 2014.12.15.>

[제목개정 2014.12.15.]

제2조(명예훼손 금지)

- ①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21조 제4항, 「형법」 제307조 제2항).
- ② 언론은 사실의 공표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21조 제4항, 「형법」 제307조 제1항).
- ③ 언론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 제308조).
-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①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우,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헌법」 제27조 제4항,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개정 2014.12.15., 2016.11.21., 2024.2.20.>
- ②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개정 2019.8.21.>

③ 언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신설 2014.12.15.>

제4조 (성폭력피해자 보호)

① 언론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개정 2014.12.15.>

② 언론은 성폭력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5., 2018.7.18., 2022.6.29.>

③ 언론은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범죄사건이나 성희롱사건을 보도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7.18., 2022.6.29.>

[제목개정 2014.12.15.]

제5조 (유괴사건 보도)

언론은 유괴사건 보도에서 유괴된 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아동·청소년의 보호)

① 언론은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소년법」 제68조). <개정 2014.12.15.>

② 언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사건에 관하여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신설 2014.12.15.>

③ 언론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조 제1항 단서). <신설 2014.12.15.>

[제목개정 2014.12.15.]

제6조의2(아동학대사건 보도)

①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 학대행위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 고인의 초상, 성명, 주소, 나이, 직업, 그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② 언론은 아동학대행위나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을 자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1.24.]

제7조(가정폭력사건 보도 등)

- ① 언론은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 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2항). <신설 2022.6.29.>
- ② 언론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사소송법」 제10조). <개정 2022.6.29.>

[제목개정 2022.6.29.]

제8조(신고자등 보호)

-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2. 부패행위신고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3.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9.8.21.]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3.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금지된 사항
-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적인 관심사항인 경우 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

제10조(보도 윤리)

- ①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9.>
- ②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19.>

제10조의2(차별금지)

-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개정 2019.3.20.>
-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20.>

[본조신설 2016.7.14.]

제11조(재난 보도)

언론은 재해 및 대형 참사 보도에서 그 참상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이재민 등 피 해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범죄 묘사)

- ①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언론은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언론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성관련 보도)

- ①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
 - 2. 혼음, 윤간, 변태적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③ 언론은 간통, 원조교제 등 부도덕하거나 건전하지 못한 남녀관계를 합리화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살 보도)

- ① 언론은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 2.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 3.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
- ②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①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언론은 약물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폭력 묘사 등)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충격·혐오감)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① 언론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언론은 법령에 의한 조정 및 중재의 결과를 왜곡하거나 그 절차상 지득한 정보 또는 참여자의 발언내용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5.>

[제목개정 2024.1.25.]

제19조(여론조사 보도)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 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단,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21.1.27.>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조신설 2014.12.15.]

[중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4.12.15.>]

제21조(기사 제목)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8.21.]

[중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9.8.21.>]

제 3 장 국가적 법익 침해금지

제22조(국가안전보장 등)

언론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37조 제2항).

[제20조에서 이동 <2014.12.15.>]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4.12.15.>]

[제21조에서 이동 <2019.8.21.>]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8.21.>]

제23조(국가기밀 누설금지)

언론은 군사기밀이나 외교상 기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 제98조 제2항, 제113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제21조에서 이동 <2014.12.15.>]

[제22조에서 이동 <2019.8.21.>]

주요 시정권고 심의기준 위반유형 안내: 차별금지 유형

인종·성별·나이·성적지향 등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표출하는 편견적·경멸적 표현을 게재하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인종·성별·나이·성적지향 등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보도할 경우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국내외 법규범 및 사례 분석

2024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ISSN 2635-8522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8호

2024년 11월 12일 발행

편집 · 발행 : 언론중재위원회

02)397-3041~4

www.pac.or.kr

인쇄 : 문화공감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이 책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2024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